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2003. 9.

이준규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연결납세제도는 출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그 도입의 필요성보다는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구미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 회계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과 시행착오 및 현행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손익대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미실현이익의 제거, 투자수정,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의 계산, 연결전 조세혜택 및 이월결손금의 연결후 사용 여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대표적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선행 연구들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한신대학교의 배준호 교수 및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한 장정순 연구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 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9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으로서 최초 도입 이후 8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제도로 변천해 왔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IRC에서 연결납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9개의 조항뿐이며, 특히 세액의 계산 및 납부에 관하여는 1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IRC의 위임에 따라 미국 재무성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인 연결납세규칙은 6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절대적인 분량에 있어서 IRC의 연결납세규정과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결납세집단이 하나의 개별 법인이고 각 구성법인은 당해 개별 법인내의 사업부로 보아 결손금의 산정, 각종 공제의 한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최저한세 및 세액공

제,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 개별과세소득을 기초로 한다든지, 연결기준으로 산정될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든지, E & P를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관리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을 일부 채택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무상 적용을 간편하게 하고 연결이탈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체적으로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8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예상되는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조치를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미국에서는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의 지분비율(다른 구성법인의 지분비율 포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세액의 배분 및 연결이탈시 조세특성의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데 미국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구성법인간의 실제 배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E & P 산정목적의 연결세액배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연결세액의 부당한 배분으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세액배분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

다섯째, 미국 세법상 개별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대응되는 개념이 없거나 그 적용방법상 차이가 있는 규정들이 있으며 이들 규정이 미국의 연결납세규정 중 상당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법상 주식의 기초가액 및 E & P 는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의 장부가액 및 세무상 잉여금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그 산정방법 및 적용용도가 다르며, 미국 세법상 내포 손익 및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 세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의 방지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섯째, 미국연결납세제도에서 SRLY는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또는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성을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이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연결과세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납세집단을 공통의 모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연결회계이론에서의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관계회사집단 성립전에 발생한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역취득의 방식을 통하여 결손금공제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해지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도입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결납세가 강제적용되었으나 그후 연결납세를 관계회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선택하게 바뀌었으며 그 변경의 초기에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연결납세가 조세지원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관계회사집단이 경제적으로 일체가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연결납세를 임의로 중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의 강제적용 여부와 적용개시 후 계속적용 여부 및 가산세부과 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당시의 경제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II. 정책시사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연결납세규정을 두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위헌으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결납세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전통이 유사한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개정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연결납세의 성격상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연결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개별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과감하게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결납세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규제되는 조세회피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연결세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미국 세법상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연결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도에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개별 법인에 대하여도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세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의 결손금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제도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목적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단계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낮은 단계의 세율(15%)과 높은 단계의 세율(27%)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고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도 1억원 이하로 적은 금액이어서 누진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진의 효과가 비교적 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의 규제방안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요구는 주로 재계에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장애 중 이중과세부담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집단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업

집단을 경제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으로서의 도입 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초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목 차

I. 머리말	17
II. 제도의 변천과정	19
1. 개요	19
2. 1917년의 연결납세규칙	23
3. 1918년~1951년의 세법	25
4. 1954년~1964년의 세법	33
5.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	37
6. 1966년 이후의 입법	40
7. 1990년대 연결납세규정의 보완수정	41
III.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44
1. 연결납세의 대상	44
2.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63
3. 역취득	72
4. 사업연도	77
5. 회계처리방법	87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89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92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96
IV. 연결과세소득	100
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100

2. 결손금	102
3. 자본손익 및 사업용자산 처분손익	121
4. 기타 연결기준공제	124
5. 내포손실	127
6. 주식처분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손실의 공제 제한	132
7. 자회사주식의 처분 및 연결이탈	140
8. 한도초과 불공제 기타 수정항목	155
V. 내부거래	156
1. 개요	156
2. 대등원칙	162
3. 촉진원칙	180
4. 구성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내부거래	185
5. 내부채권채무와 관련한 손익	192
6. 기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	196
VI. 투자수정 및 E & P	204
1. 투자수정	204
2. 초과손실계정	230
3. E & P	236
4. 집단의 구조변경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257
VII. 지분변동	259
1.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	259
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	267
3.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273
4. 제382조 연결한도 및 하위집단한도	279
5. 연결납세집단에 신규가입하는 손실법인과 제382조	282

6.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287
7.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	301
VIII. 연결세액	302
1. 연결세액의 계산	302
2. 연결최저한세	303
3. 연결세액공제	312
IX. 시사점 및 맺는말	323
1.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323
2. 맺는말	330
참고문헌	332
<부록 I: 미국연결납세규정의 목차>	336
<부록 II: 미국연결세액의 계산구조>	342
<부록 III: 연결납세관련서식>	344

그 립 차 례

[그림 II-1] 미국연결납세제도의 연대별 변천과정	22
[그림 III-1] 연쇄적 소유관계의 예시	46
[그림 III-2] 합동소유관계의 예시	47
[그림 III-3] 상호소유관계의 예시	48
[그림 III-4] 사업연도중 관계회사집단이 성립된 경우의 연결과세 소득예시	80

[그림 III-5]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96
[그림 IV-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102
[그림 IV-2] 기초가액승계시 투자수정사례	148
[그림 VI-1] S의 배당으로 인한 S의 E & P 감소가 P의 E & P에 미치는 영향	240
[그림 VII-1] 손실집단의 사례	268
[그림 VII-2] 손실하위집단의 사례	271
[그림 VII-3] 손실하위집단과 개별법인의 동시취득 사례	272
[그림 VII-4]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사례	274
[그림 VII-5]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275
[그림 VII-6]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사례	277
[그림 VII-7]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동시 지분변동사례	278
[그림 VII-8] 직접소유시 손실집단의 주식시가 산정사례	280
[그림 VII-9] 간접소유시 손실집단의 주식시가 산정사례	281
[그림 VII-10] 신손실 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 한도의 적용사례	283
[그림 VII-11] 다수의 신손실 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 한도 적용사례	284
[그림 VII-12] 연결이탈법인의 지분변동사례	289
[그림 VII-13] 제382조 연결한도의 배분사례	293
[그림 VII-14]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사례 1	296
[그림 VII-15]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사례 2	297
[그림 VII-16] 신손실 하위집단의 생성사례	298
[그림 VIII-1] 연결세액의 계산구조	303
[그림 VIII-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304

I. 머리말

연결납세제도는 출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그 도입의 필요성보다는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구미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 회계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과 시행착오 및 현행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손익대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미실현이익의 제거, 투자수정,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의 계산, 연결전 조세혜택 및 이월결손금의 연결후 사용 여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대표적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선행 연구들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의 소득세(Income Taxes)편 중 제6장(연결납세)에 규정되어 있다. IRC 제6장은 11개의 조(section)¹⁾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IRC §1502에서 연결납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성 규칙(Treasury Regulations)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연결납세규칙(Regs. §1.1502- §1.1563)은 그 분량이 2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 보고 과세당국이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머리말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태동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 제III장부터 제VIII장에 걸쳐 미국의 연결납세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즉, 제III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제IV장에서는 연결과세 소득의 산정, 제V장에서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이익의 처리, 제VI장에서는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에 대한 수정 및 E & P, 제VII장에서는 지분변동과 관련한 조세특성의 처리, 제VIII장에서는 연결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IX장에서는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 끝을 맺기로 한다.

1) 11개의 조항 중 6개의 조항은 연결납세관련규정(related rules)이고 이 중 2개의 조항(IRC §1562 & §1564)은 폐지된 규정이어서 실제로 연결세액의 신고납부를 규정한 조항은 5개뿐이다.

II. 제도의 변천과정

1. 개 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1917년에 처음 도입되어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우선 미국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비 조달을 위하여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를 과세하게 되었고 초과이익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누진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청장의 판단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후 초과이익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적용방식으로부터 기업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용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연결납세제도의 연대별 변천과정은 Crestol, Hennessey & Yates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²⁾.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적용에서 임의선택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소득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절세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신고

2) Crestol et al.(2002), pp. 1-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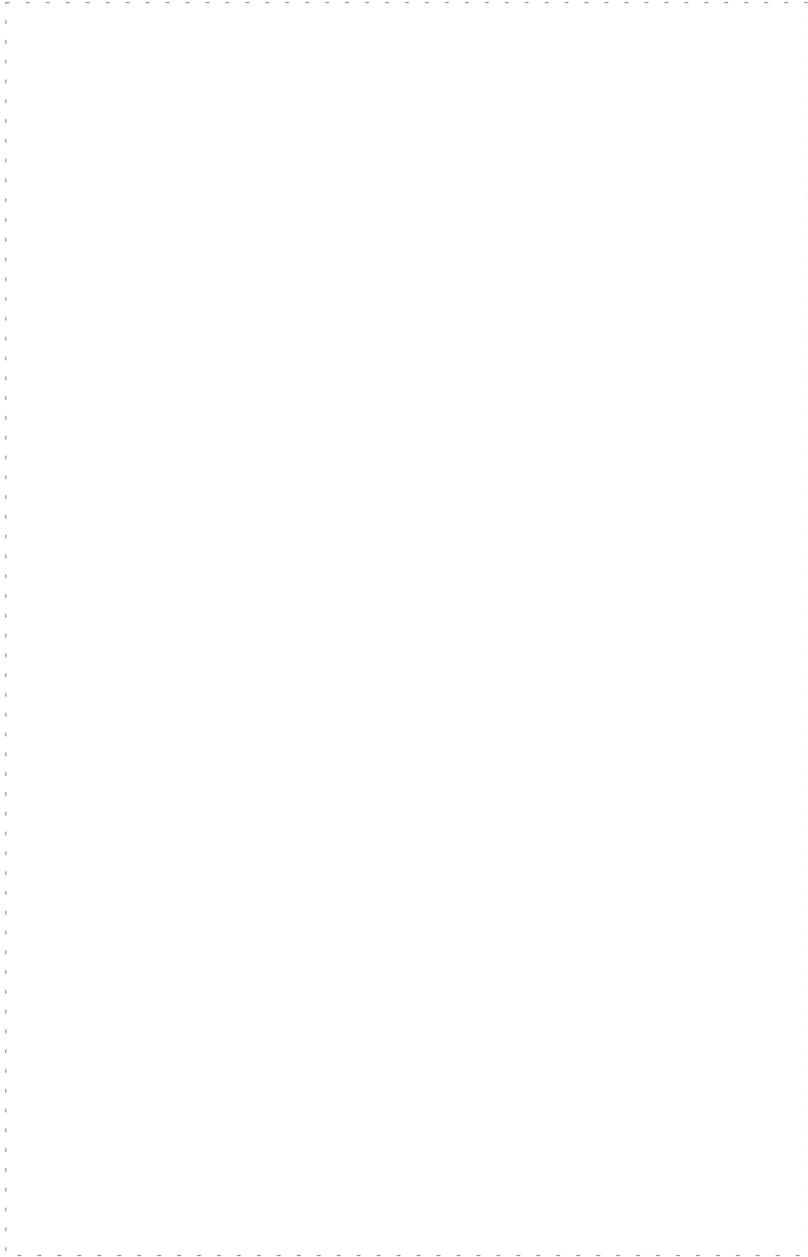
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결납세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 때로는 연결납세신고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고 채택된 경우도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미국 의회(Congress)와 재무성(the Treasury)은 연결납세제도가 합리적인 경제적 논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정 사업을 법인내의 사업부로 영위하는 것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영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진보된 관점은 1960년대에 들어 2%의 연결가산세 폐지와 조세혜택의 적용요건 완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면 세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연결납세의 계속적용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연결납세에 관한 정책이 종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미국 재무성은 1966년의 연결납세규정의 특정 조항들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조항 중 일부는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정되고 다른 일부는 연결납세규정의 범문과 배치되는 판례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1984년에는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요건이 80% 이상 의결권 보유뿐 아니라 80% 이상 지분소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 재무성은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을 행사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후에 동일한 결손의 국내외에서 동시사용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E & P의 특별조정, 특정 목적의 자회사가 우선주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결결손을 이용하는 것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IRC에 도입되었다. 또한 연결납세규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재무성에게 연결납세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필요할 때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미국 재무성의 입법권한

에 제한을 가해 왔으며 때로는 자의적이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법률의 취지 또는 문언에 위배되는 규정들을 무효화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법원은 특정 연결납세규칙이 일반 법률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국 재무성은 연결납세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과거의 판례 등을 신뢰하고 법문언과 다르게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 좌절을 맛보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결납세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관계회사집단은 연결납세신고기한 현재의 규칙에 의하여 과세된다. 입법의 편의상 미국 재무성은 연결납세기한인 3월 15일 직전에 연결납세규칙을 개정해 왔으며 이렇게 개정된 규칙이 즉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역에 의한 1년을 사업연도로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규칙이 소급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종전의 규칙을 기초로 행해진 거래의 세무상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결납세규정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917년의 연결납세규칙

1913년 소득세법(the income tax law)이 제정된 지 4년 후인 1917년에 전시초과이익세법(the war excess profits tax laws)에 대한 시행규칙의 형태로 연결납세의 개념이 세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처음 도입된 연결납세규칙은 관계회사집단의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는 이론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중 법인에게 부과되는 초과이익세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가.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

당시의 연결납세규칙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들을 연결대상 관계회사인 것으로 보았다.

1)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법인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들을 연결대상 관계회사로 본다.

① 모자회사관계(a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한 법인이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사실상 전부를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또는 파견임원을 통하여 그 다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② 형제자매회사관계(a brother-sister relationship):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

2) 부당행위의 당사법인

법인간에 부동산을 시가와 다르게 양수도하거나 기타 다른 재무약정을 통하여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불공정하게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들을 연결대상 관계회사인 것으로 본다.

나. 관계회사의 연결납세강제

미국 국세청장(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에게는 관계회사집단의 투자자본과 과세소득을 보다 공평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계회사집단에게 연결납세를 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주어졌다. 만약 관계회사집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개별 법인이 초과이익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장만이 연결납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관계회사집단은 연결납세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의 승인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연결납세가 관계회사집단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특정 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계속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 연결세액의 배분

연결납세신고로 인하여 연결세액이 결정되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 법인들은 연결세액을 분할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구성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었다. 만약 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각 구성법인은 각자의 순소득에 비례하여 연결세액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3. 1918년~1951년의 세법

가. 1918년의 세법

1917년에 처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미국 상원(the Senate)은 기업에게 연결납세를 요구할 명시적인 법률상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이유의 하나는 누진세율의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미국 상원의 재정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공평하며 납세의무자와 정부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이 연결납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였다.

1917년에 제정된 연결납세규칙의 많은 부분이 1918년에 개정된 세법에 법률로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는 종전과 유사하였지만 동일 또는 관련 사업의 영위요건은 폐지되었다. 외국법인은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의결권주식의 과반수를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연결세액의 산정과 관계회사간 배분방법은 현행 세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나. 1921년의 세법

1) 연결납세의 임의선택

초과이익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초과이익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연결납세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19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결대상 관계회사집단이 개별 납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결납세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선택하여 적용하기 시작하면 국세청장의 승인이 없는한 계속하여 그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주식의 사실상 전부를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들은 종전과 같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는 등 부당행위의 당사법인인 것만으로는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종전 규정에서 주식의 '사실상 전부(substantially all)'는 특정한 비율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사례별로 사실판단의 문제였다. 그러나 1921년부터는 95%의 주식을 소유 또는 지배하면 '사실상 전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 95% 이상 소유 또는 지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95% 미만의 소유 또는 지배상태이지만 70%를 초과하는 소유 또는 지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어떤 기업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관계회사가 미국내에서 설립되었는지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관련되는 사업의 계정을 연결하고 관계회사간의 소득, 소득공제 또는 자본을 정확하게 배분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관계회사가 외국법인 등이라는 사유로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회사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규제되었다.

3) 절차상의 규칙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연결납세신고를 하도록 하며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구성법인들은 자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양식(Form) 1122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최초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①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들의 회사명 및 주소
- ② 사업연도초 현재 각 구성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및 모회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수
- ③ 사업연도중 주식소유의 변동상황
- ④ 구성법인간 약정에 따른 연결세액의 배분명세서

연결납세집단은 국세청장에게 각 구성법인의 지분변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도중에 지분변동으로 인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로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분변동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연결납세기 제외되거나 포함되도록 하며 연결납세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각 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연결과세소득은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과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구성법인은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초 이전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4) 연결과세소득의 계산

연결과세소득은 연결기업집단 구성법인의 순소득을 합산하여 산

정한다. 각 구성법인의 순소득은 개별납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
 되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그 거래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든 아
 니면 손실이 발생하든 제거하도록 하였다.

다. 1924년과 1926년의 세법

1924년의 세법에서는 연결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전부'요
 건은 '의결권주식의 95% 이상 소유'요건으로 대체되었다. 1925년
 이후 사업연도에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가장 큰 변경
 은 95% 이상 소유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의결권 주식뿐 아니라
 무의결권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단 무의결권 주식 중 제한적 우
 선주는 제외)을 기초로 적용하도록 되었다는 점이다.

1926년에는 중국교역법(the China Trade Act)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은 특별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그 대신 당해 법인은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1928년의 세법

미국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와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가 권고
 한대로 연결납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상원의 재정위원회는 연결납세제도의 폐지가 정부와 납
 세의무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비판론에 대응하여 1928년 이후의 사업연도
 에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현행 규정
 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관계회사집단은 개별납세 대신에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구성법인이 신고전에 연결납세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연결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결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는 (1)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공통의 모회사와 (2) 최소한 95%의 주식이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자회사로 구성되는 일련의 법인들로 변경되었다. 즉 처음으로 손자회사개념이 세법에 도입되었으며 자회사의 직접 소유에 대한 특별요건이 규정되었고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형제자매관계의 법인은 연결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생명보험회사와 상호보험회사는 일반 법인과 연결납세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100% 자회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외국법을 준수할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모회사의 선택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었다. 특수관계자간의 가공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납세의무자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의 도입으로 규제되기에 이르렀으며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마. 1932년과 1933년의 세법

1932년에는 처음으로 연결납세를 하는 연결납세집단에 대하여 연결가산세가 부과되었다. 1932년과 1933년에는 연결가산세율이 3/4%였으며 1934년과 1935년에는 1%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바. 1934년~1938년의 세법

1934년에 미국 의회는 불경기로 인하여 감소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과 연결납세를 통하여 발생된 거액의 결손이 사용되는

데 대한 반대론 등 연결납세제도의 비판론에 굴복하였다. 연결가산세를 2%로 인상함과 아울러 철도회사와 그 지주회사에게만 연결납세신고를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관리에 있는 특정 관계회사집단에 게 유보이익세를 경감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1935년에는 2%의 연결가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15 $\frac{3}{4}$ %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은 순소득 \$2,000 이하에 대하여 12 $\frac{1}{2}$ %로부터 \$40,000을 초과하는 순소득에 대하여 1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5년의 개정은 1936년의 세법개정에 의하여 대체되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철도운송의 범위는 1936년의 세법에 의하여 전철에 대하여도 확대되었다. 또한 1938년의 세법에서는 무궤도 전차(trackless trolley) 및 무궤도전차 운송시스템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버스운송에까지 확대되었다.

총소득이 주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과 같은 비사업소득(passive income)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인적지주회사세(a personal holding company tax)가 부과되었다. 인적지주회사세는 공통의 모회사가 주식소유요건을 충족하고 관계회사집단의 소득이 총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인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고 연결기준으로 부과되도록 하였다.

사. 1939년의 세법

1939년의 세법에서는 연결납세제도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철도회사만이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는 범미교역법인(Pan-American trade corporations)³⁾의 연결납세에도 허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범미교역법인에 대한 관계회사 범위는 95% 이상 주식소유요건 대신 100% 주식소유요건을 적용하고 모회사의 소득 중 80% 이상이 사업소득이어야 하였다. 한편 경제상황의 호전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집단에 대한 유보이익세의 경감규정은 폐지되었다.

아. 1940년의 세법

초과이익세의 부활로 인하여 연결납세제도에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관계회사집단에게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초과이익세의 과세대상인 내국법인은 초과이익세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적용역법인, 외국법인, 중국교역법인, 미국령에 소재하는 법인 (possession corporations), 생명보험회사, 상호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 1942년의 세법

1941년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연결납세신고(소득 및 초과이익세)의 대상이 철도회사 및 범미교역법인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관계회사집단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의 연결가산세가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

95% 지배요건은 주식종류별 의결권의 95% 이상을 보유하면서

3) 서구교역법인(the Western Hemisphere trade corporations)의 전신(前身)

동시에 무의결주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법인에 대한 경제적 소유 외에 의결권에 의한 지배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과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투자회사가 추가되었고 인적용역법인은 연결납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 법인이 입은 손실로 인하여 세법상 특별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전쟁손실로 인한 결손은 연결순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고 결손이 발생한 구성법인의 순소득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차. 1943년~1951년의 세법

1943년의 유일한 개정은 인적용역법인 또는 인적지주회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초과이익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연결납세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적용역법인은 초과이익세의 감면과 연결납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1950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신한국전 초과이익세'규정의 법률조문에 맞도록 수정된 바 있다. 또한 미국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예: 서구교역법인)는 개별납세와 연결납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공공사업(regulated public utilities)은 초과이익세에 대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초과이익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또한 서구교역법인에 대하여 연결가산세의 면제를 세법상 명문화하였다.

종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를 면제받지 않기로 한 법인은 그 선택을 철회하여 초과이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1950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4. 1954년~1964년의 세법

가. 1954년의 연방세법

상원은 하원이 연결납세규칙을 1954년의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법조문화하려는 시도를 배제함으로써 선견 지명을 보여주었다. 재무성은 연결납세규칙의 오류를 바로잡고 세법 또는 기업실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결납세규칙을 기민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결납세규칙의 법률화는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위임이 없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공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종전의 연결납세에 관한 세법(Revenue Act)의 많은 조항은 1954년의 IRC에 거의 변경없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초과이익세와 전쟁손실 관련조항은 삭제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경은 자회사 지배요건의 완화로서 95% 이상이 80%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80% 기준은 IRC의 다른 조항, 즉 기업구조조정, 자회사의 설립과 청산 등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주식소유요건이 완화되어 연결납세를 허용할 여지가 늘었지만 2%의 연결가산세는 계속 과세되었다. 서구 교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연결가산세가 면제되었고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공익사업의 소득에도 유사한 면제가 적용되었다.

이외에 1954년의 IRC에서 달라진 점으로는 법인으로서 과세되기를 선택한 법인격없는 기업이 연결납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적지주회사규정은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회사를 갖고 있거나 총소득의 최소한 10%를 관계회사집단 외에서 얻지 않았다면 당해 관계회사집단이 인적지주회사 부채를 연결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E & P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성법인간 연결세액부담을 배분하는 특별규정이 제정되었다.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되었다.

- ① 소득법(the income method)
- ② 개별납세신고법(the separate return method)
- ③ 연결납세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을 구성법인 중 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
- ④ 위 이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

실질상의 연결세액부담만이 위의 방법에 의한 배분대상이며, 구성법인의 결손이나 세액공제를 연결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결손법인 등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었다.

나. 1955년의 연결납세규칙

1955년에는 IRC §141에서 규정하는 연결납세대상 관계회사의 요건을 설명하는 종전의 규칙체계와 연결순소득의 산정, 연결납세 절차 및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칙체계를 결합하여 완성된 형태의 연결납세규칙을 제정하였다.

연결과세소득은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을 합산한 후 결손, 자본이득 및 손실, 기부금, 수입배당공제, 내부거래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연결조정을 가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연결결손공제는 허용되었지만 관계회사에 새로이 해당하는 연도를 포함한 개별납세

신고연도(separate return years)의 결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제하는 것은 결손법인의 과세소득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관계회사간 배당과 내부거래손익은 제거하도록 하였다. 최종의 개별납세신고연도에 있어서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된 내부거래손익은 최초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기초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거되도록 하였다. 내부거래이익의 제거로 인한 재고자산의 감소에 의하여 세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차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때 당해 재고자산을 소유하는 구성법인의 세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한 주식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더라면 당해 구성법인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었을 결손으로서 연결납세기 사용된 결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기초가액(장부가액)에서 감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액의 취지는 연결납세집단이 자회사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두 번 공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기 발생한 E & P와 배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주식의 기초가액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은 동일한 E & P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1957년~1964년의 법률

이 기간 동안에는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에 변경이 있었다. 조합과세법인(Subchapter S corporation)은 연결납세 제외법인에서 배제되었다. 그 이유는 조합과세법인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면 조합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굳이 연결납세 제외대상에 명문으로 열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동산투자신탁은 연결납세제외법인에 추가되었다.

서구교역법인은 당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적용배제하기 전에는 약 34%의 유효세율로 과세되는데, 관계회사집단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총액기준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서구교역법인이 유효세율에 의하여 지급한 세액 이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서구교역법인의 유효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법정최고세율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연결납세를 장려하고 부가세(surtax)의 감면을 중복적으로 적용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의 연결가산세를 폐지하였다. 부가세의 중복감면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서 부가세의 중복감면을 적용하는 모자회사집단에 6%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부가세의 중복감면은 모자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하나 이상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후 부가세의 중복감면에 대한 점진적인 폐지는 연결납세를 유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관계회사간의 배당에 적용되던 수입배당공제율은 85%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관계회사간 배당의 과세제외요건이 연결납세연도에 수입된 것이면 족하지만 개별납세의 100% 수입배당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였다. 더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회사간의 배당에 대하여도 별도의 요건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100%의 수입배당공제가 적용되었다. 결국 2%의 연결가산세와 부가세의 중복감면의 폐지 및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의 완화로 인하여 많은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게 되었다.

5.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

가. 규칙개정의 필요성

재무성은 거의 50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되어온 연결납세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연결과세소득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세청장은 관계회사집단의 연결납세 중지승인요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자회사를 신규취득하거나 법인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연결납세를 선택함으로써 연결납세를 중단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단기간의 연결납세를 통하여 관계회사의 결손을 사용하거나 관계회사간의 배당이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한 후 다시 개별납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방세법의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체계의 연결납세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나. 주요 개정내용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납세의 선택은 철회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개별납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법개정후 연결납세의 중단에 대한 국세청장의 포괄적인 승인관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에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손익이 실현되는 때 양수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양수자귀속방식 또는 장부가액인계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시가로

인계하되 양수자가 외부에 매각 등으로 당해 손익이 실현되는 때 양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양도자귀속방식 또는 시가인계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양도자가 양수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외부에 매각함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한 내부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공제를 허용하는 관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배당은 계속하여 총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당법인 주식의 기초가액은 개정된 투자수정규칙에 의하여 감소되도록 되었다. 개정된 투자수정규칙에 의하면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E & P 또는 결손 발생액, 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따라 증감되도록 하였다. 만일 부(-)의 투자수정을 통하여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이 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초과손실계정(an excess loss account)이 설정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자회사주식을 처분하는 때 양도이익의 증가를 초래하도록 하였다.

종전보다 관대하게 개정된 결손공제규정에 따라 연결납세집단이 연결납세연도 또는 연결대상에 해당하지만 개별납세신고한 연도 전후에 발생한 공통의 모회사 또는 다른 구성법인의 결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공제규정을 이용하여 결손법인이 매매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분변동(change of ownership)에 대한 조세특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재무성은 자회사의 결손에 대한 연결납세의 공제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결손법인이 규모가 큰 법인을 형식적으로 취득하고 규모가 큰 법인의 주주가 취득후 규모가 작은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을 통하여 규모가 작은 집단의 결손을 규모가 큰 집단의 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하려는 행위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규모가 큰 법인을 취득후에도 모회사로 보는 '역취득에 대한 결손공제의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완하였다. 즉 연결납세집단은 연결납세시 특정 구성법인의 결손이나 세액 공제를 사용한 데 대하여 당해 구성법인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 1966년 규칙 이후의 개정

1966년에 연결납세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연결납세에 관한 법률규정의 개정, 다른 법인세법규정의 개정, 법률의 폐지, 법인의 유형에 따른 특별규정의 필요성, 1966년 연결납세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 연결납세규칙의 남용사례 등으로 인하여 연결납세규칙을 현실에 더 적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측면에서의 개정 또는 특별한 유형의 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정들이 있었는데,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사업의 연결납세, 블루크로스(Blue Cross/Blue Shield) 조직,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공제의 제한(at-risk limitations) 등에 관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결납세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개정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이연된 내부거래이익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수정과 E & P의 산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 연결납세집단의 구조조정(예: 공통의 모회사 주식을 증여받거나 역취득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새로이 공통의 모회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모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은 종전의 모회사의 장부가액에 의한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잔액으로 하고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E & P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회사인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의 외부로 매각되기 전에 배당을 선언하였으나 처분후에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은 연

결납세목적상 배당선언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당해 배당액은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에서 직접 감액하는 대신 기초가액 감액계정(a basis reduction account)을 설정하여 차후에 실제로 배당될 때 감액되도록 하였다.

6. 1966년 이후의 입법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은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970년 이후에는 당해 법인에게 순소득을 인계하는 자회사인 증권보유법인과 연결납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판매 내국법인(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DISC)은 연결납세제외 대상에 추가되었다.

1980년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이상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생명보험회사는 다른 관계회사와 연결납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다른 구성법인의 결손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연결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84년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의결권의 80% 이상 보유조건뿐 아니라 총발행주식 시가의 80% 이상 보유조건도 충족하는 자회사로 개정하였다(80/80 지배조건). 종업원지주제도(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에 의하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증권은 80/80 지배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전환우선주와 무의결권부 보통주도 80/80 지배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연결납세 구성법인이 관계회사집단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60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연결납세대상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1986년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미국과 외국에서 모

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이중국적법인)도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당해 법인의 결손이 다른 외국법인의 소득과 상계된다면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당해 결손이 차감될 수 없도록 하였다. IRC §21에 의하여 과세되는 상호보험회사는 부동산 및 상해보험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결납세 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다.

7. 1990년대 연결납세규정의 보완수정

1966년에 제정된 연결납세규칙은 1991년까지 25년간 적용되어 왔고 잦은 법인세법의 개정과 연결납세규칙의 남용사례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으로 누덕누덕 기워진 형상이 되었다. 1986년의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입안자에게 연결납세규정의 개정에 대한 압력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연결납세규칙에 대한 많은 추가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연결납세 구성법인의 주식을 다른 구성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를 주식의 출자 또는 상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매각으로 보아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반되는 규정이 채택되었다.

1992년에는 재무성이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에 대하여 그 행사가격으로 보아 행사될 것이 분명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80% 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결손의 이중공제제한에 관한 IRC §1503의 취지에 정확히 따르는 연결납세규칙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1994년에는 재무성이 투자수정, E & P 및 초과손실계정에 의한

양도이익의 인식(excess-loss recapture)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투자수정과 E & P의 연계 정도가 감소되었다. 즉 투자수정은 E & P 대신에 수정된 과세소득(결손)을 기초로 하게 되었고 초과손실계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이익의 인식시기를 이연하도록 함으로써 완화하였다. 연결납세집단의 구조조정원칙은 그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기초가액 감액계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배당선언만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기초가액을 유지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강구되었다. 또한 삼각구조조정(a triangular reorganization)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초가액을 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95년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개정되었다. 1995년의 연결납세규칙은 종전의 기계적인 원칙에서 단일실체개념(a single-entity conceptual approach)으로 변경되었고 재고자산수정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폭넓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규칙은 이연되는 내부거래와 이연되지 아니하는 내부거래의 구분을 삭제하고 구성법인의 주식 및 부채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부거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소득의 속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96년에는 재무성이 1996년 12월 3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연결결손금, 내포공제(built-in deductions), 연결납세집단의 자본손실(capital losses)에 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공포하였다. 개별납세제한연도(the 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 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위집단(subgroup) 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연결납세지분변동(the consolidated return change of ownership; CRCO)에 대한 결손공제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내포공제규정은 IRC §382의 내포손실규정과 거의 동일하

게 개정되었다. 피투자 집단의 이월공제에 대하여 IRC §382의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임시규정이 공포되었다. 연결납세 집단의 구성법인이 보유하는 공통의 모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부인하고 특정이익을 제외하는 규정이 공포되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SRLY 결손공제원칙(누적적용 및 하위집단개념)이 사업세액공제(business tax credits) 및 최저한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s)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SRLY 원칙은 국외원천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SRLY 원칙이 1999년 6월 25일 후에 도래하는 신고기한부터 개정되어 중복적용거래(예: SRLY와 IRC §382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래)를 통하여 결손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외원천결손의 공제제한에 관한 종전의 규정이 개정되어 1999년 8월 11일 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연결납세신고부터 시행되었다.

Ⅲ.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연결납세의 대상

가. 연결납세집단과 관계회사집단

연결납세집단(consolidated group)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tax year)에 연결납세신고를 하거나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계회사집단⁴⁾을 말하며 관계회사집단(affiliated group)⁵⁾에 속하는 개별 법인을 구성법인(member)이라고 한다⁶⁾. 관계회사집단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연쇄적 법인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은 공통의 모회사(common parent company)⁷⁾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subsidiary)⁸⁾로 구성된다.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법인간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includable corporations)’이어야 한다⁹⁾.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Reg. §1.1502-1(h).

5) 미국재무성이 제정한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관계회사집단을 ‘집단(group)’으로 정의하고 있다(Reg. §1.1502-1(a)).

6) Reg. §1.1502-1(b).

7)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주식소유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8)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공통의 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한다(Reg. §1.1502-1(c)).

9) IRC §1504(a)(1) & (2).

나.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

1) 일반적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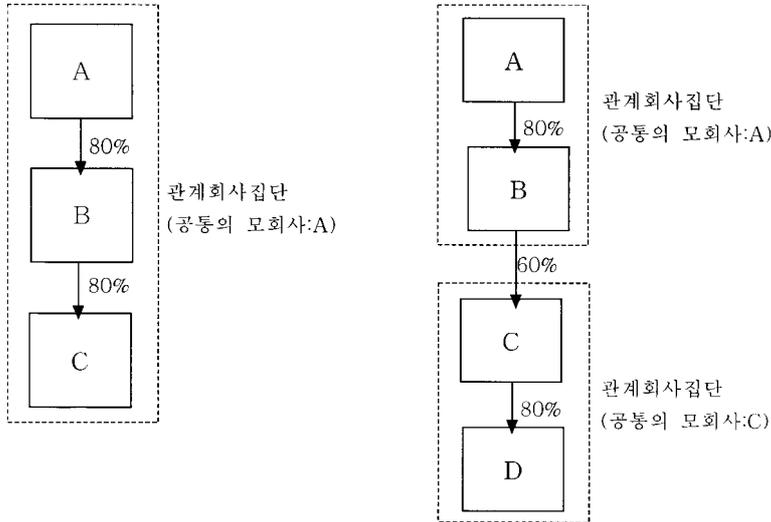
관계회사집단은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의 법인으로 구성된다. 즉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간에는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직접 출자관계에 의한 모자법인(母子法人, parent-subsidiary corporate group)이어야 하며 동일한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지만 서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형제 자매법인(brother-sister corporate group)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둘째, 자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을 소유하는 동시에 자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80% 이상 소유기준'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셋째, 공통의 모회사는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법인은 다른 구성법인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도록 소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다.

2) 연쇄적 소유관계

예를 들어 A가 B의 80%를 소유하고 B가 C의 80%를 소유하는 경우 A는 공통의 모회사가 되며 B는 A에 의하여 직접 소유되므로 관계회사집단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C는 B에 의한 직접소유를 통하여 A가 간접적으로 소유하며 당해 집단의 구성법인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쇄적 소유관계에서는 A, B, C 모두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예를 바꾸어 A가 B의 80%를 소유하고, B가 C의 60%를 소유하며, C가 D의 8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B와 C에 의하여 연결관계가 단절되므로 공통의 모회사 A와

자회사 B로 구성되는 관계회사집단과 공통의 모회사 C와 자회사 D로 구성되는 관계회사집단 등 두 개의 관계회사집단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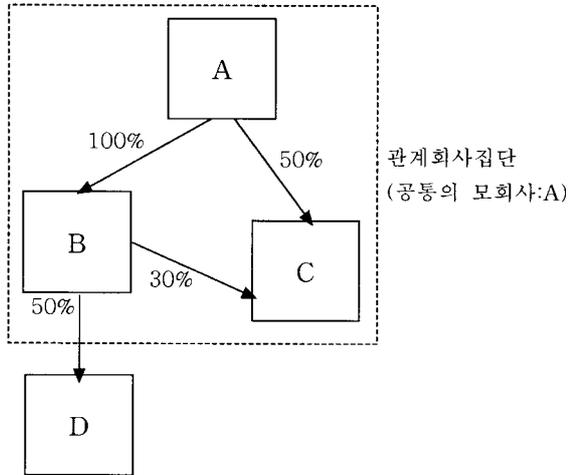
[그림 III-1] 연쇄적 소유관계의 예시



3) 합동소유관계

예를 들어 A가 B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30%를 소유하며 A가 C의 50%를 소유하는 경우 A는 공통의 모회사가 되며 B는 A에 의하여 직접 소유되므로 관계회사집단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C는 A와 B에 의하여 합동으로 소유됨에 따라 당해 집단의 구성법인이 된다. 따라서 A, B, C는 직접소유와 합동소유를 통하여 모두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III-2] 합동소유관계의 예시



4) 상호소유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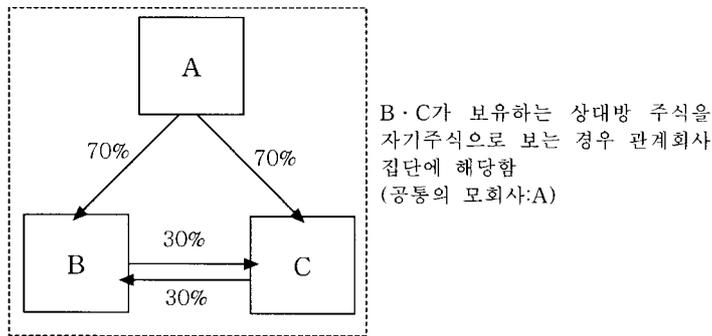
예를 들어 A가 B 및 C의 70%를 소유하고 B와 C가 서로 상대방의 30%를 소유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되어야 할 A가 8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자회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IRC의 범문¹⁰⁾에 의하면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법(州法)에 따라 B와 C가 보유하는 상대방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는 경우¹¹⁾에는 A가 B 및 C의 100%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 A, B, C가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게 된다¹²⁾.

10) IRC §1504(a).

11)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제외된다.

12) Crestol et al.(2002), pp.2-8~2-9.

[그림 III-3] 상호소유관계의 예시



5) 소유비율계산시 특정 주식의 배제 여부

'80% 이상 소유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하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도 총주식과 보유주식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식은 총주식과 보유주식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계산한다¹³⁾.

- ① 의결권이 없을 것
- ② 배당에 대하여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 ③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가액이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단,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에 대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할증액은 제외)
- ④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

6) 남용방지를 위한 규칙제정권의 부여

IRC에서는 '80% 이상 소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남용하여 조세회

13) IRC §1504(a)(4).

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성에 이를 위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IRC에서 재무성에 위임한 규칙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열거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¹⁴⁾.

- ① 주식인수보증권(stock warrents),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을 주식으로 보거나 특정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
- ② 주식매매옵션(options to acquire or sell stock)을 행사된 것으로 보는 규정
- ③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회사 집단이 주식의 시가를 선의(good-faith)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신뢰하도록 하는 규정
- ④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종류간의 상대적 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당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 ⑤ 특정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성법인간의 주식이전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 ⑥ 의결권의 변동이 주식시가의 상대적인 변동에 비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당해 의결권의 변동을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7) 전환증권에 대한 연결납세규칙

IRC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연결납세규칙에서 정하는 주식인수보증권, 주식매매옵션,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에 관한

14) IRC §1504(a)(5).

규정¹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

전환증권은 주식으로 보거나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환증권은 무시된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증권의 측정일(a measurement date)에 당해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 구성법인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한다¹⁶⁾.

첫째, 주식을 발행, 상환, 또는 양도하는 대신 전환증권을 발행 또는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상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될 것¹⁷⁾.

둘째, 전환증권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나) 행사 간주의 효과와 주식평가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는 주식시가의 보유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뿐이고 의결권의 보유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¹⁸⁾. 이는 특정 자회사가 관계회사집단에 포함되도록 하기 보다는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P가 S의 총주식인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S의 주식의 시가는 주당 \$10이고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 상황에서 P가 X에게 P

15) Reg. §1.1504-4.

16) Reg. §1.1504-4(b).

17) 법인세부담의 감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측정일이 동일한 전환증권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Reg. § 1.1504-4(b)(2)(ii)). 또한 관련되는 당사자의 조세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가치개념(present value concepts)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당한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감소액과 전체 세액에 대한 상대적 감소 정도를 포함하여 사실과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g. §1.1504-4(e) & (f)).

18) Reg. §1.1504-4(b)(2)(iii)(A).

로부터 S의 주식 80주를 매입할 수 있는 전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P는 S의 주식시가총액의 20%만을 보유하는 것이 되고, X는 S의 주식시가총액의 80%를 보유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의결권에 대하여는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P는 S의 의결권의 전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P는 80% 이상 의결권보유기준은 충족하나 80% 이상 주식시가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S와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고, X는 80% 이상 주식시가보유기준은 충족하나 80% 이상 의결권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S와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¹⁹⁾.

현금결제선택권(cash settlement option), 유령주(phantom stock),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²⁰⁾.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식의 시기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이라면 동일한 시가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나 소액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²¹⁾.

다) 측정일

전환증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전환증권의 측정일이며 여기서 측정일이라 함은 전환증권이 발행되거나 양도되는 날 또는 전환조건이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²²⁾.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19) Reg. §1.1504-4(b)(3).

20) Reg. §1.1504-4(b)(2)(iii)(B).

21) Reg. §1.1504-4(b)(2)(iv).

22) Reg. §1.1504-4(c)(4)(i).

경우에는 전환증권의 발행·양도 및 전환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측정일로 보지 아니한다²³⁾.

① 전환증권이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발행·양도되거나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간에 발행·양도되는 경우

② 관계회사집단²⁴⁾의 구성법인간에 전환증권이 발행·양도되는 경우

③ 주식발행법인²⁵⁾이 속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간에 전환증권이 발행·양도되는 경우. 단, 당해 법인이 주식발행법인 및 그 법인이 속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발행·양도의 주목적이 관계회사집단의 성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발행·양도일을 측정일로 본다.

④ 전환조건이 변경되었으나 전환증권의 행사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경우

⑤ 전환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분이 희석화(dilution)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가격 또는 전환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나 행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전환조건의 변경거래에 있어서는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날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자산양수도를 통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시가가 변동하는 날을 측정일로 본다²⁶⁾.

계획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발행된 전환증권과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²⁷⁾의 측정일은 각 발행일이 측정일일

23) Reg. §1.1504-4(c)(4)(ii).

24)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경우의 관계회사집단을 말한다.

25) 전환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당해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법인을 말하며 이하에서도 같다.

26) Reg. §1.1504-4(c)(4)(iii).

뿐만 아니라 각 측정일에 있어서 이미 발행된 전환증권의 측정일이 된다²⁸⁾. 예를 들어 P가 S의 총주식인 8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2년 1월 1일에 S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U에게 S의 신주 10주를 3년내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인수보증권을 발행하였고, 1992년 7월 2일에 S가 U에게 S의 신주 10주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을 발행하였으며, 1993년 1월 1일에 S가 U의 100% 자회사인 T에게 S의 신주 10주를 취득할 수 있는 세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1992년 1월 1일, 1992년 7월 2일 및 1993년 1월 1일은 각각 첫 번째 주식인수보증권,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 세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이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이 동일인에게 2년내 발행되었으므로 연속발행에 해당하고 1992년 7월 2일은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일뿐 아니라 첫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이 된다. 한편 세차례의 주식인수보증권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자에게 2년내에 발행되었으므로 연속발행에 해당하고 1993년 1월 1일은 세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일뿐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이 된다²⁹⁾.

라) 전환증권의 범위

특정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증권이

27)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related or sequential option)이라 함은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전환증권이 발행된 후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2년내에 또 다른 전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연속적 발행으로 추정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 또 다른 전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연속적 발행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연속적 발행의 일부이거나 또는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과 정황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g. §1.1504-4(c)(2)).

28) Reg. §1.1504-4(c)(4)(iv) & (v).

29) Reg. §1.1504-4(c)(4)(vi).

라 함은 주식매수옵션(call option), 주식인수보증권, 전환사채, 주식매도옵션(put option), 주식상환약정, 옵션에 대한 옵션 등 주식을 발행, 상환, 양수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증권뿐 아니라 현금결제선택권, 유령주, 주식평가보상권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으로서 주식 이외의 증권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³⁰⁾.

- ① '80% 이상 소유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우선주³¹⁾에 대한 전환증권
- ②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전환증권(certain publicly traded options). 다만, 관계회사집단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 매매, 상장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약정(stock purchase agreement)
- ④ 주식의 담보제공(escrow, pledge, or other security agreement)
- ⑤ 보수성 전환증권. 보수성 주식매수선택권(compensatory stock options) 등과 같이 임직원에게 제공되거나 거래처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전환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측정일에 시가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⑥ 차입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전환증권
- ⑦ 파산 등 특정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발생한 전환증권
- ⑧ 전환우선주
- ⑨ 기타 미국국세청이 제정한 예규 등(revenue ruling or revenue procedure)으로 정하는 증권

마) 전환증권 행사의 확실성

전환증권이 행사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측정일 현재의 모든 사실과 정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³²⁾. 따라서 납세자

30) Reg. §1.1504-4(d).

31) IRC §1504(a)(4).

의 입장에서는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증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회피규정(safe harbors)을 두고 있다³³⁾.

① 주식매수옵션이 측정일로부터 24월이내에 측정일 현재의 주식시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행사되거나 행사일 현재의 주식시가와 동일한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행사되는 경우.

② 주식매도옵션이 측정일로부터 24월이내에 측정일 현재의 주식시가의 110% 이하의 가격으로 행사되거나 행사일 현재의 주식시가와 동일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행사되는 경우

③ 위의 ‘①’ 및 ‘②’에 있어서 옵션이 발행될 때 행사일에 존재하는 사실에 입각하여 행사일의 시가를 결정하도록 당사자간에 선의에 의하여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행사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현재의 주식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회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³⁴⁾.

① 전환증권의 보유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전환증권 자체에서 부여하는 권리 이외에 주주로서의 권리(예: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가 부여되는 경우

② 전환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주식발행법인이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주식발행법인과의 자산매매 등을 통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시가를 변경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의 경우 연속적으로 발행된 모든 전환증권이 안전회피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32) Reg. §1.1504-4(g).

33) Reg. §1.1504-4(g)(3).

34) Reg. §1.1504-4(g)(3)(iv).

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부의 전환증권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안전회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사례

P는 P, S, T로 구성된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며 S의 총주식 100주와 T의 총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6월 30일, S 주식의 주당시가가 \$40일 때, P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U에게 P가 보유하는 S 주식 중 40주를 3년내 주당 \$30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하였다. P와 T는 과거 5년간 연속 결손이 발생하였고 S는 동기간동안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다. P, S, T는 연결납세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P, T는 그들의 결손을 S의 소득과 상계시킬수 있었다. P, S, T는 종전의 소득 또는 결손발생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992년 7월 31일, S는 주당 \$1의 배당을 P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P, S, T가 1992년 6월 30일 이후에 계속 연결납세신고를 한다면 P 및 T의 결손을 S의 소득과 상계함으로써 P, S, T의 전체적인 법인세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측정일인 1992년 6월 30일에 옵션의 행사가격과 S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행사기간내에 옵션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결납세규칙에 따라 U가 보유하는 옵션은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와 S가 관계회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P는 S주식의 시가총액의 60%를 보유하는 것이 되고, 40%의 잔존주식은 T가 보유하는 것이 되며, P는 S의 의결권의 100%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하여 1992년 6월 30일에 '80% 이상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S는 더 이상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며 P가 S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IRC §243에 따라 100% 공제되지 아니하고 80%만이 공제될 뿐이다³⁵⁾.

다. 연결제외법인의 5년간 재연결 제한

1) 원칙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관계회사집단의 특정 구성법인이 주식소유 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당해 법인은 그 제외된 사업연도후 61월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더라도 연결납세신고시의 구성법인으로 포함될 수 없다³⁵⁾. 이 규정의 취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회사를 결손이 발생하는 관계회사집단에 매각하여 당해 관계회사집단이 당해 소득을 결손의 공제에 사용하게 한 후 다시 당해 자회사를 취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초 연결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5년(60월)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강제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당해 5년이 경과한 직후에 당해 자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³⁷⁾.

2)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적용배제

재무성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연결에 대한 5년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³⁸⁾. 승인절차는 자동승인절차와 개별승인절차로 구분된다.

35) Reg. §1.1504-4(h) Ex.(1).

36) IRC §1504(a)(3)(A).

37) Crestol et al.(2002), p. 2-10.

38) IRC §1504(a)(3)(B).

가) 자동승인

재연결제한의 적용배제신청에 대하여 자동승인을 얻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³⁹⁾.

① 연결납세신고기한내에 재연결제한배제신청서(waiver of the application of §1504(a)(3))를 첨부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할 것.

② 당해 법인의 이름, 주소 및 사용자등록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날과 연결납세에 다시 포함된 날, 집단에서의 제외와 연결납세에의 재포함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업상 목적에 관한 정보

③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 집단에서의 제외후 연결납세에의 재포함시까지 당해 법인이 속했던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과세소득 및 집단에서의 제외와 재연결에 대한 조세효과의 분석명세

④ 집단에서의 제외와 연결납세에의 재포함이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법인들에게 조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

나) 개별승인

위에서 살펴본 자동승인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인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당해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상당한 조세혜택을 얻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연결을 승인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로 예시할 수 있다⁴⁰⁾.

①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종전의 모회사가 당해 제외법인을 취득한 법인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제외법인이 재연결되는 경우

②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0% 이상을 회복하는 경우

39) Rev. Proc. 91-71, 1991-2 CB 900.

40) Crestol et al.(2002), p. 2-12.

③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되었던 자회사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종전의 모회사가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자회사에 의하여 취득되었으나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에 해당하는 경우

라.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

‘80% 이상 보유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IRC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으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생명보험회사, 외국법인, 미국점령지에서 사업하는 법인, 특정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 해외판매 내국법인, 조합과세법인이 있다⁴¹⁾. 또한 철도터미널법인(terminal railroad corporation)은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는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구성법인은 될 수 없다⁴²⁾.

1)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IRC §501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⁴³⁾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⁴⁴⁾. 그러나 둘 이상의 법인세면제법인, 하나 이상의 소유권보유자회사(title holding subsidiaries)⁴⁵⁾ 및 당해 소유권보유자회사로부터 소득을 얻는 다른

41) IRC §1504(b).

42) IRC §281(d).

43) 주로 종교, 교육, 자선 등의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44) IRC §1504(b)(1).

45)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당해 재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서 손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IRC §501(c)(2)).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납세는 가능하다⁴⁶⁾.

2)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⁴⁷⁾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⁴⁸⁾ 그러나 생명보험회사만으로 관계회사집단이 구성되거나 5년 이상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였던 경우에는 관계회사에 해당될 수 있다.

가)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관계회사집단

관계회사집단은 IRC §801의 적용을 받는 생명보험회사인 내국법인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연결납세가 가능하다⁴⁹⁾.

나) 5년이상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관계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생명보험회사가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에 걸쳐 특정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였다면 그 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는 재무성 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당해 생명보험회사를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연결납세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일부 규정⁵⁰⁾ 및 소비비율계산시 특정 우선주식의 제외규정⁵¹⁾에 대한

46) IRC §1504(e).

47) 생명보험준비금이 총준비금의 50%를 초과하는 보험회사(IRC § 816(a))를 말하며 IRC §801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한한다.

48) IRC §1504(b)(2).

49) IRC §1504(c)(1).

50) IRC §§243(b), 542(b)(5), 1563(b)(2)(D).

51) IRC §1504(a)(4).

적용이 배제된다⁵²⁾.

3) 외국법인

외국법인이라 함은 미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미국의 법률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법인으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와 관계없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⁵³⁾. 그러나 인접국법인과 외국보험회사는 선택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 인접국법인

인접국법인(contiguous corporations)은 미국과 인접한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산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인접국의 법률을 따르기 위한 것이 그 설립목적인 법인을 말한다. 인접국법인의 주식의 100%(임원이 소유하는 특정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함)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내국법인의 선택에 따라 당해 인접국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⁵⁴⁾.

나) 외국보험회사

미국의 모회사에게 종속되는 외국보험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취급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⁵⁵⁾.

52) IRC §1504(c)(2)(B).

53) IRC §1504(b)(3).

54) IRC §1504(d).

55) IRC §953(d)(1).

4) 점령지법인

점령지법인(possession corporations)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와 같은 미국의 점령지(속령; 屬領)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점령지세액공제(the possession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다⁵⁶⁾. 그러나 점령지법인이 점령지세액공제를 적용받기를 선택하였다면 10년간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다⁵⁷⁾. 따라서 점령지법인은 점령지세액공제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사업 초기에 결손이 발생한다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으로서 당해 결손을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점령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가능한 조세전략이다.

5) 특정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제되는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ies)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는 주로 그들의 주주에게 소득을 전달하는 도관(conduits)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⁵⁸⁾.

6) 해외판매 내국법인

해외판매 내국법인(A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56) IRC §936. 점령지법인에 해당하려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3년간 점령지에서 발생한 수입이 총수입의 80% 이상이고 점령지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 총수입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57) IRC §1504(b)(4).

58) IRC §1504(b)(6), Crestol et al.(2002) p. 2-48.

DISC)은 소득의 부분적인 이연이 허용되는 특례규정⁵⁹⁾을 적용받는 대신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⁶⁰⁾.

7) 조합과세법인

조합과세법인(Subchapter S corporation)은 조합기업(partnership)과 같이 취급되어 법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게 직접 과세하므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⁶¹⁾. 그러나 조합과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등의 사유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조합과세법인으로서의 특성이 박탈되므로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즉시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⁶²⁾. 따라서 조합과세법인을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으로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하겠다.

2.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가. 연결납세의 선택

1) 연결납세선택의 특권과 동의

관계회사집단은 법인세에 관하여 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대신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특권(privilege)을 가진다⁶³⁾.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하게 연결납세를

59) DISC의 법인주주는 적격수출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첫 1천만달러의 16/17을 이연할 수 있다(IRC §995(b)(1)(F)).

60) IRC §1504(b)(7).

61) IRC §1504(b)(8).

62) IRC §1361(b)(2)(A).

63) IRC §1501.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과 같이 계속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하여는 관계회사집단의 모든 구성법인이 IRC §1502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연결납세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⁶⁴).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IRC)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행정부에 그 자세한 사항의 입법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IRC에서는 재무성 장관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재무성 장관은 연결납세를 하는 관계회사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을 명확하게 신고, 결정, 계산, 부과, 징수, 수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⁵).

2) 동의하여야 할 구성법인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한 구성법인의 동의는 처음 연결납세를 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구성법인이었던 법인뿐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중 일부의 기간에만 구성법인에 해당되었던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로 구성법인인 된 법인과 당해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에서 제외된 법인도 연결납세에 동의하여야 한다⁶⁶).

64) IRC §1501, Reg. §1.1502-75(a)(1).

65) IRC §1502.

66) IRC §1501, Reg. §1.1502-75(a)(1).

3) 연결납세 선택의 시기 및 기한

연결납세의 선택은 관계회사집단이 처음으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결납세신고기한까지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결납세신고기한은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기한⁶⁷⁾이다⁶⁸⁾. 연결납세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결납세의 선택을 철회할 수 있으나 당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결납세의 선택은 철회할 수 없다⁶⁹⁾.

4) 연결납세 동의를 방법

가) 개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한 연결납세의 동의는 연결납세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⁷⁰⁾.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실제로 연결납세신고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의 동의서(Form 1122)를 제출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⁷¹⁾.

나) 사실상의 동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Form 1122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은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⁷²⁾. 사실상 동의 여부를 결정함

67)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68) IRC §1501, Reg. §1.1502-75(a).

69) Reg. §1.1502-75(a).

70) IRC §1501.

71) Reg. §1.1502-75(b)(1).

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된다⁷³⁾.

- ① 당해 구성법인의 소득과 공제가 연결납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② 당해 구성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③ 당해 구성법인이 관계회사명세서(Form 851)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 착오로 인한 동의누락의 구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라도 Form 1122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세청장의 사실상 동의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모든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 구성법인이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연결납세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을 공동의 모회사가 국세청장에게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⁷⁴⁾에는 당해 구성법인이 Form 1122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에 참가하게 된다⁷⁵⁾.

72) 이 경우 당해 구성법인은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Form 1122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g. §1.1502-75(b)(2).

73) Reg. §1.1502-75(b)(2).

74) 예를 들어 자회사인 파산법인의 이사회가 착오로 개별납세가 강제되는 것으로 알고 연결납세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Priv. Ltr. Rul. 9132066, Crestol et al.(2002) p. 2-75에서 재인용).

75) Reg. §1.1502-75(b)(3).

나. 선택이후의 사업연도

1) 연결납세의 계속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신고를 한 관계회사집단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한,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즉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⁷⁶⁾. 이러한 계속적용의 요건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중 일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연도에만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모든 구성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등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법인 중 일부가 연결납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를 선택하고 연결납세신고를 한 관계회사집단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일부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고 연결납세시 당해 구성법인의 손익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당국은 연결납세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개별납세신고를 기초로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은 연결납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⁷⁷⁾.

3)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에 포함된 경우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이 연결납세에 포함된 경우 당해 법

76) Reg. §1.1502-75(a)(2).

77) Reg. §1.1502-75(e).

인의 세액은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연결납세소득은 구성법인의 소득만으로 계산하며 구성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기준으로 납부된 세액은 구성법인과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간에 배분하여 각각 납부된 것으로 본다. 세액의 배분은 구성법인이 합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에 의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⁷⁸⁾을 적용한다⁷⁹⁾.

4) 법정기한의 계산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에 포함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개별납세신고기한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연결납세신고를 한 날에 당해 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⁸⁰⁾.

구성법인 중 일부가 연결납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신고기한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구성법인이 제출한 개별납세신고는 납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가 개별납세신고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⁸¹⁾.

① 당해 구성법인의 소득이 연결납세신고시 포함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② 당해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78) IRC §1552(a).

79) Reg. §1.1502-75(f).

80) Reg. §1.1502-75(g)(1).

81) Reg. §1.1502-75(g)(2).

다. 연결납세의 중지

1) 신청에 의한 승인

국세청장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당해 법인의 연결납세신고를 중지하고자 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그 중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위한 신청서는 최소한 연결납세신고기한의 9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당해 법률의 개정일 전 또는 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중지 신청서를 당해 법률의 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장이 연결납세 중지를 승인하면 연결납세신고를 마친후에도 그 승인의 효력이 있다⁸²⁾.

2) 연결납세 중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요인

가) 세법의 불리한 개정

통상적으로 국세청장은 IRC 또는 연결납세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비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함에 따라 관계회사집단에게 법인세부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리한 개정 여부는 다음의 두 항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⁸³⁾.

82) Reg. §1.1502-75(c)(1)(i).

83) Reg. §1.1502-75(c)(1)(ii).

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결법인세액과 개별납세하였다 고 가정할 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합계의 차이

② 개정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결법인세액과 개별납세하였다 고 가정할 때 개정전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합계의 차이

나) 그 밖의 다른 요인

국세청장은 연결납세의 중지를 승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⁸⁴⁾.

① 법률이 폐되거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에 처음 시행되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에 비하여 연결납세를 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결손 또는 투자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

③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시행된 IRC 또는 연결납세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에 비하여 연결납세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

3) 직권에 의한 집단적 승인

국세청장은 IRC 또는 연결납세규칙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회사집단 또는 특정 유형의 관계회사집단에게 있어서 개별납세에 비하여 연결납세에 불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모든

84) Reg. §1.1502-75(c)(1)(iii).

관계회사집단 또는 당해 특정 유형의 관계회사집단에게 직권으로 연결납세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⁸⁵⁾.

라. 관계회사집단의 존속

1) 존속의 요건

관계회사집단으로 성립한 이후 자회사의 일부가 당해 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계속 공통의 모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직전사업연도말에 구성법인이었던 하나 이상의 자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초에 구성법인으로 남은한 당해 관계회사집단은 존속한다⁸⁶⁾.

예를 들어 P가 1965년초 S의 총주식을 취득하고 P와 S는 관계회사집단으로서 1965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1966년 5월, P가 T의 총주식을 취득하였고, 1966년 7월에 P가 S의 총주식을 매각한 경우 P가 계속 공통의 모회사이고 S가 당해 사업연도초에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으로 남아있으므로 당해 관계회사집단은 1966 사업연도에도 존속한다.

2) 공통의 모회사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는 공통의 모회사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단순히 명칭 또는 소재지를 바꾸거나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⁸⁷⁾.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85) Reg. §1.1502-75(c)(2).

86) Reg. §1.1502-75(d)(1).

87) Reg. §1.1502-75(d)(2)(i).

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⁸⁸⁾.

① 그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가 보유하던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구성법인이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될 것. 예를 들어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합병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가 존속할 당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이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가 되고 하나 이상의 자회사가 계속 존속할 것.

예를 들어 P가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상황에서 P가 T에게 흡수합병되고 P의 주주는 T의 주식을 받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공통의 모회사인 P가 소멸하였더라도 관계회사집단은 T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중에 당해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병일까지는 P가 공통의 모회사이고 합병후부터는 T가 공통의 모회사인 것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하게 된다⁸⁹⁾.

3. 역취득

가. 정의

일반적으로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또는 법인)이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또는 법인)을 취득하지만, 거래후에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의 주주가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을 지배하는 지분을 가지게 됨에 따라

88) Reg. §1.1502-75(d)(2)(ii).

89) Reg. §1.1502-76(b)(5) Ex.2(b).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연결납세규칙에서의 역취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⁹⁰⁾. 다만, 자회사에 대한 자산양도의 경우⁹¹⁾에는 이를 역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⁹²⁾.

첫째, 특정 법인(‘제1차 법인’이라고 하기로 함) 또는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1)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제2차 법인’이라고 하기로 함)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역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 제2차 법인이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거나 (2) 제2차 법인의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취득(예: 합병)할 것.

둘째, 첫째 요건에서의 취득의 대가(전부 또는 일부)로 제1차 법인의 주식을 제2차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것.

셋째, 제1차 법인의 주식과 제2차 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거래로 인하여 역취득의 직전에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들이 역취득 직후에 제1차 법인의 총주식 시가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될 것.

나. 역취득의 세무상 처리 및 취지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소멸하고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이 역취득일 이후에는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90) Reg. §1.1502-75(d)(3)(i).

91) 관계회사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이 공통의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승계받음에 따라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92) Reg. §1.1502-75(d)(3)(iv).

하여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P와 S가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T와 U로 구성된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에게 흡수합병되고 합병 직전에 P의 주주가 합병 직후 T의 주식시가의 90%를 소유하게된 경우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T와 U를 새로운 구성법인으로 추가하고 T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⁹³⁾.

역취득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집단이 종전에 연결납세를 해왔다면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 역취득전 제2차 법인주식의 보유

1) 역취득후 제1차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간주 특례

제1차 법인 또는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역취득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제1차 법인과 그 자회사는 역취득 이후에 제1차 법인의 주식시가의 일정비율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일정비율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계산한다⁹⁴⁾.

① 제1차 법인 및 그의 자회사가 역취득 직전에 보유하는 제2차

93) Reg. §1.1502-75(d)(3)(i).

94) Reg. §1.1502-75(d)(3)(ii).

법인의 주식시가가 그 당시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 중 차지하는 비율

② 역취득 직전의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

③ 역취득 직전의 제1차 법인의 총주식시가와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의 합계(단, 제1차 법인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하는 제2차 법인의 주식시가는 제외)

$$\text{일정비율} = \text{②} \div \text{③} \times \text{①}$$

2) 선택 가능

역취득전 제1차 법인이 보유하는 제2차 법인의 주식을 역취득후 제1차 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은 제1차 법인이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이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규정을 선택하겠다는 뜻과 역취득의 내용을 설명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서는 역취득 일 이후에 종료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법인의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하여 연결납세신고서를 권한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⁹⁵⁾.

3) 효과

역취득의 요건 중 하나인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들이 역취득 직후에 제1차 법인의 총주식 시가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될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차 법인이 제2차 법인의 주식을 역취득 전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1차 법인도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에 해당되고 역취득 직후에 제1차 법인이

95) Reg. §1.1502-75(d)(3)(iii).

자기주식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따라 당해 50%의 일부를 이미 소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역취득으로 인하여 제1차 법인 이외에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들이 역취득후 50% 중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이상만을 보유하게 되면 역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 P가 시가 \$100,000에 해당하는 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의 잔존주식을 P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취득하였으며, 당시 T주식의 시가총액은 \$150,000, P주식의 시가총액은 \$200,000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 P가 과거 5년간 T의 주식의 시가총액 중 25%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P는 T 주식의 취득 직후에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주식의 시가총액 중 40%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frac{\$150,000}{\$200,000 + \$50,000} \times 66\frac{2}{3}\% = 40\%$$

따라서 P 이외에 종전의 T의 개인주주들이 당해 주식거래 직후에 P의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역취득 직전에 T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던 관계회사집단은 계속 존속하고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던 관계회사집단은 소멸하게 된다⁹⁶⁾.

96) Reg. §1.1502-75(d)(3)(ii).

4. 사업연도

가. 연결납세사업연도

1)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적용

연결납세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한다⁹⁷⁾.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⁹⁸⁾는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또한 연결납세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자회사는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를 채택하여야 한다⁹⁹⁾.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최초로 연결납세를 하는 때 자회사들은 사업연도를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연결납세에 있어서 자회사의 사업연도를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일치시키는 것이 강제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¹⁰⁰⁾.

2) 52 ~ 53주 사업연도에 대한 특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사업연도가 52주 내지 53주로 되어 있고 모든 구성법인의 사업연도가 7일의 기간내에 종료한다면 연결납세를 선택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업연도를

97) Reg. §1.1502-76(a)(1).

98)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를 연결납세사업연도(consolidated return year)라고 한다(Reg. §1.1502-1(d)). 이에 대하여 개별납세사업연도(separate return year)라 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개별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Reg. §1.1502-1(e)).

99) Reg. §1.1502-76(a)(1).

100) Reg. §1.441-1T(b)(1)(ii)(D).

일치시키지 않고 종전의 사업연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¹⁰¹⁾.

3) 사업연도의 변경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로 통일된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개별사업연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후에 연결납세를 중지하고 개별납세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구성법인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거나 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사업연도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각 구성법인의 사실과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 및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조세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¹⁰²⁾.

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소득

1)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집단 또는 구성법인의 변동에 따른 연결소득

가) 원칙

공통의 모회사를 포함하여 연결납세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법인의 소득(양도손익,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 포함)은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을 연결납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중에 관계회사집단이 새로이 성립한 경우에도 공통의 모회사의 소득은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기 전의 소득

101) Reg. §1.1502-76(a)(1). 승인신청서는 연결납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 90일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Reg. §1.442-1(c).

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연결납세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회사가 연결납세사업연도 중 일부의 기간에만 구성법인이었다면 자회사의 소득은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연결납세에 포함되며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자회사가 별도로 개별납세하여야 한다¹⁰³⁾.

나) 모회사가 관계회사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모회사와 그의 자회사가 개별납세를 하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당해 관계회사집단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모회사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새로운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며 그 관계회사집단은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전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과 종전의 관계회사집단을 이탈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자회사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해 왔다면 새로운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종전의 관계회사집단을 이탈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동일한 사업연도내 자회사의 매각후 다른 자회사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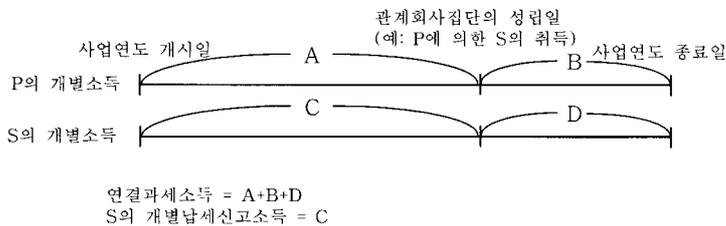
공통의 모회사가 동일한 사업연도내 유일한 자회사를 매각한 후 다른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P가 공통의 모회사(사업연도: 역에 의한 1년)이고 S가 유일한 자회사인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해왔으나 P가 2002년 6월 30일에 개인 A에게 S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고 동년 7월 31일에 T(사업연도: 매년 11월 30일에 종료하는 1년)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P를 공통의 모회사로

103) Reg. §1.1502-76(b)(1)(i).

하는 연결납세집단은 2002년 6월 30일에 S의 주식을 처분하여 자회사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새로이 자회사 T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2 사업연도에 P의 1년간 전체소득, S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 및 T의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연결납세에 포함된다. 또한 S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납세하여야 하며, T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납세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예에서 P가 T를 200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취득하였다면 S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과 T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 된다. 즉 S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2002년에 해체되고 T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이 2003년에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T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연결납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¹⁰⁴⁾.

[그림 III-4] 사업연도중 관계회사집단이 성립된 경우의
연결과세소득 예시



104) Reg. §1.1502-76(b)(5) Ex.1.

2) 단기 사업연도의 소득산정

가) 독립된 사업연도로 간주

연결납세사업연도 중 연결납세집단에 새로이 자회사가 추가되거나 종전의 자회사가 이탈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분할되며 분할된 기간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연도가 된다¹⁰⁵⁾. 따라서 당해 사건이 발생한 날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결산(예: 재고자산평가 등을 필요로 함)을 통하여 단기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¹⁰⁶⁾.

나) 비례배분방식의 선택가능

당해 자회사의 지위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간이나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예: 회계기간이 동일한 연결납세집단간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된 경우)에는 결산방식 대신에 절차에 따라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식의 적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법인들이 모두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례배분방식(ratable allocation)은 결산에 의하여 각 단기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대신 당초의 사업연도(an original year)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결정한 손익항목을 단기 사업연도의 일수에 비례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항목은 비례배분하지 않고 세법상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단기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¹⁰⁷⁾. 비례배분에서 제외되는 특별항목에는 다

105) Reg. §1.1502-76(b)(2)(i). 분할된 기간을 단기사업연도(short period)라고 한다.

106) 이를 결산방식(interim book closing allocation)이라고 한다.

107) Reg. §1.1502-76(b)(2)(ii)(B)(1) & (2).

음과 같은 것이 있다¹⁰⁸⁾.

- ① 자본자산(capital assets) 또는 사업용자산 등의 처분 또는 폐기손익
- ② 단기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되는 항목(예: 이월결손금)
- ③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수정¹⁰⁹⁾ 또는 효과
- ④ 부채의 면제 또는 소멸이익 등
- ⑤ 자회사의 지위변동과 관련한 임직원의 보수관련공제
- ⑥ 자회사가 지배하지만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⑦ 외국법인으로부터의 간주배당 등
- ⑧ 감자거래와 관련하여 공제되는 이자비용¹¹⁰⁾
- ⑨ 비례배분되지 않는 활동이나 항목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
- ⑩ 기타 비례배분될 경우 소득계산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손익항목

다) 복합적 적용

자회사가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두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였던 경우, 두 연결납세집단 모두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한다면 당초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결정한 손익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지만 두 연결납세집단 중 첫 번째 집단만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잔존기간을 당초의 사업연도로 보아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한다¹¹¹⁾.

108) Reg. §1.1502-76(b)(2)(ii)(C).

109) IRC §481(a).

110) IRC §172(h).

111) Reg. §1.1502-76(b)(2)(ii)(B)(3).

라) 절충방식의 적용가능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손익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¹¹²⁾.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연결납세 사업연도인 연결납세집단에게 있어서 S가 2002년 9월 12일에 새로이 구성법인이 되었을 때 S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결산방식: S가 2002년 9월 12일 및 12월 31일에 결산을 실시하여 2002년 9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귀속되는 소득을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는 방법

② 비례배분방식: S가 2002년 9월 12일에 결산을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1년분을 결산한 후 산정된 소득(특별항목 제외)의 110/365과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귀속되는 특별항목을 가감하여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는 방법

③ 절충방식: S가 8월 31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에 결산을 실시하여 9월에 발생한 소득(특별항목 제외)의 18/30과 9월에 귀속되는 특별항목을 가감한 금액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의 비례배분방식에 의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는 방법

마) 조세의 배분

연방세, 주세 및 기타 지방세와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는 당해 조세와 관련한 항목 또는 활동을 기초로 비례배분된다. 따라서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또한 재산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 규정은 과세당국에 의한 결정이나 배분과는

112) Reg. §1.1502-76(b)(2)(iii).

관계없이 적용된다¹¹³⁾.

바) 비법인단체

자회사가 조합기업의 조합원이거나 조합기업과 유사한 비법인단체(passthrough entities)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되기 직전에 당해 자회사가 당해 지분의 전체를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비법인단체의 손익항목이 귀속될 사업연도를 정한다¹¹⁴⁾. 따라서 당해 조합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하는 때에 결산을 통하여 당해 조합기업의 손익을 산정하고 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결납세에 포함시킨다.

다. 연결납세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시기

연결납세 사업연도중에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된 경우 당해 자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 이전에 연결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이전에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단기사업연도(구성법인이 아닌 기간)에 대한 개별납세는 연결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하여야 한다.

113) Reg. §1.1502-76(b)(2)(iv).

114) Reg. §1.1502-76(b)(2)(vi).

2)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까지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관계 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납세 신고기한까지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를 하거나 자회사의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회사가 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였으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는 공통의 모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종전의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에 대체하여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에 자회사가 전체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였으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는 연결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종전의 개별납세신고를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체신고와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액의 납부기한은 당해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은 포함하지 아니함)이다¹¹⁵⁾.

라. 역취득이 발생한 경우의 사업연도

1) 원칙

역취득에 있어서 제1차 법인이 역취득일 이후에 첫 번째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제1차 법인 또는 제1차

115) Reg. §1.1502-76(c).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역취득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역취득일 이후에는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를 제2차 법인의 사업연도로 변경하여야 한다¹¹⁶⁾.

2) 역취득의 유형별 사업연도

역취득 이후의 당사법인 또는 관계회사집단의 사업연도는 역취득 직전에 당해 법인 또는 집단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 중 어느 것을 적용하였는지와 존속하는 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⁷⁾.

가)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과 제2차 법인집단 모두 연결납세를 적용한 경우

역취득후 존속하는 법인집단은 역취득 직전의 제2차 법인집단이 종전에 적용하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연결납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중 역취득이 발생한 경우 제2차 법인집단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 중 전부와 제1차 법인집단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 중 역취득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된다¹¹⁸⁾. 또한 소멸하는 집단인 제1차 법인집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역취득 직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결납세하여야 한다.

나)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은 개별납세를 적용하였고 제2차 법인집단은 연결납세를 적용한 경우

양집단 모두 역취득 직전에 연결납세를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116) Reg. §1.1502-75(d)(3)(v)(a).

117) Crestol et al.(2002) pp. 2-109~111.

118) Rev. Rul. 72-322, 1972-1 CB 287.

다만, 제1차 법인집단의 구성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역취득 직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도 있고 개별납세를 할 수도 있다.

다)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과 제2차 법인집단 모두 개별납세를 적용한 경우

양집단의 구성법인은 그들 자신이 종전에 적용하던 사업연도를 계속 적용하여 개별납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법인집단이 연결납세를 새로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에서 제2차 법인집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되며 제1차 법인집단이 연결납세를 새로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라'에서 제1차 법인집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라)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은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제2차 법인집단은 개별납세를 적용한 경우

제2차 법인집단의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를 하게 되며 새로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에서 제2차 법인집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법인집단은 공통의 모회사의 전체 사업연도소득과 자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역취득 직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의 연결납세를 하게 된다. 제1차 법인집단의 자회사들은 역취득일부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개별납세하며 역취득후 존속하는 법인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할 때까지 계속 개별납세하게 된다.

5. 회계처리방법

가. 원칙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를 할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¹¹⁹⁾. 즉 연결납세를 하기 전에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을 계속하여 연결납세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법인별로 연결납세 전에 적용하던 방법이 서로 달랐다면 회계처리방법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지 않는 한 연결납세하는 경우에도 구성법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된다.

나. 조세회피방지규정

S와 B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한 법인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였다면 적용할 수 없었을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B가 다른 구성법인 S의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경우, B는 취득하거나 인수한 활동에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활동에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¹²⁰⁾.

예를 들어 용역업을 영위하는 P는 고객과의 정형적인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A유형의 용역 제공에 대하여는 계약시 대금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B유형의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때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있다. 또한 P는 발생주의(accrual method)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수령일과 대금 청구가능일 및 용역 제공일 중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이 경우 P가 회계처리방법을 현금주의(cash method)¹²¹⁾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장의

119) Reg. §1.1502-17(a).

120) Reg. §1.1502-17(c)(1).

121) 현금주의는 미국의 세법상 일정한 요건하에서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인정된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 S를 설립하고 S는 B유형의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회계처리방법으로 현금주의를 선택하며 P는 A유형의 용역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S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없고 P가 사용하던 방법인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¹²²⁾.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가. 대리의 범위

공통의 모회사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한 유일한 대리인으로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조세채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동할 권한이 부여된다. 자회사는 조세채무에 관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후의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용하며, 법인이 새로이 연결납세집단의 자회사가 되었거나 자회사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적용한다¹²³⁾.

나. 대리권 행사의 예시

공통의 모회사에 의한 대리는 다음과 같이 예시된다¹²⁴⁾.

① 연결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한 개별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자회사에게 가능한 선택은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정해지며 종전에 자회사에 의하여 행해진 선택에 대한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122) Reg. §1.1502-16(d) Ex.2.

123) Reg. §1.1502-77(a).

124) Reg. §1.1502-77(a).

② 자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는 공통의 모회사에게 직접 송달되며 공통의 모회사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한 연장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한다.

③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과세처분통지서(notices of deficiencies)와 고지서는 공통의 모회사에게만 송달되며 공통의 모회사에게 송달되면 연결납세집단의 각 자회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리하여 조세법원에 불복청구하는 경우 자회사가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리하여 세액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신청을 하며 세액은 공통의 모회사에게 그의 이름으로 환급된다. 공통의 모회사에게 환급되면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채무가 소멸한다.

⑥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리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보증하거나 과세당국과의 최종합의(closing agreement)를 실행하며 이는 자회사의 행위로 본다.

다. 자회사의 이름으로 송달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의 송달은 공통의 모회사에게 하지 아니하고 각 자회사에게 하여야 한다¹²⁵⁾.

①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 중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과세처분통지서

②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 중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고지서

③ 고지세액의 징수 및 체납처분

125) Reg. §1.1502-77(a).

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권리는 공통의 모회사가 대리할 수 없다¹²⁶⁾.

- ① 연결납세여부의 선택
- ② 점령지세액공제(Puerto Rico and possession tax credit)의 선택¹²⁷⁾
- ③ DISC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의 선택¹²⁸⁾
- ④ DISC에 의한 회계기간의 변경여부의 선택¹²⁹⁾

마. 공통의 모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해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산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그 존재가 소멸될 것이 기대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구성법인이 공통의 모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¹³⁰⁾.

126) Reg. §1.1502-77(a).

127) IRC §936(e).

128) Reg. §1.992-2.

129) Reg. §1.991-1(b)(3)(ii).

130) Reg. §1.1502-77(d).

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가. 연대납세의무

1) 일반원칙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와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간동안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는 연결세액을 연대하여 연결납세신고기한(연장된 기한은 제외)내에 납부하여야 한다¹³¹⁾.

2) 연결이탈한 자회사의 납세의무

자회사의 주식이 시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각 또는 교환됨에 따라 당해 자회사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세액이 과세처분되기 전에 발생하였다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자회사였던 법인에게 과세처분세액 중 당해 법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¹³²⁾. 즉 당해 법인은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경감약정의 효과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간 또는 구성법인과 다른 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각 구성법인에 대한 연결세액의 연대납세의무를 경감할 수 없다¹³³⁾.

131) Reg. §1.1502-6(a).

132) Reg. §1.1502-6(b).

나. 연결추정세액의 예납

1) 일반원칙

연결납세집단이 2개의 연속적인 사업연도에 걸쳐 연결납세신고를 한다면 그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로 전환될 때까지 연결기준으로 세액을 추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2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연결기준 또는 개별기준 중 선택하여 추정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¹³⁴⁾. IRC에 의하면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한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25%씩을 추정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¹³⁵⁾.

2) 추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최초의 2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추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납부방법과는 관계없이 연결기준 또는 개별기준 중 연결납세집단이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에는 연결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¹³⁶⁾.

다. 연결세액의 배분

1) 연결납세규칙상의 배분방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연결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133) Reg. §1.1502-6(c).

134) Reg. §1.1502-5(a).

135) IRC §6655.

136) Reg. §1.1502-5(b).

를 지므로 구성법인이 집합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는 구성법인간 세액의 배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연결세액을 구성법인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또는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연결세액은 당해 법인의 E & P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결세액의 배분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세액을 구성법인간에 어떻게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각 구성법인의 E & P에서 차감될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은 E & P를 산정할 목적으로 선택한 연결납세규칙상의 세액배분방법에 따라 배분된 세액을 각 구성법인이 납부할 수도 있고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과 다르게 배분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즉 구성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세액분담약정을 맺기도 하고 공통의 모회사가 일방적으로 세액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과 당해 세액배분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는 제VI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이익의 귀속

가) 사법부 판단의 기준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의 이익이 어느 구성법인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연결납세기 사용된 결손 등의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액감소의 이익이 결손 또는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구성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구성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은 통일적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⁷⁾.

① 판단의 기준은 부당한 부의 증가(unjust enrichment) 여부이다.

② 각 구성법인의 이사회가 결정한 사업상의 판단(business judgement)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이 연결납세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이익이 결손법인 또는 이익법인 중 어느 편에게 귀속될 것인지를 규정하는 IRC 또는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나) 판례

모회사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세액감소 이익 배분약정이 없는 구성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¹³⁷⁾가 있는 반면에 세액감소 이익 배분약정이 없더라도 결손의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액이 모회사가 아닌 결손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¹³⁹⁾도 있다. 이 두 판례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으나 전자의 판례는 당해 결손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후자의 판례는 당해 결손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자의 판례에서는 모회사가 결손법인에게 세액감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에게 부당한 부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것이다.

137) Crestol et al.(2002), pp. 7-59~7-60.

138) Meyerson v. El Paso Natural Gas Co., 246 A2d 789 (Del. Ch. 1967), Crestol et al.(2002) pp. 7-60에서 재인용.

139) In re Richards Chrysler-Plymouth Corp., 473 F2d 262 (9th Cir. 1973), cert. denied, 412 US 919 (1973), Crestol et al.(2002) pp. 7-60에서 재인용.

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가. 세액계산구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세액은 연결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연결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또한 연결과세소득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할 항목과 수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그림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본 보고서의 제IV장과 제V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III-5]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begin{array}{r}
 \text{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pm \text{ 연결재계산항목 및 수정항목} \\
 \hline
 = \text{연결과세소득} \\
 \times \text{ 법인세율} \\
 \hline
 = \text{연결산출세액} \\
 - \text{연결세액공제} \\
 \hline
 = \text{연결세액} \\
 \hline\hline
 \end{array}$$

나. 특별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으로는 연결납세제도의 근본취지인 관계회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조세부담에 반영하기

위한 단일실체개념에 관한 규정, 연결납세제도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연결납세집단이 해체되거나 일부의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세특성 및 세무상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규정과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1) 단일실체개념을 위한 규정

연결납세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일실체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단일실체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조세특성의 통산: 특정 구성법인의 결손금, 세액공제 등 조세특성이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 또는 세액에서 공제된다. 즉 조세특성이 개별법인별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연결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IV장과 제V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구성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내의 사업부간 거래로 보아 그 발생하는 때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비구성법인에게 처분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인식이 이연된다. 또한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V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③ 세법상 각종 한도 또는 규제의 연결기준 적용: 최저한세, 세액공제, 자선기부금공제, 수입배당공제,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IV장, 제VII장 및 제V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세회피방지규정

연결납세의 선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SRLY: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결손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역취득(reverse acquisition): 역취득의 의의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 있으며 SRLY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내포손실(built-in loss): 내포손실이라 함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장부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보다 큰 차액을 말하며 연결납세를 선택한 후 당해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실현손실은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④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 자회사의 결손누적에 대하여 투자수정을 한 결과 자회사 주식에 대한 모회사의 기초가액이 0 이하로 되는 경우 초과손실계정으로 관리하였다가 당해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Ⅵ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⑤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부인 및 당해 자회사손실의 공제 제한: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처분 사업연도의 자회사의 손실은 연결과세소득에서의 공제가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⑥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 전환증권을 이용하여 특정 자회사를 관계회사집단에 포함시키거나 제외되도록 하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 있다.

⑦ 유형별 포괄규정: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 수정, 초과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투자수정과 E & P

투자수정과 E & P는 구성법인 각자의 개별실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단일실체개념과 관련이 없으며 연결납세집단이 해체되거나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에 의하여 비구성법인에게 처분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들이다.

투자수정은 자회사에게 손익이 발생하거나 자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당해 자회사의 주식이 처분되는 때 모회사의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규정은 자회사이익의 중복과세 및 자회사손실의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 & P라 함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결이탈 또는 연결해체를 대비하여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한 규정은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IV. 연결과세소득

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은 연결납세집단의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¹⁴⁰⁾의 합계액에 조정하여야 할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산정한다.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정하여야 할 항목은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되는 항목과 그 이외의 수정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연결재계산항목

개별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감조정하였던 항목을 제거하고 연결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가감조정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¹⁴¹⁾.

- ① 결손금공제(net operating loss deduction)
- ② 자본손익(capital gains and losses)
- ③ 사업용자산처분손익(\$1231 gains and losses)
- ④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 ⑤ 폐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구교역법인공제(Western Hemisphere trade deduction)
- ⑥ 수입배당공제

140) 각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소득을 말한다.

141) Reg. §1.1502-11, §1.1502-12.

⑦ 지급배당공제

나. 연결수정항목

연결재계산항목 이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가감조정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⁴²⁾.

- ①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또는 인식(Reg. §1.1502-13)
- ② 내포손실의 공제제한(Reg. §1.1502-15)
- ③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Reg. §1.1502-17)
- ⑤ 재고수정(Reg. §1.1502-18)¹⁴³⁾
- ⑥ 초과손실계정으로 인하여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Reg. § 1.1502-19)
- ⑦ 기초가액 및 E & P와 관련한 수정(Reg. §§1.1502-31~33)
- ⑧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Reg. § 1.1502-44)
- 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42)
- ⑩ 자회사 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의 이탈에 대한 손실의 불인정 또는 기초가액의 감액(Reg. §1.1502-20)
- ⑪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의 제한(Reg. § 1.1502-11(b))

142) Reg. §1.1502-12.

143) 1995년 7월 12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Reg. §1.1502-18(g)).

[그림 IV-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개별과세소득산정시 적용하였던 연결재계산항목의 제거	
± 연결수정항목	
<hr/>	
= 수정된 개별과세소득(Reg. §1.1502-12)	
± 연결재계산항목	
<hr/>	
=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hr/> <hr/>	

2. 결손금

가. 연결결손금공제

1) 의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할 연결결손금공제(the consolidated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CNOL deduction)는 다음에 해당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액과 소급공제액의 합계이다¹⁴⁴⁾.

- ① 연결납세집단의 결손금
- ②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성법인의 결손금

2) 연결납세 사업연도로의 이월 및 소급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는 개별 법인의 결손금공제에 관한 IRC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결손금은 과거 2년간의 소득에

144) Reg. §1.1502-21(a).

서 소급공제되거나, 향후 20년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된다¹⁴⁵⁾.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공제된다¹⁴⁶⁾.

3) 개별납세 사업연도로의 이월 및 소급

가) 원칙

연결결손금을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연결결손금 중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amount of CNOL attributable to a member)을 당해 법인에게 배분하여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결결손금’이라 함은 연결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구성법인의 개별결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¹⁴⁷⁾. 따라서 연결결손금은 연결납세집단의 입장에서는 단일 금액으로 관리되지만 연결이탈 또는 개별납세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구성법인별 귀속액이 별도로 관리된다. 즉 연결결손금 중 구성법인별 귀속액으로서 연결납세집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하여 공제될 수 있다.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연결납세 사업연도(an equivalent consolidated return year)¹⁴⁸⁾ 및

145) IRC §172(b)(1)(A).

146) Reg. §1.1502-21(b)(1).

147) Reg. §1.1502-21(b)(2)(iv).

148) 동등한 사업연도(equivalent taxable years)라 함은 연결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전후로 세어서 동일한 숫자관계에 있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결손이 발생한 연결납세 사업연도로부터 3번째 이전의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와 결손이 발생한 연결납

그 이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동등한 연결납세 사업연도 및 그 이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¹⁴⁹⁾.

나)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는 사업연도

구성법인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도중에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연결결손금의 잔액 중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제하고 잔액이 당해 법인의 최초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¹⁵⁰⁾.

다) 자손원칙(offspring rule)

법인의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특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연결결손금의 금액은 당해 구성법인이 설립하기 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소급되어 공제될 수 있다. 또한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공통의 모회사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된다¹⁵¹⁾.

① 공통의 모회사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경우

② 결손금이 소급공제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인 경우

예를 들어 제1차 연도에 A씨는 P와 T를 설립하여 각각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또한 제2차 연도 3월에 P는 S를 설립하고 P와 S는 연결납세신고를 하였고 제3차 연도초에 P는 T의 주식을 A씨로부터 취득하여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P

세 사업연도로부터 3번째 이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동등한 사업연도이다(Reg. §1.1502-21(b)(2)(iii)).

149) Reg. §1.1502-21(b)(2)(i).

150) Reg. §1.1502-21(b)(2)(ii)(A).

151) Reg. §1.1502-21(b)(2)(ii)(B).

에 의한 T의 취득은 IRC §382의 지분변동¹⁵²⁾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3차 연도에 연결결손금 \$1,100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별결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P에 \$200, S에 \$300, T에 \$600이 배분된다고 가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제3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 \$1,100 중 P와 S에게 배분되는 \$500은 제1차 연도의 P의 개별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된다. S는 제1차 연도에는 설립되기 전이지만 자손원칙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만약 제1차 연도에 \$500의 전액이 공제될 수 없다면 제2차 연도의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된다. 한편 T에게 배분된 연결결손금 \$600은 제1차 연도의 T의 개별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되고 전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면 제2차 연도의 T의 개별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된다¹⁵³⁾.

4) 소급공제의 포기

연결납세집단은 소급공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한번 포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소급공제의 포기는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의 서명에 의하여 연결납세집단 전체에 적용한다¹⁵⁴⁾.

152) 제Ⅶ장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임.

153) Reg. §1.1502-21(b)(2)(v) Ex.1.

154) Reg. §1.1502-21(b)(3)(i).

나. 개별납세제한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제한

1) 개별납세제한연도

가) 의의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라 함은 구성법인(a member) 또는 구성법인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a predecessor of a member)¹⁵⁵⁾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를 말한다¹⁵⁶⁾. SRLY제도는 결손금의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의 적용 등을 목적으로 결손기업을 취득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SRLY는 그 중 하나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써 내포손실공제 제한,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역취득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나) 예외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함에 따른 개별납세 사업연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SRLY로 보지 아니한다¹⁵⁷⁾.

① 조세특성(tax attribute)¹⁵⁸⁾이 이월 또는 소급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인 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역취득의

155)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구성법인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을 말한다(Reg. §1.1502-1(f)(4)).

- ① 청산에 따른 분배,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월 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게 승계(IRC §381(a))되는 경우
- ② 자산을 양수 또는 분배받는 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양도 또는 분배하는 법인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자산의 기초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한함)

156) Reg. §1.1501-1(f)(1).

157) Reg. §1.1501-1(f)(2).

158) 이월결손금, 미사용 이월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경우 제외)

②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법인의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

③ 자산을 구성법인에게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이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

다) 역취득

역취득의 경우 제1차 법인과 그의 자회사의 역취득일 이전에 종료하는 모든 사업연도는 SRLY로 보며 제2차 법인과 그의 자회사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는 역취득 직전에 SRLY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SRLY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P가 T에게 합병되고 합병 직전에 P의 주주였던 법인이 T주식의 시가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T 또는 T의 자회사의 합병전 결손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와는 반대로 P 또는 P의 자회사의 합병전 결손¹⁵⁹⁾은 SRLY가 아닌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¹⁶⁰⁾.

2) SRLY에 대한 결손금공제의 제한

가) 일반원칙

특정 구성법인의 SRLY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의 누적액은 당해 구성법인의 손익만에 의하여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159) P의 자회사의 합병전 결손의 경우에는 P의 자회사가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걸쳐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고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에 한한다.

160) Reg. §1.1501-1(f)(3).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한다¹⁶¹⁾.

- ① 연결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 ②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실제로 포함시킨 당해 구성법인의 손비(자본손실 포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당해 구성법인이 계속적으로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사업연도(결손이 이월되거나 소급되는 사업연도 포함)만을 말한다. 다만, 이월공제에 있어서 결손이 이월되는 사업연도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소급공제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 ④ 내포손실의 공제배제¹⁶²⁾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SRLY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손

결손이 SRLY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결손이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결손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¹⁶³⁾.

다) 사례

(1) SRLY 공제한도의 산정사례¹⁶⁴⁾

P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제1차 연도에 T를 설립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T는 차기로 이월될 \$100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초에 P는 T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2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연결결손금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300이며 T의 손익만으로 연결

161) Reg. §1.1501-21(c)(1)(i).

162) Reg. §1.1502-15.

163) Reg. §1.1501-21(c)(1)(ii).

164) Reg. §1.1501-21(c)(1)(iii) Ex.1.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면 \$70이다.

이 사례에서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결손 \$100은 SRLY에 발생한 것이다. P에 의한 T의 취득은 IRC §382(g)의 지분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결손 \$100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2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인 \$70이다. 따라서 결손 중에서 \$70이 제2차 연도에 연결결손금으로서 공제된다.

위의 사례에서 제2차 연도에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연결결손금 공제전)이 \$370의 결손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RLY 공제한도는 '0'이므로 제1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100은 제2차 연도에 공제될 수 없다. 또한 제3차 연도에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연결결손금 공제전)이 \$37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제3차 연도로의 이월공제는 계속 제한된다. 왜냐하면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이 양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이월공제의 사례¹⁶⁵⁾

제1차 연도에 A씨는 P를 설립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P는 차기로 이월될 \$40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에 P는 소득이 없었으며 A씨가 소유하는 T는 차기로 이월될 결손 \$50이 발생하였다. 제3차 연도 중 P는 A씨로부터 T의 주식을 취득하여 관계회사 집단이 형성되었다. 제3차 연도에 P와 T는 각각 \$120과 \$60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4차 연도부터 연결납세신고를 하며, \$160의 연결과세소득(연결결손금 공제전)이 계산되었다. 이 경우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은 \$70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5) Reg. §1.1501-21(c)(1)(iii) Ex.2.

	제1차 연도 (개별납세)	제2차 연도 (개별납세)	제3차 연도 (개별납세)	제4차 연도 (연결납세)
P	\$ (40)	\$ 0	\$ (120)	\$ 90
T	0	(50)	(60)	70
연결과세소득				\$160

이 사례에서 우선 P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연도는 P가 공통의 모회사이므로 SRLY가 아니다. 따라서 제1차 연도에 발생한 \$40의 결손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120의 결손은 SRLY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이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고 연결과세소득 중 잔존액 \$120은 다른 이월공제의 대상이 된다.

T의 제2차 및 제3차 연도는 SRLY에 해당한다. P에 의한 T의 취득은 IRC §382(g)의 지분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2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 \$50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 \$60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4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70이며 제2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50은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으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앞서의 연결과세소득 중 잔존액 \$120은 제2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50의 공제로 \$70이 되며 다른 이월공제의 대상이 된다.

P와 T는 동일한 사업연도(제3차 연도)에 합계 \$180에 달하는 결손(제4차 연도로 이월될 것)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구성법인에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결손금에 비례안분하여 공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P 연결납세집단은 제4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인 \$70 중 제2차 연도의 T의 결손 \$50¹⁶⁶⁾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60 중 \$20 이상은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연도에 연

결결손금으로서 공제될 제3차 연도의 결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P \text{의 결손} = \$120 / (\$120 + \$20) \times \$70 = \$60$$

$$T \text{의 결손} = \$20 / (\$120 + \$20) \times \$70 = \$10$$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10의 공제는 T의 결손잔액을 \$10로 감소시킨다. 즉 당초 SRLY 공제한도는 \$70이었는데 제2차 연도 T의 결손 \$50과 제3차 연도 T의 결손 \$10이 연결결손금으로 제4차 연도에 공제됨에 따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잔액은 \$10로 감소하는 것이다.

P의 제3차 연도 결손 중 미사용액 \$60과 T의 제3차 연도 결손 중 미사용액 \$50은 제5차 연도로 이월된다. 만약 제5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연결결손금 공제전)이 \$90이고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이 \$4의 결손이라고 가정하면 제5차 연도의 연결결손금공제는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이 된다.

제3차 연도에 발생한 P의 결손잔액 \$60의 전액	\$60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잔액 \$10 중 SRLY 한도내 금액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	\$66
제4차 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실제로 공제한 T의 SRLY 결손	<u>(\$60) \$6</u>
제5차 연도 연결결손금공제	<u>\$66</u>

166) 이미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으로 공제된 금액이다.

(3) 소급공제의 사례¹⁶⁷⁾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제1차, 제2차, 제3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제1차 연도	제2차 연도	제3차 연도	합 계
P	\$100	\$60	\$80	\$240
S	20	20	30	70
T	30	10	(50)	(10)
연결과세소득	\$150	\$90	\$60	\$300

P는 제4차 연도초에 T의 주식 전부를 A씨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제4차 연도에 T는 개별납세신고를 하였으며 \$3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 사례에서 T의 제4차 연도는 SRLY이며 T의 제4차 연도 결손 \$30을 P 연결납세집단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연도로 소급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T의 손익(\$30의 결손은 고려하지 아니함)만으로 제4차 연도까지 누적적으로 계산한다면 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의 결손은 T의 제5차 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4) 내포손실을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사례¹⁶⁸⁾

P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제1차 연도에 \$300을 출자하여 T를 설립하였고 T는 당해 연도에 \$10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

167) Reg. §1.1501-21(c)(1)(iii) Ex.3.

168) Reg. §1.1501-21(c)(1)(iii) Ex.4.

도 중 T의 자산가치는 \$100 감소하였다. 제3차 연도초에 P는 A씨로부터 IRC §382(g)의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통하여 T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며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당해 취득당시 T는 \$100의 미실현 내포손실이 있었으며 제3차 연도초에 T가 당해 미실현손실을 통상손실로 인식하였다.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제3차 연도 및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미실현손실에 대한 T의 인식 및 연결결손금 공제전)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제3차 연도	제4차 연도	합 계
P연결납세집단(T제외)	\$100	\$100	\$200
T	60	40	100
연결과세소득	\$160	\$140	\$300

이 사례에서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통상손실 \$100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되는 내포손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포손실은 SRLY 공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만 이월결손금으로 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3차 연도에 발생한 손실로 본다. 따라서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T의 결손 \$100이 공제되기 전에 \$60의 내포손실이 공제된다.

SRLY 한도를 초과하여 제3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내포손실의 잔액 \$40은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으로 간주되고 이와 관련하여 제3차 연도는 SRLY로 보기 때문에 당해 \$40은 다른 연도로 이월되며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4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제3차 연도 및 제4차 연도의 P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 누적액(연결결손금 공제전)인 $\$100(\$60 +$

\$40)에서 제3차 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사용한 T의 내포손실 \$60을 차감한 잔액 \$40이 된다. 제4차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결손 \$100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결손 \$40이며 선발생 선공제의 원칙에 따라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결손 \$100 중 \$40이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으로서 공제된다.

3) SRLY 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subgroup limitation)

SRLY 하위집단¹⁶⁹⁾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에 대한 SRLY 제한규정은 개별법인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SRLY 하위집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한 금액 및 SRLY에 발생한 결손의 이월 및 소급액으로서 공제되는 연결결손금은 SRLY 하위집단에 속하는 법인들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¹⁷⁰⁾.

결손법인이 SRLY 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SRLY 결손의 잔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¹⁷¹⁾.

169) 연결납세집단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모회사를 취득함에 따라 그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새로이 구성법인으로 된 경우 그 취득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을 말한다.

170) Reg. §1.1501-21(c)(2).

171) Reg. §1.1501-21(c)(2)(vii).

SRLY 하위집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의 누적액

$$\begin{array}{l} \text{하위집단을 이탈하는 법인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 \text{되었을 당시에 가졌던 이월결손금} \\ \times \hline \text{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들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 \text{되었을 당시에 가졌던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end{array}$$

가) SRLY 하위집단의 구성사례¹⁷²⁾

(1) 사실관계

A씨는 P, S, T, M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와 M은 각각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다. 제1차 연도 중 P는 \$5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초에 P는 S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여 S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으며 그 당시 S가 보유하는 자산의 기초가액 합계액은 자산의 시가총액보다 \$70 더 큰 금액이었다. 제3차 연도초에 P는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여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으며 그 당시 T는 이월결손금 \$60을 가지고 있었다. 제4차 연도 중 내포이익이 있는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S는 S1을 설립하고 T는 T1을 설립하여 S1과 T1은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7차 연도중 M은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M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P의 이월결손금 \$50과 T의 이월결손금 \$60이 M 연결납세집단의 제7차 연도로 이월되며 S의 자산에 대한 시가와 기초가액은 S가 종전의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

172) Reg. §1.1501-21(c)(2)(viii) Ex.1.

(2)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50)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 \$50은 공통의 모회사 것이기 때문에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손금 공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50)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 \$50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손금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당해 결손과 관련한 SRLY 하위집단은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P, S, T, S1, T1으로 구성된다.

(4)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70)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 \$70은 S가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후 5년내 인식된다면 내포손실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S가 P 연결납세집단에 속하기 전 60월간 P, T, T1과 관계회사집단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P, T, T1은 P 연결납세집단에서 S의 미실현손실과 관련한 SRLY 하위집단에 포함될 수 없다. S의 자산을 승계한 법인으로서 S1은 S와 함께 하위집단으로서 P 연결납세집단에 포함된다. 또한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당시 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인 S가 S1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S1의 소득은 내포손실에 의하여 공제될 수 있는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5)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70)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 \$70은 S가 M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후 5년내 인식된다면 내포손실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S가 M 연결납세집단에 속하기 전 S는 60월간 P(T, T1은 아님)와 관계회사집단을 형성하였고 S1은 S의 자산을 승계

한 법인이다. 따라서 S의 미실현손실과 관련하여 S, S1, P는 제7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의 하위집단을 형성한다.

(6)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60)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 \$60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결손금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P, S, S1은 T의 결손이 발생할 당시 T가 속했던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P, S, S1은 P 연결납세집단에서 T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다. T의 자산을 승계한 법인으로서 T1은 P 연결납세집단에서 T와 함께 SRLY 하위집단을 구성한다.

(7)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60)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 \$60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결손금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T와 T1은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SRLY 하위집단의 유일한 구성법인이 된다.

나) SRLY 한도의 하위집단별 적용사례¹⁷³⁾

(1) 사실관계

A씨는 P, S, T, M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와 M은 각각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다. 제2차 연도에 P는 A씨로부터 S와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여 S와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3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P로부터 발생한 연결결손금 \$45을 가지게 되었다. 제4차 연도초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M은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종전의 P 연

173) Reg. §1.1501-21(c)(2)(viii) Ex.2.

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M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2) SRLY 하위집단

결손이 발생한 P의 사업연도인 제3차 연도는 M 연결납세집단에 대하여 SRLY에 해당한다. 그러나 P, S, T는 제3차 연도가 P 연결납세집단에 대하여 SRLY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차 연도의 결손과 관련하여 SRLY 하위집단을 구성한다. P의 결손은 M 연결납세집단의 제4차 연도로 이월되며 하위집단을 기준으로 SRLY 제한이 적용된다.

(3) 제4차 연도의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

제4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은 \$10이며 SRLY 하위집단(P, S,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다면 \$45이라고 할 때 제3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P의 결손에 대한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는 \$45이 된다. 그러나 M 연결납세집단은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공제는 \$10이 된다.

(4) 제5차 연도의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

제5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제5차 연도의 연결결손금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은 \$100이며 SRLY 하위집단(P, S, T)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제5차 연도에 \$100의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는 \$35(제4차 연도와 제5차 연도의 SRLY 하위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의 합계인 \$45에서 제4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이월결손금 \$10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따라서 제5차 연도의 연결결

손금공제는 \$35이 된다.

4) 지분변동후 결손금공제

연결결손금공제에 관하여 연결납세규칙의 규정과 IRC §382(지분변동후 결손금공제의 제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¹⁷⁴⁾.

다. 이중거주법인의 결손금공제 제한

1) 개요

가) 연결과세소득에서의 공제 제한

이중거주법인의 결손(dual consolidated loss)은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¹⁷⁵⁾. 이 규정은 당해 결손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외국에서 당해 결손과 공제된 소득이 미국에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여기에서 이중거주법인(dual resident corporation)이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도 무제한 납세의무자¹⁷⁶⁾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별도 사업부(separate unit)¹⁷⁷⁾로서 외국에서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에서 발생한 결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부가 당해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보고 결손금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174) Reg. §1.1501-21(g).

175) Reg. §1.1503-2(b)(1).

176) 당해 외국에서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되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77) 외국지점,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신탁의 지분을 말한다.

나) 승계받은 법인의 소득에서의 공제 제한

이중거주법인의 결손은 당해 이중거주법인의 조세특성을 승계¹⁷⁸⁾받은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또한 내국법인의 이중거주사업부에서 발생한 결손은 당해 사업부의 폐지, 청산, 매각 기타 처분후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중거주법인이 IRC §381에 따라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였고 그 자산을 이전받은 법인이 자산을 이전하는 이중거주법인과 동일한 외국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법인이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이중거주법인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부로서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을 이전받는 이중과세법인 또는 사업부의 소득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이중거주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IRC §381에 따라 사업부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당해 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당해 사업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¹⁷⁹⁾.

2) 사례¹⁸⁰⁾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P는 내국법인인 DRC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와 DRC는 미국세법에 따라 연결납세신고를 한다. DRC는 W국에서 경영되고 지배되며, W국은 경영 또는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무제한납세의무 여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DRC는 이중거주법인에 해당한다.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까지 DRC는 결손이 발생하였다. 제3차 연도말에 DRC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으며 잔여자산을 P에게 분배하고 청산하였다.

178) IRC §381.

179) Reg. §1.1503-2(b)(2).

180) Reg. §1.1503-2(b)(4).

나) 분석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의 DRC의 결손은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P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DRC가 이중거주법인이 아니라면 DRC가 청산한 후 이월결손금은 IRC §381에 따라 P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DRC가 자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P에게 자산을 분배하고 청산하였으며 P가 DRC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부로 영위하고 있다면 DRC의 결손은 당해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P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3. 자본손익 및 사업용자산 처분손익

가. 자본손익

1) 자본이득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의 자본이득(capital gain)과 관련한 항목¹⁸¹⁾은 개별법인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결납세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특정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자본이득순이익(consolidated capital gain net income)은 다음의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¹⁸²⁾.

- ① 구성법인들의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판매 또는 교환손익
- ② 사업용자산(IRC §1231 assets)의 연결순처분이익
- ③ 순자본손실의 이월 또는 소급공제

181) 자본이득순이익(capital gain net income), 순장기자본이득(net long-term capital gain),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을 포함한다.

182) Reg. §1.1501-22(a).

2) 순자본손실의 이월 및 소급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의 순자본손실(순단기자본손실 포함)은 개별법인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결납세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결순자본손실은 연결납세 사업연도 또는 개별 납세 사업연도(당해 손실을 배분한 후)로 이월 또는 소급된다¹⁸³⁾. 이 경우 순자본손실은 과거 3년간의 순자본이익에서 소급공제되거나, 향후 5년간의 순자본이익에서 이월공제된다¹⁸⁴⁾. 또한 순자본손실의 이월 및 소급공제에 관하여는 결손금의 이월 및 공제와 유사한 제한(SRLY 제한 포함)이 적용된다¹⁸⁵⁾.

나.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익

1) 연결납세집단을 기준으로 산정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익(net §1231 gain or loss)은 개별법인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결납세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¹⁸⁶⁾. 사업용자산 순처분이익은 자본손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하며 사업용자산 순처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통상손실로 본다.

183) Reg. §1.1501-22(b).

184) IRC §1212(a)(1)(A) & (B).

185) Reg. §1.1501-22(c).

186) Reg. §1.1501-23(a).

2) 사례¹⁸⁷⁾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T는 \$20의 순자본손실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 초에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자본손실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2차 연도 중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 연결과세소득에의 기여(T의 순자본손실 이월액을 고려하기 전)는 다음과 같다.

		P	T
제1차연도(SRLY)	통상손익	-	-
	자본손익	-	(20)
제2차 연도	통상손익	10	20
	자본손익	70	0
	순사업용자산처분손익	(60)	30

나) 세무상 처리

IRC §1231에 의하면 특정 사업연도의 사업용자산처분손실이 사업용자산처분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익은 통상손익으로 간주된다. P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용자산처분손실 \$60이 사업용자산처분이익 \$30을 초과하므로 순액 \$30은 통상손실로 본다. T의 순사업용자산처분이익은 P 연결납세집단의 순사업용자산처분손실과 상계되어 순사업용자산처분손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T의 순사업용자산처분이익 \$30은 연결자본손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상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T의 손익만으로 산정한 연결

¹⁸⁷⁾ Reg. §1.1501-23(b).

순자본이익은 \$0이 되며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자본손실은 제2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다.

4. 기타 연결기준공제

가. 자선기부금공제

1) 연결공제액의 산정

자선기부금공제는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연결자선기부금공제 (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¹⁸⁸⁾.

- ① 구성법인에게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자선기부금공제¹⁸⁹⁾의 합계
- ② 수정연결과세소득¹⁹⁰⁾의 5%.

2) 한도초과액의 이월

연결납세집단의 연결자선기부금 한도초과액과 구성법인의 개별 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선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른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연결자선기부금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188) Reg. §1.1502-24(a).

189) IRC §170에서 규정하는 자선기부금으로 하되 자선기부금 한도(법인 과세소득의 10%, IRC §170(b)(2) & (3))의 초과 및 연결자선기부금의 이월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으로 한다.

190) 수정연결과세소득이라 함은 자선기부금공제, 수입배당공제, 지급배당공제, 연결결손금 소급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연결과세소득을 말한다.

나. 수입배당공제

1) 연결공제액의 산정

특정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공제는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연결수입배당공제는 다음의 '가)'와 '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단, 연결순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중 '가)'의 금액으로 한다¹⁹¹⁾.

가) 구성법인에게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수입배당공제의 합계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한다¹⁹²⁾.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배당액의 7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소규모사업투자법(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에 의한 소규모사업투자회사가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액의 10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의 적격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액의 10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적격배당(qualifying dividends)이라 함은 배당을 받는 법인이 배당일 현재 배당하는 법인과 동일한 관계회사 집단의 구성법인이고 당해 배당이 배당하는 법인의 E & P 중에서 지급되는 배당을 말한다.

④ 다른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액의 8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191) Reg. §1.1502-26(a)(1).

192) IRC §§243, 244 & 245.

⑤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배당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당액 중 당해 지급배당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70% 또는 8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 중 미국내 원천소득 해당부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나) 연결과세소득의 85%

연결과세소득에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여기에서 연결과세소득이라 함은 연결결손금공제, 연결지급배당공제, 연결수입배당공제, 연결순자본손실의 소급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수정연결과세소득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구성법인 중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금융기관(thrift institution)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수입배당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중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¹⁹³⁾.

① 구성법인 중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이 5% 이상을 보유하는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관련하여 산정한 수입배당공제액

② 당해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대손율¹⁹⁴⁾

193) Reg. §1.1502-26(a)(3) & (4).

194) IRC §593(b)(2).

3) 내부배당

연결수입배당공제는 구성법인간의 배당으로서 연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¹⁹⁵⁾.

다. 지급배당공제

지급배당공제(\$247 deduction)는 공익법인이 지급한 우선주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된다. 연결지급배당공제는 구성법인인 공익법인이 비구성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합계와 당해 공익법인의 과세소득의 합계 중 적은 금액에 지급배당공제율¹⁹⁶⁾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수입배당공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는 지급배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¹⁹⁷⁾.

5. 내포손실

가. 개요

내포손실은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IRC §382(지분 변동후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SRLY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내포손실은 실제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SRLY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SRLY에 발생한 가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내포손실은

195) Reg. §1.1502-26(b).

196) 14%를 최고 법인세율로 나눈 비율.

197) Reg. §1.1502-27(a).

손비로서 허용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금의 이월 및 소급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연결과세소득과 상계된다. 그러나 내포손실 중 손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으로 보며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는 SRLY로 취급된다¹⁹⁸⁾.

나. 정의

1) 내포손실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¹⁹⁹⁾이 되는 날에 순미실현 내포손실²⁰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내포손실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인식된 내포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SRLY 제한의 적용하에 공제될 수 있다²⁰¹⁾.

2) 미실현 내포손실

미실현 내포손실(net unrealized built-in loss)이라 함은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자산의 시가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정기초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미실현 내포손실이 자산의 시가총액의 15%와 \$10,000,000 중 적은 금액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또한 자산 중 현금, 현금대용항목 및 시가가 수정기초가액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시장성있는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에 서는 미실현 내포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²⁰²⁾.

198) Reg. §1.1501-15(a).

199)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200) 미실현 내포손실에서 미실현 내포이익을 차감한 잔액.

201) Reg. §1.1501-15(b)(1).

202) IRC §382(h)(3)

3) 인식된 내포손실

인식된 내포손실(recognized built-in loss)이라 함은 인식기간(recognition period)내에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인식한 손실을 말한다. 이 경우 인식기간은 지분변동후 5년내의 기간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²⁰³⁾.

- ① 지분변동 직전에 내포손실을 가진 법인 이외의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처분손실
- ② 지분변동일 현재의 미실현 내포손실을 초과하는 처분손실

다. 하위집단의 내포손실

1) 내포손실공제 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

내포손실공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결손금공제에서와 같이 하위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위집단별로 적용한다²⁰⁴⁾.

2) 하위집단의 구성법인

하위집단은 당해 손실을 인식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료하는 60월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관계회사였던 구성법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성법인은 결손을 인식한 법인과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으로 잔존하게 된다²⁰⁵⁾.

203) IRC §382(h)(2)

204) Reg. §1.1501-15(c)(1).

205) Reg. §1.1501-15(c)(2).

라.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인식되는 내포손실

관계회사집단이 형성되는 때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산에 대하여 인식되는 처분손실은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가 될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고 미실현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⁰⁶⁾.

마. 사례

1) 인식된 내포손실의 결정사례²⁰⁷⁾

가) 사실관계

A씨는 P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T는 2개의 상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1은 \$55의 미실현손실(기초가액 \$75, 시가 \$20)을 가지고 있고 자산 2는 \$20의 미실현이익(기초가액 \$30, 시가 \$50)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연도 중 P는 A씨로부터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나) 내포손실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때 $\$35(=\$55-\$20)$ 의 순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며 이 금액은 내포손실로 인정되기 위한 최저금액을 초과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T의 미실현손실 \$55은 5년의 인식기간내 인식된다면 내포손실로 취급되며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206) Reg. §1.1501-15(f).

207) Reg. §1.1502-15(d) Ex.1.

2) SRLY 한도의 계산사례²⁰⁸⁾

가) 사실관계

A씨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에 A씨는 \$300을 출자하여 T를 설립하였고 T는 \$10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중 T의 자산가치는 \$100 감소하였다. 제3차 연도초에 P는 A씨로부터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T는 \$100의 순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진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100은 순미실현 내포손실의 최저금액(threshold requirement)을 초과한다고 가정한다. 제3차 연도중 미실현 내포손실을 \$100의 통상손실로 인식하였다.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제3차 연도 및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미실현 내포손실에 대한 T의 인식 및 연결결손금 공제전)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제3차 연도	제4차 연도	합 계
P연결납세집단(T제외)	\$100	\$100	\$200
T	60	40	100
연결과세소득	\$160	\$140	\$300

나) 내포손실의 공제

제3차 연도에 T가 인식한 통상손실 \$100은 내포손실에 해당하며 SRLY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으로 간주된다.

제3차 연도에 T의 내포손실 \$100과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100의 공제는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P 연결납세집단의

208) Reg. §1.1502-15(d) Ex.4.

제3차 연도 연결과세소득 \$60로 제한된다. 즉 제3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60이다.

\$100의 내포손실은 SRLY 공제한도를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의 손실로 본다. 따라서 내포손실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에 앞서서 공제된다. 그러나 내포손실(\$100)이 SRLY 공제한도(\$60)를 초과하기 때문에 제1차 연도로부터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될 수 없다. \$40의 미공제 내포손실은 제3차 연도에 발생한 SRLY 결손으로 보며 다른 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된다.

6. 주식처분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손실의 공제 제한

가. 개요

구성법인(P)이 다른 구성법인(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S의 손실의 공제가 제한되며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S의 손실을 공제하기 위하여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P가 주식을 처분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S의 손비는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감액시키며 이로 인하여 P에 의한 S 주식의 처분이익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실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S의 손실이 주식처분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⁰⁹⁾.

209) Reg. §1.1502-11(b)(2)(i).

나. 제한의 범위 및 적용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되거나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되는 S의 손실은 P의 주식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과세소득(또는 결손)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해 임시결손에 상당하는 S의 손실은 연결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될 수 없고 S의 개별 결손금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S의 손실 중 실제로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만 감액조정하며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지 아니한다²¹⁰⁾.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에서는 다음을 가정한다.

- ① P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S의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 ② S는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 ③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는 역에 의한 1년이며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 ④ 모든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이며 법인세납부액은 무시한다.

1) 기본사례²¹¹⁾

가) 사실관계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0이다. 제1차 연도에 P의 영업소득(주식처분손익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은 \$30이고 S의 영업손실은 \$80이다. P는 제1차 연도 말에 S의 주식을 \$520에 처분하였다.

나) 세무상 처리

210) Reg. §1.1502-11(b)(2)(ii).

211) Reg. §1.1502-11(b)(2)(iii) Ex.1.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과세소득은 \$50의 결손(P의 소득 \$30에서 S의 손실 \$80을 차감한 잔액)이다. 따라서 S의 손실 \$80 중 \$30은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고 \$50은 공제될 수 없다. 또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30이 감액되어 \$500에서 \$47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P의 주식처분이익은 \$50이 되고 P 연결납세집단의 제1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은 \$50(P의 영업이익 \$30, P의 주식처분이익 \$50 및 S의 영업손실 \$30을 가감한 금액)이 된다. 또한 P가 S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S는 P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게 되며 공제되지 아니한 S의 손실 \$50은 S의 개별결손금으로서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2)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사례²¹²⁾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30이고 연결순자산손실은 \$100(P로부터 \$50, S로부터 \$50씩 발생하였음)이다. 제2차 연도초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300이다. 제2차 연도에 P의 영업소득은 \$30, 자본이익은 \$20(제1차 연도의 연결순자산손실 이월액과 P의 주식처분이익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며 S의 영업손실은 \$100이다. 제2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280에 처분하였다.

나) 공제제한금액의 결정

제2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과세소득은 \$70의 결손(P의 영업소득 \$30에서 S의 영업손실 \$100을 차감한 잔액)이며 P

212) Reg. §1.1502-11(b)(2)(iii) Ex.2.

의 자본이득 \$20은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연결순자본손실 중 \$20(P와 S에게 각각 \$10씩 배분됨)과 상계되어 연결자본이득은 없다. 또한 \$70의 임시연결결손금 중에서 \$30은 제1차 연도로 소급공제되고 \$40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따라서 제2차 연도의 S의 영업손실 중 \$40과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연결순자본손실 중 S에 해당되는 금액인 \$40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주식의 기초가액 및 연결과세소득

S의 결손으로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제2차 연도 S의 영업손실 \$100 중 공제제한금액 \$40을 차감한 잔액 \$60과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S의 자본손실 중 \$10의 합계인 \$70이다. 따라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70이 감액되어 \$300에서 \$230로 조정되며 제2차 연도의 P의 주식처분이익은 \$50이 된다. 이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은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의 결손을 제한없이 제1차 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게 된다.

통상소득(ordinary income)	
P	\$30
S(공제제한금액 \$40을 제외한 금액)	(60)
합계	(30)
연결순자본이득	
P(\$20 + 주식처분이익 \$50 - 제1차 연도의 자본손실 이월액 \$50)	20
S(제1차 연도의 이월액)	(10)
합 계	10
연결과세소득(- \$30 + \$10)	(\$20)

라) 사후처리

S의 영업손실 중 제2차 연도에 공제가 제한된 \$40은 제2차 연도에 발생한 개별결손금으로 본다. 또한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S의 자본손실 중 \$40은 S의 개별 자본손실로 본다. P의 주식처분으로 S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게 되며 제2차 연도의 결손 중 \$40과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자본손실 \$40은 S에게 분배되고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3) 주식의 일부처분 사례²¹³⁾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100이다. P는 S의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으며 제2차 연도초 S의 주식 1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40이다. 제2차 연도에 P의 영업손실은 \$80(S 주식의 처분손익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고 S의 영업손실은 \$80이다. 제2차 연도말 P는 S의 주식 2주를 1주당 \$85에 매각하였다.

나) 공제제한금액의 결정

P 연결납세집단의 제2차 연도의 임시과세소득은 \$160의 결손이다. 이 금액 중 \$100은 소급공제(P와 S에 \$50씩 배분됨)된다. 따라서 공제가 제한되는 금액은 S의 손실 중 \$30이다.

다) 주식의 기초가액 및 연결과세소득

S의 주식 1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40에서 \$35로 감액되며 P는 S의 주식 2주에 대한 주식처분이익으로 \$100을 인식하게 된

213) Reg. §1.1502-11(b)(2)(iii) Ex.3.

다. 따라서 P 연결납세집단은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30의 연결결손금을 갖게 된다.

통상손실(ordinary loss)	
P	(\$80)
S(공제제한금액 \$30을 제외한 금액)	(50)
합계	(130)
연결순자본이익	
P	100
S	0
합 계	100
연결결손금(제한없이 사용가능한 금액)	(\$30)

라) 결손의 배분

제2차 연도의 결손 중 \$130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거나 제1차 연도로 소급공제된다. 즉 제2차 연도에 P의 영업손실 \$80 중 \$61.50($\$100 \times \$80 / \$130$)과 S의 영업손실 \$50 중 \$38.50($\$100 \times \$50 / \130)은 주식처분이익과 상계되고 P의 영업손실 중 잔존액 \$18.50과 S의 영업손실 중 잔존액 \$11.50은 제1차 연도로 소급공제 된다.

다.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P가 S의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실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제제한규정을 적용한다²¹⁴⁾.

214) Reg. §1.1502-11(b)(3).

라. 주식처분손익의 이연

세법 및 연결납세규칙의 다른 규정에 따라 주식처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 공제제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이연된 주식처분손익이 실제로 손익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를 주식처분 사업연도로 본다²¹⁵⁾.

마.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

S가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인 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T의 모든 손익이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에 반영되는 경우 연결납세에 있어서 공제가 제한되는 S의 손실은 S 또는 T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²¹⁶⁾.

1) 모자손(母子孫)관계의 사례²¹⁷⁾

가) 사실관계

P의 100% 자회사인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0이며 S의 100% 자회사인 T의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은 \$500이다. 제1차 연도에 P는 영업소득 \$30이 발생하였고, S는 손익이 없었으며, T는 \$80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제1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520에 매각하였다.

215) Reg. §1.1502-11(b)(4)(i).

216) Reg. §1.1502-11(b)(4)(ii).

217) Reg. §1.1502-11(b)(4)(iii) Ex.1.

나) 공제제한금액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결손은 \$50이며 T의 손실은 \$30만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0에서 \$470로 감액되며 P의 주식처분이익은 \$50이 된다.

다) 초과손실계정이 있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T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이 \$500이 아니고 T 주식에 대하여 \$10의 초과손실계정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앞서의 사실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결손은 \$50이며 T의 손실은 \$30만 공제될 수 있다. T의 손실 중 \$30의 공제는 T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을 \$10에서 \$40로 증가시킨다. 또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10(S 주식의 처분에 따른 초과손실계정 \$40의 소득산입²¹⁸⁾과 T의 손실 \$30의 차액)만큼 증가하여 \$500에서 \$510로 조정된다. 따라서 P는 S 주식의 처분 이익으로 \$10을 인식하게 되며 S는 T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 \$4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2) 형제자매관계의 사례²¹⁹⁾

가) 사실관계

P는 S1과 S2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기초가액은 각각 \$50이다.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주식처분손익을 고려하기 전에 \$100의 결손(S1과 S2가 각각 \$50씩 발생함)이 발생하였다. 제1차 연도말에 P는 S1과 S2의 주식을 각각 \$100에 매각하였다.

218) Reg. §1.1502-19(b).

219) Reg. §1.1502-11(b)(4)(iii) Ex.2.

나) 공제의 제한

S1과 S2는 P에 의하여 자신의 주식이 처분되는 것과 관련하여 손실공제가 제한되지만 다른 법인의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 자회사는 자신의 손실을 P의 다른 자회사주식의 처분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회사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씩 감소하고 P의 주식처분이익의 합계액은 \$100에서 \$200로 증가한다.

7. 자회사주식의 처분 및 연결이탈

가. 처분손실의 부인

1) 개요

자회사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구성법인이 인식한 손실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손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식되는 사건을 말한다²²⁰⁾.

2) 손실이연 및 손실부인에 관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IRC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이 이연되거나 부인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규칙에서의 손실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손실이 이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이 인식되는 때 손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연된 손실이 인식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손실이 인식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부인을 적용

220) Reg. §1.1502-20(a)(1) & (2).

한다²²¹⁾.

- ① 당해 주식을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소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
- ② 주식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상환(소각되거나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한 경우 포함)되었을 때
- ③ 초과손실계정에 관한 규정에서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²²²⁾

3) 동일한 주식처분이익과의 상계

처분손실이 발생한 주식과 동일한 자회사의 주식으로서 중요한 조건이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구성법인들이 주식처분이익을 인식한 경우 당해 주식처분손실은 부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처분이익과 상계된다²²³⁾.

4) 사례

가) 인식된 내포이익으로 인한 손실

P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다. 5년후 P는 T 주식을 \$100에 매각하고 손실 \$100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P의 손실 \$10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²²⁴⁾.

221) Reg. §1.1502-20(a)(3).

222) Reg. §1.1502-19(c)(1)(ii)(B) & (c)(1)(iii).

223) Reg. §1.1502-20(a)(4).

224) Reg. §1.1502-20(a)(5) Ex.1.

나) 취득후 가치증가의 효과

P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다. T는 자산의 처분대가를 재투자하였으며 그 가치가 \$180로 증가되었다. 자산처분후 5년이 되는 때 P는 T의 모든 주식을 \$180에 매각하고 \$2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P의 손실 \$2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²²⁵⁾.

다) 중복손실의 부인 사례

P는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고 S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S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S는 \$60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연결납세집단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해 결손은 연결이월결손금으로 이월되었다. 5년후 P는 S의 주식을 \$40에 매각하고 \$6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P의 손실 \$6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²²⁶⁾.

나. 주식의 연결이탈시 기초가액의 감액

1) 일반원칙

자회사의 주식이 연결에서 이탈²²⁷⁾하기 직전에 자회사 주식에

225) Reg. §1.1502-20(a)(5) Ex.2.

226) Reg. §1.1502-20(a)(5) Ex.3.

227) 자회사 주식의 연결이탈(deconsolidation)이라 함은 당해 자회사 주식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Reg. §1.1502-20(b)(2)). '주식의 연결이탈'은 지분비율 요건 등에 미달하여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제외되는 '자회사의 연결이탈'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대한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기초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감액된다.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주식처분과 주식의 연결이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 손실에 대한 부인을 적용한 후 연결이탈에 대한 기초가액의 감액을 적용한다²²⁸⁾. 이익발생시 상계에 관한 규정은 기초가액의 감액에서도 적용한다²²⁹⁾.

2) 기초가액 감액후 2년내 발생한 손실

자회사 주식이 연결이탈된 후 2년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자회사의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당해 처분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신고와 함께 그 처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이탈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처분하였으나 당해 처분이 연결이탈 후 2년내의 약정,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2년내 처분으로 간주한다²³⁰⁾.

3) 사례

P가 T의 모든 주식 100주를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다. 5년후 P는 T 주식 60주를 \$60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60을 인식하였으며 T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동시에 T 주식 60주도 연결이탈되었음)하였다.

228) Reg. §1.1502-20(b)(1).

229) Reg. §1.1502-20(b)(4).

230) Reg. §1.1502-20(b)(5).

이 경우 P의 처분손실 \$6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잔존 주식 40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80에서 연결이탈 직전의 시가인 \$40로 감액된다²³¹⁾.

다. 공제되는 처분손실 등

1) 개요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부인 및 주식의 연결이탈시 기초가액 감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²³²⁾. 즉 처분손실이지만 소득에서 공제된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식처분 또는 연결이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주식처분 또는 연결이탈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²³³⁾.

가) 특별이익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

특별이익처분(extraordinary gain disposition)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자본자산(IRC §1221), 사업용자산(IRC §1231(b)) 등의 처분
- ②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극적 수정(IRC §481(a))
- ③ 채무의 면제
- ④ 기타 국세청에 의하여 고시되는 사건

나) 적극적 투자수정

적극적 투자수정(positive investment adjustments)이라 함은 자

231) Reg. §1.1502-20(b)(6) Ex.1.

232) Reg. §1.1502-20(c)(1).

233) Reg. §1.1502-20(c)(3).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초가액에 가산되는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수정을 말한다.

- ① 자회사의 과세소득의 발생
- ② 자회사의 소득감면
- ③ 비자본 공제불능 경비

다) 중복손실

중복손실(duplicated loss)은 주식처분 또는 주식의 연결이탈 직후에 결정되며 다음 중 ‘(1)’의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으로 한다.

(1) 다음 금액의 합계액

- ① 자회사의 자산(자회사가 소유하는 다른 자회사의 주식 제외)에 대한 수정기초가액의 합계
- ② 자회사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으로서 주식처분 또는 연결이탈 후 자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 ③ 자회사의 공제 중 이연된 금액

(2) 다음 금액의 합계액

- ① 자회사 주식의 시가
- ② 자회사의 부채
- ③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2) 사례

가) 상실된 내포이익으로 인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처분손실의 사례

P는 A씨로부터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본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4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40로 증가하였다. P는 T의 모든 주식을 \$40에 처분하고 \$10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처분손실 \$100 중 특별이익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 적극적 투자수정 및 중복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특별이익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자본자산 처분이익 \$40이 있으며 적극적 투자수정과 중복손실은 없으므로 처분손실의 공제부인은 \$40로 제한된다. 즉 처분손실 중 \$60은 소득에서 공제된다²³⁴⁾.

나) 적극적 투자수정의 사례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S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제1차 연도에 영업으로 인하여 \$100의 소득을 얻었고 당해 자산의 가치는 \$0로 하락하였다. T는 당해 소득을 제2차 연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여 \$25의 영업결손이 발생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은 제1차 연도말에 \$200로 증가하였고 제2차 연도말에 \$175로 감소하였다. 제5차 연도에 S는 T의 모든 주식을 \$75에 매각하고 \$10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발생한 \$100의 소득은 적극적 투자수정에 해당한다. 제2차 연도에 발생한 \$25의 결손은 소극적 투자수정이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적극적 투자수정 \$100이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 \$100과 동액이므로 처분손실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될

234) Reg. §1.1502-20(c)(4) Ex.1.

수 없다²³⁵⁾.

라. 기초가액이 승계되는 경우의 준용

1) 개요

자회사주식 처분손실의 부인, 자회사 주식의 연결이탈시 기초가액의 감액 및 처분손실공제의 예외규정은 입법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의 기초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²³⁶⁾.

2) 사례²³⁷⁾

가)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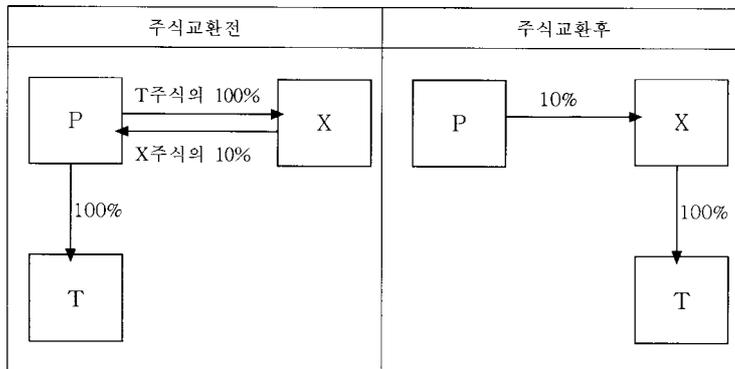
공통의 모회사인 P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하였다. T가 보유하는 유일한 자산의 기초가액은 \$0이고 시가는 \$100이다. T는 당해 자산을 \$100에 처분하고 다른 자산을 \$100에 취득하였다. 투자조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으며 P의 E & P는 \$100 증가하였다. 그후 P는 T의 모든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X에게 IRC §368(a)(1)(B)의 규정에 따라 X 주식의 10%와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교환 당시 P가 받은 X 주식의 시가는 \$80이다.

235) Reg. §1.1502-20(c)(4) Ex.3.

236) Reg. §1.1502-20(d)(1).

237) Reg. §1.1502-20(d)(2) Ex.1.

[그림 IV-2] 기초가액승계시 투자수정사례



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P가 받은 X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200²³⁸⁾이며, X의 T주식에 대한 기초가액도 \$200²³⁹⁾이 된다.

다) X가 받은 T 주식

X가 P로부터 받은 T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교환으로 인하여 손익이 인식되지 아니하였고 T 주식의 연결이탈이 아니므로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및 연결이탈로 인한 기초가액의 감액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P가 받은 X주식

기업구조조정(reorganization) 후 X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이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P가 소유하게 되는 X 주식은 T주식의 승계지분이다. 이 경우 주식교환은 X 주식

238) IRC §358.

239) IRC §362.

에 대한 P의 지분과 관련하여 연결이탈사건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적합하다. X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P가 소유하는 X 주식의 기초가액을 시가로 감액하지 아니할 경우 P 연결납세집단이 손실을 인식하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T는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기 때문에 X 연결납세집단이 P 연결납세집단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식(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감액하도록 할 필요도 없다.

즉 X 주식과 T 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X 주식은 연결이탈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T 주식은 연결이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T 주식에 대한 X의 기초가액은 감액하지 않으며 그대로 \$200이 되지만 X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에서 시가인 \$80로 감액하여야 한다.

마. 조세회피방지규정

1) 개요

납세자가 처분손실부인 또는 연결이탈시 기초가액감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한 경우 입법취지에 적합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²⁴⁰⁾.

2) 반박제규정(anti-stuffing rule)

가) 적용요건

반박제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²⁴¹⁾.

240) Reg. §1.1502-20(e)(1).

241) Reg. §1.1502-20(e)(2)(i).

① 자산(주식 포함)을 양도한 후 2년내²⁴²⁾에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처분 또는 연결이탈이 발생할 것

② 당해 자산의 양도가 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실부인, 연결이탈에 대한 기초가액의 감액 또는 미실현이익의 인식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

나) 기초가액의 감액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연결이탈 직전에 양도를 이유로 회피된 주식처분손실부인, 기초가액의 감액, 이익의 인식액만큼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액한다²⁴³⁾.

3) 사례

가) 시가전환의 사례

P가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P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시가와 기초가액이 \$100인 토지를 T에게 \$200의 상환가격과 상환우선권이 부여된 우선주와의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100의 상환할증(\$200의 상환가격과 \$100의 발행가격의 차이)은 당해 우선주의 시가를 \$100에서 \$200로 증가시키고 보통주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T는 내포이익이 있는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으며 S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합계는 \$300로 증가하였다. 또한 T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200로 증가하고 T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로 유지된다. 그후 P는 당해 보통주를 처

242) 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더라도 2년내에 행한 약정,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43) Reg. §1.1502-20(e)(2)(ii).

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상환할증은 자산의 분배로 간주되며²⁴⁴⁾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당해 분배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보통주의 매각에 따른 P의 손실은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보통주의 기초가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²⁴⁵⁾.

나) 반박제규정의 사례

제1차 연도에 P가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200로 증가하였다. 제5차 연도에 P는 T에게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T에게 양도하였다. 제6차 연도에 P는 T의 모든 주식을 \$200에 처분하였다. 당해 양도는 반박제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반박제규정에 따라 P는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처분 직전에 \$100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초가액의 감액은 \$1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게 한다.

만약 T 주식이 제6차 연도에 처분되는 대신 연결이탈되는 경우에는 P는 T주식의 기초가액을 연결이탈 직전에 \$100 감액하게 된다. 또한 P 주식이 제6차 연도초에 M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M 연결납세집단 외부로 이루어지더라도 \$100의 기초가액의 감액이 필요하게 된다²⁴⁶⁾.

244) IRC §305.

245) Reg. §1.1502-20(e)(3) Ex.1.

246) Reg. §1.1502-20(e)(3) Ex.2.

바. 상위법인에 대한 투자수정배제

1) 개요

구성법인(P)이 보유하는 자회사(S) 주식의 기초가액이 당해 S 주식의 연결이탈에 따라 감액되는 동시에 동일한 거래에서 P 주식의 처분이 있거나 연결이탈이 있는 경우에는 P 주식의 기초가액에 대하여 투자수정을 하지 아니한다²⁴⁷⁾.

2) 사례²⁴⁸⁾

가) 사실관계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는 S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S는 S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S1은 S2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 S1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 및 S2 주식에 대한 S1의 기초가액은 모두 \$100이다. 제1차 연도에 S2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하였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연도에 T는 당해 자산을 \$100에 매각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S, S1, S2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각각 \$200로 증가하였다. 제6차 연도에 S는 S1의 모든 주식을 A씨에게 \$100에 매각하고 \$10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당해 처분 직후 S1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S1, S2, T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 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나) S의 주식처분손실

247) Reg. §1.1502-20(f)(1).

248) Reg. §1.1502-20(f)(2).

S1의 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 본다. 그러나 처분손실 상당액은 제6차 연도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며 S의 E & P의 감소를 통하여 P의 E & P도 감소시킨다.

다) S2 및 T 주식의 기초가액

S가 S1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T와 S2의 주식이 연결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T와 S2의 주식에 대한 S2와 S1의 기초가액은 당해 처분 직전 \$200에서 \$100로 감소한다. 이러한 기초가액의 감액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 본다. 그러나 S2 주식이 T와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연결이탈되었으므로 T 주식의 기초가액 감액은 다시 S2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액시키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S1 주식은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 S2 주식의 기초가액 감액은 S1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액시키지 아니한다.

사. 자회사손실의 모회사에게 재귀속

1) 개요

구성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부인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와 그 하위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의 일부를 그 발생순서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재귀속시킬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재귀속되는 금액은 당해 선택이 없었다면 부인될 처분손실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재귀속된 결손은 당해 결손의 당초 귀속자인 자회사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자회사와 독립적으로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있다²⁴⁹⁾.

249) Reg. §1.1502-20(g)(1).

2) 사례²⁵⁰⁾

가) 사실관계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는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다. 제1차 연도에 S는 \$60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연결결손금으로서 제2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S의 결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감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S의 결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S의 E & P 결손은 P의 E & P 결손에 반영된다. 제2차 연도중 S의 보유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으며 P는 S의 주식을 \$55에 매각하였다. 결손의 재귀속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P의 주식처분손실은 \$45이 되며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나) 결손의 재귀속

P가 S의 \$45 결손에 대하여 재귀속을 선택하였다면 S에게 귀속되는 \$60의 이월결손금 중 \$45은 P에게 재귀속된다. 이렇게 재귀속된 결손은 P 연결납세집단의 차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S의 결손 중 잔존액 \$15은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된다.

다) S 주식의 기초가액

재귀속된 결손 \$45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처분 직전에 \$100에서 \$55로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P는 주식처분으로 이익도 손실도 인식하지 않게 된다.

250) Reg. §1.1502-20(g)(3) Ex.1.

8. 한도초과 불공제 기타 수정항목

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3,000 이상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은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과세소득의 1/3씩을 직전 2년과 변경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한 결과 증가하는 총세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득조정이 필요하다²⁵¹⁾.

나. 한도초과 불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결기준으로 일정한 한도내의 지출만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그 한도초과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①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 ②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Reg. § 1.1502-44)
- ③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42)

다.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 및 E & P 관련수정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및 인식에 대하여는 제V장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며, 기초가액 및 E & P와 관련한 수정 및 초과손실계정으로 인한 소득의 수정에 대하여는 제VI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51) Reg. §1.1502-17(b), IRC §481.

V. 내부거래

1. 개요

가. 의의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는 당해 거래 직후를 기준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거래를 말한다²⁵²⁾. 연결납세제도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의 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가 연결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연결납세규칙에서의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목적은 당해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세액이 증감되거나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²⁵³⁾.

나. 개별실체기준과 단일실체기준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는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인 매출자(selling member; S)²⁵⁴⁾와 매입자(buying member; B)²⁵⁵⁾

252) Reg. §1.1502-13(b)(1)(i).

253) Reg. §1.1502-13(a)(1).

254)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을 말하며 본장에서 'S'로 칭하기로 한다.

255) 자산을 양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을 말하며 본장에서 'B'로 칭하기로 한다.

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경우(개별실체기준; separate entity treatment)도 있고 동일한 법인의 사업부로 보는 경우(단일실체기준; single entity treatment)도 있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당해 자산처분손익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B는 자신의 취득원가를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내부손익(intercompany items)과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의 귀속시기, 유형, 원천, 특성은 거래당시에는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더라도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여 재결정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토지를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고 B가 이를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매각하였다면, S의 매각이익은 B가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인식되지 아니한다²⁵⁶⁾.

개별실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연결납세규칙의 다른 규정은 적용된다²⁵⁷⁾.

다. 손익의 귀속기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부거래규정과 연결납세규칙상의 다른 규정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²⁵⁸⁾.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려면 국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²⁵⁹⁾ 내부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당해 변경이 자동승인된다²⁶⁰⁾.

① 개별납세를 하다가 최초로 연결납세를 하게 된 구성법인이 당

256) Reg. §1.1502-13(a)(2).

257) Reg. §1.1502-13(b)(5).

258) Reg. §1.1502-13(a)(3)(i).

259) IRC §446(e).

260) Reg. §1.1502-13(a)(3)(ii).

해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에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②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한 법인이 최초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구성법인이었다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라. 내부거래의 유형, 시기 및 단위

1) 내부거래의 유형

내부거래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²⁶¹⁾.

① 자산양도: S가 B에게 자산을 매각, 교환, 무상양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거래로 인하여 S가 손익을 인식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② 용역제공: S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B는 S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임대 또는 대여 등: S가 B에게 기술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자산을 임대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B는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주에 대한 분배: B가 S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S가 B에게 자산 등을 분배²⁶²⁾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거래의 시기

거래의 일부는 S와 B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일 때 발생하고 나머지 일부는 구성법인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 제공일과

261) Reg. §1.1502-13(b)(1)(i).

262) 미국 세법상 주주에 대한 분배(distribution)는 배당(dividend)과 출자의 반환을 포함한다.

용역대가의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거래시기로 본다. 이 경우 S 또는 B의 용역제공 정도를 반영하여 당해 거래를 두 개의 독립된 거래로 나누는 조정이 필요하다²⁶³).

3) 거래단위

모든 거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동시에 두 개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 자산의 매각에서는 이익을, 다른 자산의 매각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 각각의 자산이 별개의 거래에 의하여 매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될 수 없다. 또한 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 또는 발생은 그 지급 또는 발생마다 별개의 거래이다. 자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두 법인 모두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S가 되고 동시에 자산의 양수에 대하여 B가 된다²⁶⁴.

마. 내부손익과 대응손익

1) 내부손익

가) 정의

내부손익(intercompany items)이라 함은 내부거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S의 이익 또는 손실²⁶⁵을 말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이익(intercompany gain)이다²⁶⁶.

263) Reg. §1.1502-13(b)(1)(ii).

264) Reg. §1.1502-13(b)(1)(iii).

265) 수익(income), 수익에서 공제되는 손비(deduction), 자산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이득(gain)과 손실(loss)을 포함한다.

266) Reg. §1.1502-13(b)(2)(i).

나) 관련되는 원가 또는 손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S의 원가 또는 손비는 내부손익을 산정하는 데 가감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재고자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고자산에 대한 S의 직접 또는 간접원가는 내부이익(intercompany income)을 산정하는 데 차감된다. 또한 S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자산화(capitalization)되지 않는 관련 원가와 손비도 내부손익을 산정하는 데 가감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내부이익계산시 차감되며, S가 B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내부이익계산시 차감된다²⁶⁷⁾.

다) 인식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금액

S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아직 계상하지 아니한 내부거래의 금액도 내부손익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S가 아직 매출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S의 장부상 매출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S의 내부손익은 인식될 수 있다. 또한 S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자산의 기초가액(취득가액)에 반영한 금액도 그 내용이 내부손익에 해당한다면 내부손익이다²⁶⁸⁾.

2) 대응손익

가) 정의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부거래에서 발생하였거나 내부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B의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B가 S에게 임

267) Reg. §1.1502-13(b)(2)(ii).

268) Reg. §1.1502-13(b)(2)(iii).

대료를 지급한 경우 B의 당해 임대료에 대한 손비공제는 대응공제 (corresponding deduction)이다. B가 S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한 경우 B의 자산처분손익은 대응손익이며 B가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도 대응손익이다²⁶⁹⁾.

나)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거되는 금액

B의 대응손익에는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거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면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²⁷⁰⁾로서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 분배와 관련하여 손실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금액²⁷¹⁾도 대응손익에 포함된다²⁷²⁾.

다) 재계산된 대응손익

재계산된 대응손익(recomputed corresponding items)이라 함은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이고 당해 내부거래가 그 사업부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B가 대응손익으로 인식하였을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장부가액이 \$70인 자산을 \$100에 매각하였고 B는 당해 자산을 개인 A씨에게 \$90에 매각하였다면 S의 내부손익은 \$30 이익이고, B의 대응손익은 \$10 손실이며, 재계산된 대응손익은 \$20 이익(\$90과 \$70의 차액)이다. 재계산된 대응손익은 S와 B가 실제로 계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B가 이를 계상한 것처럼 산정한다²⁷³⁾.

269) Reg. §1.1502-13(b)(3)(i).

270) IRC §265.

271) IRC §§311(a), 332 & 355(c).

272) Reg. §1.1502-13(b)(3)(ii).

273) Reg. §1.1502-13(b)(4).

3)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특성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특성(attributes)이라 함은 과세소득 또는 법인세액에 대한 당해 손익의 영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속성(characteristics)으로서 금액, 발생장소 및 귀속시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손익의 특성은 귀속의 주체(인격), 소득의 원천, 과세제외, 비자본 공제불능경비, 내포손익으로서의 성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구성법인의 보유기간, 자산이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과 같은 자산의 속성은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손익의 특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²⁷⁴⁾.

2. 대등원칙

가. 개요

1) 의의

대등원칙과 촉진원칙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의 인식금액과 인식시기를 규제하며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과 모회사 및 자회사의 E & P의 증감 여부를 정한다.

대등원칙(matching rule)은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일 법인의 한 사업부라고 가정할 때의 조세효과와 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효과가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74) Reg. §1.1502-13(b)(6).

따라서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동일한 법인내의 사업부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 등으로 실현되는 때까지 손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그러나 동일 법인내의 사업부간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기초가액과 각 개별법인의 E & P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은 이연되어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당해 손익이 외부에 매각 등으로 실현되는 때 인식되므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한 그 실현되는 손익이 어느 구성법인에 귀속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연결납세를 중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익이 어느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주식의 기초가액과 각 구성법인의 E & P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이 궁극적으로 어느 구성법인에게 귀속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이익의 이연방식으로는 1966년 이전에 적용되던 양수자 손익귀속방식과 1966년 개정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적용되는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을 들 수 있다. 양수자 손익귀속방식(또는 장부가액 인계방식)에서는 내부거래시 양도가액을 양도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부거래이익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양도자 손익귀속방식(또는 시가인계방식)에서는 양도가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가액(또는 시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이익이 양도자에게 귀속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자의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건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 등을 통하여 내부이익이 실현되는 때 인식하는한 당해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익이연방식에 따라 모회사의 자회사주식에 대한 기초가액과 개별법인의 E & P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래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수자 손익귀속방식에 의하면 내부거래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연결납세집단이 해체되는 경우 내부거래이익은 과세될 기회가 상실되는 반면에 양수법인의 자산가액은 내부거래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양수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당해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점때문에 현행 규정은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통의 모회사 P와 P가 총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는 자회사 A 및 B로 구성된 연결납세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며, A가 B에게 장부가액 \$70인 토지를 2001년말 \$100에 매각하고, B가 이 토지를 1년후인 2002년말 \$110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A는 B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인 2001년말에 \$30의 이익을 인식하고 B는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인 2002년말에 \$10의 이익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1년말에 \$30의 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2002년말에 \$4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가 보유하는 A, B 주식의 기초가액과 A, B의 E & P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총이익 \$40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수자 손익귀속방식에 의하면 2002년말에 B의 E & P가 \$40만큼 증가하고 공통의 모회사인 P가 보유하는 B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2002년말에 \$32(\$40의 80%)만큼 증가하며 A의 E & P와 P의 A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비하여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에 의하면 2002년말에 A의 E & P는 \$30만큼 증가하고 B의 E & P는 \$10만큼

증가한다. 또한 P가 보유하는 A 및 B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2002년말에 각각 \$24(\$30의 80%)과 \$8(\$10의 80%)씩 증가한다.

3) 특성과 보유기간

가) 특성

S의 내부손익과 B의 대응손익에 대한 개별실체의 특성은 S와 B가 한 법인의 사업부이고 당해 내부거래가 당해 사업부간의 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연결과세소득과 연결세액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결정된다. 따라서 S와 B의 활동은 모두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S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S가 B에게 당해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계상하고 B는 다시 이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경우 S의 당해 자산과 관련한 활동 때문에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은 모두 통상소득²⁷⁵⁾에 해당하게 된다. 자산판매 이외에도 용역의 제공, 자산의 임대, 또는 그 이외의 내부거래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²⁷⁶⁾.

나) 보유기간

내부거래를 통하여 양도된 자산의 보유기간은 S와 B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그러나 자산의 기초가액이 다른 자산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다른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주식을 분배²⁷⁷⁾

275)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76) Reg. §1.1502-13(c)(1)(i).

한 경우 당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B의 보유기간은 당초에 B가 보유하던 S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²⁷⁸⁾.

4) 귀속시기

B는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귀속시기에 대응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대응손익의 특성이 재결정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B가 S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S의 활동 때문에 판매목적 보유자산의 처분(dealer's disposition)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B의 대응이익을 할부법(the installment method)에 따라 인식할 수 없다. 한편 S는 B가 대응손익을 인식하는 때에 인식된 대응손익과 재계산된 대응손익과의 차이를 내부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²⁷⁹⁾.

5) 단일 법인의 사업부

S와 B는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서 각자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부거래는 거래가 없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가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B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 때 당해 내부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두 사업부간에 토지와 현금을 교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B는 당해 자산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을 승계한다. 또한 S가 B로부터 자산을 양수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B가 S의 주식을

277) IRC §355.

278) Reg. §1.1502-13(c)(1)(ii).

279) Reg. §1.1502-13(c)(2).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S와 B는 사업부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각자 세법에서 부여되는 특별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S 또는 B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라면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지위를 가진 사업부로 본다. 그러나 구성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채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²⁸⁰⁾.

6) 특성의 상충과 배분

가) 상계금액

S와 B의 활동을 기초로 결정된 B의 대응손익에 대한 특성은 B의 대응손익이 S의 내부손익과 상계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S의 내부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가 상각자산을 B에게 매각하고 이익을 얻었고 B는 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한 경우에 B의 감가상각비 공제(통상소득의 공제)의 특성은 상계되는 S의 내부이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S의 이익은 통상소득에 해당한다²⁸¹⁾.

나) 배분

B의 대응손익과 S의 내부손익이 상계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결정된 특성을 규정의 취지 및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S의 내부손익과 B의 대응손익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된 배분 또는 재결정의 방법이 매년 계속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²⁸²⁾.

280) Reg. §1.1502-13(c)(3).

281) Reg. §1.1502-13(c)(4)(i).

282) Reg. §1.1502-13(c)(4)(ii).

7) 대응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불가능할 때 내부손익의 처리

가) 개요

B의 대응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불가능할 때 S의 내부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재결정되거나 자본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제불능경비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가 자산을 기초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B에게 매각하고 B는 당해 자산을 손익이 인식되지 아니하는 방식²⁸³⁾으로 구성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분배한다면 S의 B에 대한 자산매각손실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 본다²⁸⁴⁾.

나) 내부손익의 소득제외 재결정에 대한 제한

S의 내부거래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재결정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²⁸⁵⁾.

(1)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액

B의 대응손익이 공제항목 또는 손실이지만 IRC 또는 시행규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영구적·명시적으로 공제 또는 인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IRC나 그 시행규칙에서 당해 금액이 인식되지 아니한다고 규

283) 주식 또는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하는 법인은 분배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IRC §311(a)). 그러나 시가가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주주에게 시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익을 인식하여야 한다(IRC §311(b)).

284) S와 B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당해 손실이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85) Reg. §1.1502-13(c)(6).

정한 경우

- ② 관련되는 금액이 승계받은 자산(successor property)과 관련하여 B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 ③ 관련되는 금액이 다른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 ④ 관련되는 금액이 IRC나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후의 연도에 공제되거나 손실로 인식(이월공제 포함)되는 경우
- ⑤ 당해 금액이 세액공제의 계산에 반영된 경우

(2) 주주에 대한 현물분배손실

B가 구성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현물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현물 자산의 처분손실은 실현된 것이지만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²⁸⁶⁾를 말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국세청장은 IRC 및 시행규칙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S의 특정 내부손익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다.

나. 사례

다음에 열거하는 사례는 내부거래에 관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한다²⁸⁷⁾.

- ① P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며 자회사인 S와 B의 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다.
- ② X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다.
- ③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는 역에 의한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

286) IRC §311(a).

287) Reg. §1.1502-13(c)(7)(i).

월 31일까지)이다.

④ 모든 법인은 발생주의를 적용하며 특별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⑤ 법인세부담은 무시한다.

⑥ 특정 구성법인이 S와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 또는 B 대신에 M, M1, M2로 칭하기로 한다.

1) 투자목적토지의 내부거래 후 외부매각사례²⁸⁸⁾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며 투자를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하는 토지를 제1차 연도초에 B에게 \$100을 받고 매각하였다. B는 당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제3차 연도 7월 1일에 \$110을 받고 X에게 매각하였다.

나) 정의

S의 B에 대한 토지의 매각은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S의 매각이익 \$30은 내부순이익이며 B의 매각이익 \$10은 대응순익이다.

다) 특성

S의 내부이익 \$30과 B의 대응이익 \$10은 연결과세소득과 연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일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S와 B의 보유기간은 합산된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 전체의 이익 \$40은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에 해당되며 특성은 재결정되지 아니한다.

²⁸⁸⁾ Reg. §1.1502-13(c)(7)(ii) Ex.1.

라) 귀속시기

연결납세 사업연도마다 S는 대등원칙에 따라 B가 계상한 대응손익과 재계산된 대응손익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내부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이고 당해 토지거래가 사업부간의 거래였다면 B는 당해 토지에 대한 \$70의 기초가액을 승계하여 제3차 연도에 X에게 매각할 때 \$10 대신 \$4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1차 및 제2차 연도에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제3차 연도에 B가 계상한 대응이익 \$10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4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마) 내부손실과 외부이익이 발생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이 \$70이 아니라 \$130이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S와 B의 거래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간 거래로 가정한다면 B는 \$130의 기초가액을 승계받게 되고 X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여 \$10의 이익대신 \$20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3차 연도에 B가 계상한 대응이익 \$10과 재계산된 대응손실 \$20의 차이인 \$30의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S의 손실 \$30은 장기 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에 해당하며 B의 이익 \$10은 장기 자본이득에 해당한다.

바) 내부이익과 외부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X에게 \$110에 매각하는 대신 \$90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S와 B의 거래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간 거래로 가정한다면 B는 \$70의 기초가액을 승계받게 되고 X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여 \$10의 손실 대신 \$2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3차 연도에 B가 계상한 대응손실 \$10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2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S의 이익 \$30은 장기자본이득에 해당하며 B의 손실 \$10은 장기자본손실에 해당한다.

사) 내부이익이 발생한 토지를 구성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소수주주인 X에게 분배하였고 당시 당해 토지의 공정한 시가는 \$90이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B는 당해 분배에 대하여 \$10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²⁸⁹⁾. S와 B의 거래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간 거래로 가정한다면 B는 \$70의 기초가액을 승계받게 되고 X에 대한 분배로 인하여 \$10의 미인식손실대신 \$2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B의 미인식손실 \$10은 인식되지는 않지만²⁹⁰⁾ 대응손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S는 대등원칙에 따라 제3차 연도에 B의 미인식 대응손실 \$10과 재계산된 이익 \$2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B의 대응손실 \$10과 S의 내부이익 \$10은 상계되는 금액이므로 B의 대응손익에 대한 특성은 S의 내부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S의 이익 \$30 중 \$10은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재결정된다.

아) 내부거래후 구성법인이 아닌 자와 각자의 토지를 교환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X가 보유하는 다른 토지와 IRC §1031²⁹¹⁾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환한 경

289) IRC §311(a).

290) IRC §311(a).

291)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동종의 다른 자산과 교환하여 계속 생산에 사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3차 연도에는 B의 대응손익도 \$0이고 재계산된 대응손익도 \$0이어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환의 결과 S의 내부이익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대신 B의 이익과 S의 내부이익은 X로부터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는 때 인식될 것이다. 다만, 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토지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령액으로 인하여 B가 인식하는 대응손익과 재계산된 대응손익의 차이를 S가 내부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 내부거래후 구성법인이 아닌 자의 주식과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X의 주식과 IRC §351²⁹²⁾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교환하고 X는 계속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연도에는 B의 대응손익도 \$0이고 재계산된 대응손익도 \$0이어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S의 내부이익은 인식되지 아니하지만 차후에 설명하는 촉진 원칙(acceleration rule)에 따라 제3차 연도에 S는 \$3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²⁹³⁾.

아니한다.

292)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당해 현물출자 직후에 그 법인을 지배(IRC §368(c))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51(a)). 그러나 당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을 받는 이외에 다른 자산 또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산의 시가와 현금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51(b)).

293) 구성법인이 아닌 X가 토지에 대한 B의 기초가액 \$100을 승계하기 때문에 S는 \$30 전액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2) 투자목적토지의 내부매입후 판매목적 전환사례²⁹⁴⁾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며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를 제1차 연도초에 B에게 \$100을 받고 매각하였다. B는 당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제3차 연도에 \$110을 받고 개발된 택지를 고객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특성

S가 투자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의 처분이익이 재고자산의 매각이익에 해당하는지는 S와 B의 활동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S와 B의 활동을 기초로 할 때 당해 토지가 재고자산에 해당된다면 S의 이익과 B의 이익은 모두 통상소득이다.

3) 토지와 주식의 내부교환후 토지를 외부에 매각한 사례²⁹⁵⁾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 공정한 시가가 \$100이며,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하여 판매할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 초에 S는 B의 모든 주식과 교환²⁹⁶⁾으로 B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다. S는 당해 교환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며²⁹⁷⁾ 대가로 받은 B 주식의 기초가액은 \$70이 된다. B는 당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며 제3차 연도 7월에 \$100을 받고 X에게 매각하였다. 만약 S

294) Reg. §1.1502-13(c)(7)(ii) Ex.2.

295) Reg. §1.1502-13(c)(7)(ii) Ex.3.

296) IRC §351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297) IRC §351(a).

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B의 토지매각이익은 S의 활동 때문에 통상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나) 귀속시기 및 특성

S의 B에 대한 토지의 양도는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S가 B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겠지만 내부거래에 관한 세무처리 목적상 S가 B의 주식과 교환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S는 내부손익이 없으나 B에게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내부거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이기 때문에 \$30의 토지처분이익이 대응손익이며 통상소득에 해당한다.

다) 대가의 일부가 현금인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S가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B의 주식 이외에 \$10의 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는 \$1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고²⁹⁸⁾ B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70이 되며 B가 양수한 토지의 기초가액은 \$80이 된다. S는 제3차 연도에 B가 인식한 \$20의 대응이익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30의 차이인 \$1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S의 이익 \$10과 B의 이익 \$20은 모두 통상소득에 포함된다.

라) 토지지분의 일부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S가 토지지분의 1/2을 \$50에 양도하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는 제3차 연도에 B가 인식한 \$10의 대응이익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15의 차이인 \$5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298) IRC §351(b).

4) 상각자산의 매각사례²⁹⁹⁾

가) 사실관계

S는 제1차 연도초에 내용연수 10년인 자산을 \$100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제3차 연도초에 S는 B에게 당해 자산을 \$130에 매각하였다. IRC §168(i)(7)³⁰⁰⁾에 따라 B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 \$130이 S의 매각당시 수정된 기초가액³⁰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의 목적상 B는 S로 간주된다. B의 추가적인 기초가액은 10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며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본다.

나) 제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S는 취득후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B에게 매각할 당시 \$80의 기초가액이 남게 된다. 따라서 S는 \$50의 내부이익을 얻게 된다. 제3차 연도에 B는 \$80의 기초가액³⁰²⁾에 대하여는 \$10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고, \$50의 추가적인 기초가액에 대하여는 \$5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된다.

다) 귀속시기

S의 이익 \$50은 매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B가 계상하는 감가상

299) Reg. §1.1502-13(c)(7)(ii) Ex.4.

300) 동일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간 자산의 양수도 등에 있어서 양수 법인의 기초가액 중 양도법인의 수정기초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 목적상 양수자가 양도자로 간주된다.

301) 취득시의 기초가액에서 매각시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302) B의 총기초가액 \$130 중 S의 수정기초가액 \$80(=\$100-\$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각비와 재계산된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식된다. 제3차 연도에는 B가 \$15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된다. 만약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B는 S의 수정기초가액을 승계하여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3차 연도에 \$5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B는 매년 \$15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S는 \$5의 내부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라) 특성

매년 B가 계상하는 대응감가상각비공제 \$5과 S가 인식하는 내부이익 \$5은 상계되며, B의 대응손익의 특성은 S의 내부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S가 B의 감가상각비공제로 인하여 인식하는 내부이익은 통상소득에 해당한다.

마) 자산의 외부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제5차 연도초에 B가 당해 자산을 X에게 \$110을 받고 매각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제3차 연도와 제4차 연도는 '다)' 및 '라)'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3차 연도초에 발생한 S의 내부이익 \$50 중 아직 인식되지 아니한 잔액 \$40은 B의 X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여 제5차 연도에 인식하게 된다. 이 \$40은 B가 계상한 \$10의 대응이익과 재계산된 대응이익(\$50³⁰³)의 차이이다.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라면 이익 중 \$40은 IRC §1245³⁰⁴

303) \$110의 매각대가에서 단일실체기준으로 계산한 \$60의 기초가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304) IRC §1245 자산이라 함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거나 되었던 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① 개인용 자산(personal property)
- ② 기타자산(other property)으로서 생산 등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이며 수정기초가액이 확인되는 자산

이익이고 \$10은 IRC §1231(사업용자산) 이익이지만, 개별실체기준에 의하면 S에게는 \$10 이상의 IRC §1231 이익이 발생하며 B에게는 IRC §1231 이익이 없다. 상계되지 아니하는 이익의 특성에 대한 배분원칙에 따라 IRC §1231 이익 \$10의 전부는 S에게 배분되고 S의 이익 중 잔존액 \$30과 B의 이익의 전액 \$10은 IRC §1245 이익으로 본다.

5) 용역제공의 사례³⁰⁵⁾

가) 사실관계

S는 우물을 파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B는 외딴 지역에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B의 목장에서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우물을 필요로 한다. 제1차 연도중 S는 B의 목장에 우물을 파고 그 대가로 \$100을 받았으며 S는 인건비와 장비비 등으로 \$80의 용역 제공원가가 발생하였다. B는 우물을 \$100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제2차 연도부터 매년 \$10씩을 상각하기로 하였다.

나) 정의

용역제공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S의 수입 \$100과 관련 손비 \$80은 내부이익을 산정하는데 포함되며 이에 따라 내부이익은 \$20이다.

-
- ③ 실물자산(real property)
 - ④ 농업 또는 원예용 구조물
 - ⑤ 유류의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
 - ⑥ 철도시설

305) Reg. §1.1502-13(c)(7)(ii) Ex.7.

다) 귀속시기 및 특성

S는 B의 대응손익 \$100(우물의 취득원가)과 재계산된 대응손익 \$80(단일실체기준에 의한 우물의 취득원가 또는 S의 용역제공원가)의 차이인 \$20을 내부이익으로서 인식한다. 제1차 연도에 S는 \$80의 수입과 \$80의 손비를 인식하고 제2차 연도부터 11차 연도까지는 S가 \$20의 내부이익 중 매년 \$2³⁰⁶⁾씩을 인식하게 된다. S와 B의 손익이 모두 통상손익이어서 손익의 특성이 재결정되지 아니하므로 S의 \$100 수입과 \$80의 손비 및 B의 감가상각비공제는 통상손익에 해당한다.

라) 자본화된 용역의 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우물에 대한 상각이 완료되기 전 목장을 매각하여 우물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S의 내부이익 중 처분시까지 인식되지 아니한 잔액은 S가 인식하여야 한다.

6) 자산임대의 사례³⁰⁷⁾

목장을 운영하는 B가 기축을 방목할 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S는 B의 목장에 인접한 초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차 연도 초에 S가 B에게 당해 초지를 임대하였다고 하자. B가 지급하는 임대료 \$100은 개별실체기준에서 볼 때 제1차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결납세규칙하에서 당해 임대거래는 내부거래이며 S는 B가 계상한 임차료비용 \$100과 재계산된 임대료비용 \$0의 차이인 \$100을 내부이익으로서 인식한다. 또한 S의 내부손익(임대료수입)과 B의 대응손익(임차료비용)은 개별실체기준에서 볼 때 모두 통상소득에 해당하므로 특성은 재결정되지 아니한다.

306) 매년 \$10의 우물에 대한 상각과 \$8의 재계산된 상각액의 차이

307) Reg. §1.1502-13(c)(7)(ii) Ex.8.

3. 촉진원칙

가. 개요

1) 의의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은 대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을 중단하고 외부에 매각 등으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기 전에 앞당겨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³⁰⁸⁾.

2) S의 손익

가) 귀속시기

S의 내부손익은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직전에 인식한다.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① 대등원칙에 따라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부손익 또는 대응손익이 인식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 S 또는 B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서 이탈하였거나 S의 내부손익이 자산에 대한 B의 기초가액과 단일실체기준에 따른 자산의 기초가액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된 때

② 구성법인이 아닌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부거래의 특성

308) Reg. §1.1502-13(d)

을 반영하고 있을 때 (예: S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한 B의 취득원가가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반영³⁰⁹⁾되는 경우)

나) 특성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되는 S의 내부손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³¹⁰⁾.

(1) 매각, 교환, 분배로 인한 내부거래손익

매각, 교환, 분배로 인한 내부거래손익의 특성은 내부손익이 인식되는 때 B가 당해 자산을 자신의 수정기초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고³¹¹⁾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고 대등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① S의 손익이 인식된 직후 당해 자산이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경우에는 B가 그 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구성법인이 아닌 자가 구성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B와도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S의 손익이 인식된 직후 당해 자산이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B가 구성법인이 아닌 관계회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본다.

(2) 기타의 내부거래손익

매각, 교환, 분배 이외의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예: B에 의하여 자산화되는 용역이 S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의 특성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09) IRC §§362 & 351.

310) Reg. §1.1502-13(d)(1)(ii).

311) 처분에 따른 손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B의 손익

가) 특성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되는 B의 대응손익의 특성은 대등원칙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가하여 재결정된다³¹²⁾.

① S와 B가 계속하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B의 대응손익의 특성(보유기간 포함)은 계속하여 단일실체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S와 B가 더 이상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단일실체기준에서의 단일 법인에 의하여 S 사업부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결정한다. 따라서 S의 내부거래전 활동(보유기간 포함)이 대응손익(보유기간 포함)의 특성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귀속시기

S의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B는 계속하여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대응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대응손익의 특성이 재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나. 사례

1) 구성법인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귀속시기³¹³⁾

가) 사실관계

기초가액이 \$70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P의 100% 자회사인 S가 제1차 연도초 당해 토지를 \$100을 받고 B에게 매각하였다. 제3

312) Reg. §1.1502-13(d)(2)(i).

313) Reg. §1.1502-13(d)(3) Ex.1.

차 연도 7월에 P가 S 주식의 60%를 X에게 \$60에 매각하여 S는 연결납세 구성법인에서 제외되었다.

나) 대등원칙

대등원칙에 의하면 B가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재계산된 손익이 없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S의 이익 \$30은 제3차 연도까지 인식되지 아니한다.

다) S의 내부이익에 대한 촉진원칙의 적용

S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면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때와 동일한 효과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S의 \$30 이익은 제3차 연도에 인식된다. 또한 S의 이익은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에 반영된다. 즉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30만큼 증가하고 P의 S주식처분이익은 \$18(\$30의 60%)만큼 감소한다.

라) B의 대응손익

S의 이익에 대한 촉진원칙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B는 대응손익을 그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B는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등 미래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마) P가 B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P가 S의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B의 주식 60%를 \$60에 X에게 매각하여 B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B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때와 동일한 효과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S의 \$30 이익은 제3차 연도에 인식된다.

바) 연결납세증지승인을 받은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P가 제3차 연도부터 연결납세증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촉진원칙에 따라 S가 제2차 연도말에 \$30의 이익을 인식한다.

사) 자회사의 전부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P가 S와 B의 주식 전부를 X에게 매각하고 S와 B는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S와 B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때와 동일한 효과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S의 \$30 이익은 제3차 연도에 인식된다. 그러나 S와 B가 계속하여 같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로 인한 B의 대응손익의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B는 계속하여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본다.

2) 구성법인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특성³¹⁴⁾

가) 사실관계

기초가액이 \$70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P의 100% 자회사인 S가 제1차 연도초 당해 토지를 \$100에 B에게 매각하였다. B는 당해 토지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2년에 걸쳐 당해 토지를 분할, 개발, 마케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제3차 연도 7월,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P는 S의 주식의 60%를 \$60에 X에게 매각하여 S는 구성법인에서 제외되었다.

314) Reg. §1.1502-13(d)(3) Ex.2.

나) 특성

당해 토지를 연결납세집단내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B가 당해 토지를 구성법인이 아닌 관계회사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B의 수정된 기초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보고 S의 이익의 특성을 재결정한다. 따라서 S의 이익이 자본이득인지 아니면 통상소득인지는 S와 B의 활동에 달려있다.

또한 S와 B가 더 이상 동일한 연결납세집단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S와 B가 단일 법인이라고 가정할 때 당해 단일 법인이 S 사업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P가 S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B의 대응손익(예: 장래에 발생한 당해 토지의 매각손익)의 특성을 재결정한다. 따라서 B는 당해 내부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당해 토지와 관련한 S의 활동에 따라 손익의 특성이 좌우된다.

4. 구성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내부거래

가. 구성법인간의 분배

1) 분배받는 구성법인(B)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분배를 받는 경우 당해 배분받은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액의 과세 제외는 분배하는 구성법인(S)의 주식에 대한 분배받는 구성법인(B)의 기초가액에서 감액수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음으로써 부의 기초가액으로 보는 초과손실계정(an excess loss account)의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배액은 B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³¹⁵).

2) 분배하는 구성법인(S)

현물분배에 관한 규정³¹⁶⁾은 현물분배에서 발생하는 이익뿐 아니라 구성법인간의 현물분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S의 손실은 분배된 자산이 그후에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된다면 대등원칙에 따라 인식된다³¹⁷⁾.

3) 권리확정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구성법인이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분배를 실제로 수취한 때가 아니라 분배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³¹⁸⁾.

4) 현물분배의 사례³¹⁹⁾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고 시가가 \$100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1차 연도초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다. 제1차 연도중 S가 P에게 당해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S는 \$30의 토지처분이익이 발생하며 P의 토지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 된다. 제3차 연도 7월 P는 당해 토지를 \$110에 X에게 매각하였다.

나) 분배의 과세제외 및 주식기초가액의 수정

S의 P에 대한 분배는 구성법인간의 분배로서 \$100의 분배액은

315) Reg. §1.1502-13(f)(2)(ii).

316) IRC §311(b).

317) Reg. §1.1502-13(f)(2)(iii).

318) Reg. §1.1502-13(f)(2)(iv).

319) Reg. §1.1502-13(f)(7) Ex.1.

총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0으로 감액된다. 또한 제1차 연도의 S의 토지처분이익 \$30은 이연된다.

다) 대등원칙의 적용 및 주식기초가액의 수정

대등원칙에 따라 S는 제3차 연도에 P의 이익 \$10과 재계산된 이익 \$4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3차 연도에 \$0에서 \$30로 증가한다.

라) 토지분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이 \$70이 아니고 \$130일 경우에는 제3차 연도에 P의 이익 \$10과 재계산된 손실 \$20의 차이인 \$30을 손실로 인식한다. 또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1차 연도에 \$100에서 \$0로, 제3차 연도에 \$0에서 초과손실계정 \$30로 감액된다. 만약 P가 당해 토지를 X에게 매각하는 대신 주주에게 분배하였다면 P는 \$10의 이익을 인식하고 S는 \$30의 손실을 인식하되 당해 손실은 P의 이익 \$10과 상계되고 잔액 \$20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 분류된다.

마) 권리확정주의

‘가)’의 사실관계에서 P에 대한 분배가 결의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실제로 당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S가 주식의 공모를 통하여 증자하고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분배는 확정되는 때 실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 분배는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분배는 P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배로 인한 S의 이익 \$30은 S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될 내부이익이다. 따라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분배로 인하여

\$100만큼 감액되고 S의 이익 \$30만큼 증액되어 순액으로 \$70만큼 감액된다.

5) 초과손실계정의 사례³²⁰⁾

가) 사실관계

S는 T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며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 시가는 \$100이다. S는 상당한 금액의 E & P를 가지고 있으며 T의 E & P는 \$10이다. 제1차 연도초 S는 P에게 T 주식 전부를 분배하였다. 이 경우 S는 \$90의 이익이 발생하며 P의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 된다. 제3차 연도중 T는 \$90을 차입하여 이를 P에게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P의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에서 \$10로 감액되었다. 제6차 연도에 T에게 \$5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P의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에서 \$15로 증가하였다. 제9차 연도 12월, T는 X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함에 따라 T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였다.

나) 분배의 과세제외

P가 S로부터 분배받은 T 주식의 가액 \$100과 T로부터 지급받은 \$90의 분배액 중 배당수입에 해당하는 \$10³²¹⁾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등원칙 및 촉진원칙

T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할 때 P에게 T 주식에 대한 초과손

320) Reg. §1.1502-13(f)(7) Ex.2.

321) T의 E & P는 \$10에 불과하므로 배당수입은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분배액 \$90 중 배당수입은 \$10이고 이를 제외한 잔액 \$80은 출자의 반환으로 본다.

실계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별실체기준에 의하면 P는 초과손실계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T의 연결납세집단 이탈로 인한 P의 대응손익은 \$0이다. 그러나 S와 P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 T 주식을 분배한 후에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이며 그후의 수정³²²⁾에 의하여 \$75의 초과손실계정이 발생한다. 따라서 T의 연결납세집단 이탈로 인하여 재계산된 대응손익은 \$75이 된다. 대등원칙에 따라 S는 제9차 연도에 P의 이익 \$0과 재계산된 이익 \$75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0 중 \$75을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S의 이익 중 잔존액 \$15은 제9차 연도 이후에 대등원칙 또는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될 것이다. 즉 P가 T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등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될 것이며, S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촉진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 사건의 선후가 달라지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S가 P에게 T 주식을 분배하기 전에 T가 \$90을 차입하여 S에게 분배하였다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T의 S에 대한 분배액 \$90(이 중 \$10은 배당)은 S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T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은 \$10에서 \$80의 초과손실계정으로 감액된다. 이에 따라 S는 T 주식을 P에게 분배함으로써 \$90의 이익³²³⁾이 발생하며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로 시작되고 제6차 연도에 T의 소득발생으로 \$15로 증가된다. 제9차 연도에 T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함에 따라 대등원칙에 의하여 S는 \$75의 이익을 인식하게

322) \$90의 배당에 의한 감액과 \$5의 S 소득으로 인한 증액.

323) 초과손실계정 \$80과 T 주식의 시가 \$10(당초의 사례에서 \$90 배당을 하기 전에 시가가 \$100이었으므로 배당한 후의 시가는 \$10이 될 것임)의 합계액

되며 \$15의 잔존액은 그후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 대등원칙과 촉진 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된다.

나.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구성법인간 교부금의 수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자산(비적격자산; nonqualifying property)은 별개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구성법인이 주주로서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비적격자산은 당해 비적격자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IRC § 354(구조조정에서의 주식 등의 교환)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거래 직후에 받은 것으로 보며, IRC §355(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의 분배)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거래 직전에 받은 것으로 본다³²⁴⁾.

다. 자기주식의 취득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옵션에 대한 그 다른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은 제거된 것으로 본다³²⁵⁾.

라.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

1) 주식과 관련한 손실

가) 손실의 불인정

구성법인이 보유하는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이하에서 'P 주식'이

324) Reg. §1.1502-13(f)(3).

325) Reg. §1.1502-13(f)(4).

라 한다)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한 손실은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E & P를 감소시키지 아니한다³²⁶⁾.

나) P 주식을 구성법인 외의 자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

구성법인인 M이 P 주식을 보유하다가 M이 구성법인에서 이탈하거나 구성법인 외의 자가 P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P 주식에 대한 M의 기초가액이 공정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M의 기초가액을 구성법인 외의 자가 P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직전에 당해 공정한 시장가치로 감액한다³²⁷⁾.

다) P 주식을 보유하던 구성법인 외의 자가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구성법인외의 자가 기초가액이 공정한 시가를 초과하는 P 주식을 보유하다가 적격 원가기준거래³²⁸⁾를 통하여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공정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일단 감액을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³²⁹⁾. 만약 당해 구성법인 외의 자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집단에서 이탈한 직후에 기초가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한다³³⁰⁾.

2) 주식과 관련한 이익

M이 P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이 적격처분에 해당하

326) Reg. §1.1502-13(f)(6)(i)(A).

327) Reg. §1.1502-13(f)(6)(i)(B).

328) 적격 원가기준거래(a qualifying cost basis transaction)는 12월의 기간내에 구성법인이 아닌 자의 주식으로서 총발행 주식 중 80% 이상(IRC §1504(a)(2))을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329) Reg. §1.1502-13(f)(6)(i)(C).

330) Reg. §1.1502-13(f)(6)(i)(C).

지만 만약 적격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M은 그 적격처분 직전에 P가 M에게 현금으로 출자하는 형식으로 P 주식을 공정한 시가로 P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적격처분(a qualified disposition)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을 말한다³³¹⁾.

- ①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P의 자본에의 출자를 통하여 P로부터 직접 P 주식을 취득할 것
- ② 그 구성법인이 계획에 따라 구성법인이 아니며 구성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식을 즉시 양도할 것
- ③ 구성법인이 아닌 자가 당해 주식의 대체된 기초가액³³²⁾을 승계받지 않을 것
- ④ P 주식이 다른 P 주식과 교환되지 아니할 것
- ⑤ P가 당해 처분 또는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이 공통의 모회사가 되거나 공통의 모회사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지 아니할 것
- ⑥ M이 당해 처분 또는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이 구성법인이 되거나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게 되지 아니할 것

5. 내부채권채무와 관련한 손익

가. 내부채권의 외부매각

1) 개요

내부채무(채권)라 함은 구성법인간의 채무(채권)³³³⁾를 말하며

331) Reg. §1.1502-13(f)(6)(ii).

332) 기초가액이 승계되거나 교환된 경우를 말한다(IRC §7701(a)(42)).

333) 채무에는 채무증권을 포함하며 재화나 용역의 구매 또는 제공과 관련한 미확정채무는 제외한다.

구성법인이 내부채권 또는 내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소멸시킴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내부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채무가 계속 존속한다면 새로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대손상각과 같이 유사한 거래로부터 손익이 실현되거나 내부채무가 내부채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적용한다(유사원칙; similar principles).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³³⁴⁾.

- 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채무상환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거래³³⁵⁾로 인하여 내부채무가 된 때
- ② 대손충당금³³⁶⁾으로부터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 ③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 ④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의 법인세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부채권의 매각 직전 채무변제 간주

내부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구성법인이 현금을 받고 당해 내부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구성법인이 당해 매각 직전에 내부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유사원칙의 적용에 따라 내부채권이 실물자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인 구성법인에게 다음의 '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채무가 신규발생된 것으로 보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

334) Reg. §1.1502-13(g)(3)(i).

335) 당해 채권의 상환약정일전 1년내에 취득한 경우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의한 취득(Reg. §1.108-2(e)).

336) IRC §§585 & 593.

으로 본다. 만약 내부채무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연결납세집단에
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하기 직전에 공정한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내부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³³⁷⁾.

3) 내부채권의 매각 직후 신규채무발생 간주

내부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구성법인이
현금을 받고 당해 내부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구성법인
이 당해 매각 직후에 새로운 채무(보유기간의 기산도 새로이 시작
됨)가 발생된 것으로 본다. 유사원칙의 적용은 앞서 언급한 채무변
제간주에서와 같다³³⁸⁾.

4) 대손충당금

내부채권과 관련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소득에서 공
제되지 아니하며 내부채권이 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내
부채무가 상환 또는 취소될 때까지는 실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³³⁹⁾.

5) 사례³⁴⁰⁾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초 B는 S로부터 \$100을 차입하고 매년말 \$10의 이
자지급과 제20차 연도말에 \$100의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어음을

337) Reg. §1.1502-13(g)(3)(ii).

338) Reg. §1.1502-13(g)(3)(iii).

339) Reg. §1.1502-13(g)(3)(iv).

340) Reg. §1.1502-13(g)(5) Ex.2.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제3차 연도초까지 B는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S는 B가 발행한 어음을 X에게 \$70을 받고 매각하였다.

나) 변제 간주

B가 발행한 어음은 S가 X에게 당해 채권을 매각하기 직전에 \$70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변제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B는 \$30의 채무변제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개별실체기준으로 볼 때 S의 \$30 손실은 자본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등원칙에 의하면 B의 대응손익은 S의 내부손익과 그 금액에 있어서 완전히 상계되기 때문에 B가 인식하는 \$30의 채무변제이익의 특성은 S의 손실의 특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S의 손실은 통상손실로 간주된다.

다) 신규차입 간주

위에서 언급한 어음의 변제 간주와 함께 B는 X에게 직접 발행가액 \$70, 상환가액 \$100의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어음은 내부채무가 아니며 \$30의 할인발행액은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배분³⁴¹⁾하여 B와 X가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 채권자가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발행한 어음을 S가 매각하는 대신 P가 S의 주식을 X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어음은 S가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기 직전에 B가 당해 어음의 시가인 \$70로 변제하고 이탈한 직후에 B가 S에게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S와 B의 손익 \$30의 처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341)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에 따라 배분한다(IRC §163(e)).

나. 내부채권으로의 전환

내부채무에 해당하지 않던 채무가 내부채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전환된 직후에 당해 채무가 변제되고 다시 신규로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변제로 인하여 인식되는 손익의 특성은 단일실체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실체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³⁴²⁾.

- 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채무상환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거래³⁴³⁾로 인하여 내부채무가 된 때
- ②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의 법인세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

가. 조세회피방지규정

1) 개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처리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⁴⁴⁾. 이러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³⁴⁵⁾.

342) Reg. §1.1502-13(g)(4).

343) Reg. §1.108-2(e).

344) Reg. §1.1502-13(h)(1).

345) Reg. §1.1502-13(h)(2).

2) 내부채무로 가장하는 사례³⁴⁶⁾

가) 사실관계

P는 X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P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 제1차 연도초 S는 X로부터 \$100을 차입하고 매년말 \$10의 이자지급과 제20차 연도말에 \$100의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제3차 연도초 P 연결납세집단은 상당한 금액의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으며 S가 발행한 어음의 시가는 \$70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X는 당해 어음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30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 X가 \$30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가 X의 주식 10%를 추가로 취득하여 X를 구성법인으로 포함시킨 뒤 다시 10% 지분을 매각하였다. 어음과 관련한 X의 손실 \$30은 미실현 내포손실에 해당한다.

나) 수정

X가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당해 어음이 내부채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X는 \$30의 손실을 인식하고 S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채무변제이익 \$30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X의 손실은 미실현 내포손실로서 연결납세기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고 X가 다시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다면 공제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S의 X에 대한 채무를 일시적으로 내부채무로 만든 것은 X의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S가 발행한 어음은 내부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X는 당해 어

346) Reg. §1.1502-13(h)(2) Ex.2.

음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는 \$30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

3) 법인혼합 사례(corporate mixing bowl)³⁴⁷⁾

가) 사실관계

M1, M2는 P의 자회사이며 M1은 M2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해 토지는 M2의 유일한 자산이다. P는 M2의 토지를 포함하여 M1의 사업을 처분하려고 한다. M1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시가와 동일하고 M2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0이며, M2의 토지는 시가 \$20, 기초가액은 \$0이다. 제1차 연도에 토지처분이익의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M1, M2는 T를 신설하였다. 즉 M1은 현금을 출자하고 T 주식 80%를 취득하였으며, M2는 토지를 출자하고 T 주식 20%를 취득하였다³⁴⁸⁾. 제3차 연도에 T를 청산하고 \$20의 현금을 M2에게 분배하고, M1에게는 토지와 \$60의 현금을 분배하였다. 이 경우 T는 M1과 M2에 대한 토지와 현금의 분배로부터 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³⁴⁹⁾. 제4차 연도에 P는 M1의 주식을 X에게 매각하고 M2를 청산하였다.

나) 수정

T를 설립하고 청산한 주 목적은 M2가 보유하는 토지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M2는 M1의 주식이 X에게 매각될 때 \$20의 이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347) Reg. §1.1502-13(h)(2) Ex.3.

348)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51(a)).

349) 자회사가 청산하여 자산을 모회사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청산법인은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37).

4) 판매후 리스의 사례³⁵⁰⁾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고 시가가 \$100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납세제한연도(SRLY)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다. S는 당해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30의 미실현이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X에게 \$100을 받고 매각한 후 다시 이를 장기로 리스하였다. 이러한 판매후 리스(the sale and leaseback)는 IRC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적 형식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재조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S의 X에 대한 공장매각으로 인하여 S는 \$3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나) 수정배제

S가 계획적으로 \$30의 이익을 조기에 인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간편법의 적용

달러가치 후입선출법(dollar value LIFO inventory method)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산정 및 대등원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⁵¹⁾.

350) Reg. §1.1502-13(h)(2) Ex.5.

351) Reg. §1.1502-13(e).

다. 기초가액이 승계된 자산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초가액이 결정되는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³⁵²⁾.

라. 자산의 승계와 관련한 법인의 범위

1) 법인의 범위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법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자산을 승계하거나 승계받는 다른 법인을 포함한다³⁵³⁾.

- ① 청산에 따른 분배,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월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게 승계³⁵⁴⁾되는 경우
- ② 법인의 청산을 통하여 사실상 모든 자산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 ③ 자산을 승계받는 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승계하는 법인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자산의 기초가액결정에만 국한됨)
- ④ 내부거래(내부거래의 대상인 자산과 관련하는 경우에 한함)

2) 내부손익의 승계

위에서 언급한 승계하는 법인의 자산이 승계받는 구성법인에 의

352) Reg. §1.1502-13(j)(1).

353) Reg. §1.1502-13(j)(2)(i).

354) IRC §381(a).

하여 취득되는 경우 승계받는 법인은 승계하는 법인의 내부손익도 승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³⁵⁵⁾.

마. 연쇄적인 영향

대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응손익으로 인하여 내부손익이 인식되어야 하는 경우 당해 내부손익은 대응손익과 관련하여 단일 실체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트럭을 매각한 경우 당해 트럭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건물의 건설원가에 산입되어 자산화(capitalization)된다면 트럭의 매각에 대한 S의 내부이익은 B가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인식되지 아니한다. 그 대신 S의 이익은 당해 건물이 매각되거나 감가상각될 때 인식된다.

또한 예를 들어 B가 자산을 S로부터 S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이를 하위의 구성법인(lower-tier member)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의 내부이익은 인식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기초가액은 토지의 기초가액과 동액이 된다.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손익이 발생하면 S의 내부이익이 인식된다. 한편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하위의 구성법인이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S의 내부이익의 특성은 주식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³⁵⁶⁾.

바. 다중 또는 연속 내부거래

특정 구성법인의 내부손익 또는 대응손익이 둘 이상의 내부거래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S가 M에게 자산

355) Reg. §1.1502-13(j)(2)(ii).

356) Reg. §1.1502-13(j)(3).

을 매각하고 M은 B에게 당해 자산을 매각한 경우 S, M, B는 모두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간주된다. 또한 동일한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일실체기준이 적용된다³⁵⁷⁾.

사. 다른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연결납세집단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취득됨에 따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결납세집단을 취득하는 다른 연결납세집단(존속하는 연결납세집단)을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으로 본다. 그러나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으로서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한 직후에 존속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³⁵⁸⁾.

여기서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한다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³⁵⁹⁾.

①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공통의 모회사의 자산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취득됨에 따라 이월 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³⁶⁰⁾

②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③ 공통의 모회사가 보유하는 사실상 모든 자산을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역취득의 경우

357) Reg. §1.1502-13(j)(4).

358) Reg. §1.1502-13(j)(5)(ii).

359) Reg. §1.1502-13(j)(5)(i).

360) IRC §381(a)(2).

아. 공통의 모회사만 남게 되어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유일한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하는 경우 그 공통의 모회사는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상의 세무상 처리를 승계받는다.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였던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집단의 유일한 자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쳐 모든 자산을 공통의 모회사에게 이전하거나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합병되어 당해 자회사가 공통의 모회사의 승계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존속법인의 과세소득은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연결과세소득으로 본다³⁶¹⁾.

자. 기장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은 장부에 기장(정산표 포함)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집단은 이러한 장부의 기장을 통하여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손익의 금액, 발생장소, 귀속시기,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⁶²⁾.

361) Reg. §1.1502-13(j)(6).

362) Reg. §1.1502-13(j)(8).

VI. 투자수정 및 E & P

1. 투자수정

가. 개요

1) 의의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P)이 자회사(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규정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제도로서 P의 기초가액이 S의 배당 및 손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수정의 목적은 연결과세소득이 연결납세집단의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가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고 S가 \$10의 소득을 얻은 경우 P의 기초가액³⁶³⁾ \$100은 연결납세규칙에서의 투자수정규정에 따라 \$10 증가하는데, 이는 S의 소득에 대하여 한번 과세하고 P가 S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S의 감면소득(tax-exempt income) 및 비자본 공제불능경비(noncapital, nondeductible expenses)에 대하여도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⁶⁴⁾.

363) IRC §358(배당받은 자의 주식기초가액의 결정)에 의한 기초가액을 말한다.

364) Reg. §1.1502-32(a)(1).

2) 법률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결납세규칙상 투자수정³⁶⁵⁾은 기초가액의 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의 다른 규정이라 함은 Reg. §1.1502-32의 규정 이외에 투자수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IRC §58(배당받은 자의 주식기초가액의 결정), IRC § 1016(기초가액의 수정), Reg. §1.1502-11(b)(손실사용의 제한), Reg. §1.1502-19(초과손실계정의 처리), Reg. §1.1502-20(주식손실에 대한 추가규칙), Reg. §1.1502-31(관계회사집단의 구조를 변경한 후의 기초가액) 등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과 연결납세규칙상의 투자수정이 중복수정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연결납세규칙상의 투자수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³⁶⁶⁾.

3) 상위법인의 투자수정

S 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은 S의 상위법인의 주식(higher-tier stock)에 대한 투자수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하위법인으로부터 상위법인으로 순서에 따라 투자수정을 한다. 예를 들어 P가 다른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S 주식에 대한 P의 투자수정은 그 다른 법인의 P 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³⁶⁷⁾.

365) Reg. §1.1502-32.

366) Reg. §1.1502-32(a)(2).

367) Reg. §1.1502-32(a)(3)(iii).

나.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

1) 수정시기

주식기초가액의 수정은 연결납세 사업연도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연도 도중에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가액의 수정이 필요하며 P가 S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S가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와 같이 P가 가지는 S의 지분이 사업연도중 동일하지 아니할 때 변동하는 지분을 고려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P가 S 주식의 50%만 처분하고 S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처분당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S가 연결납세 사업연도중 청산되는 경우에도 당해 청산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가액을 수정하여야 한다³⁶⁸⁾.

2) 수정금액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적극적 수정(positive adjustment)에 의하여 증가하고 소극적 수정(negative adjustment)에 의하여 감소한다. 기초가액의 수정에 있어서 수정할 금액은 S의 과세소득 또는 결손, 감면소득,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불능경비, 배당의 순액(net amount)으로 한다³⁶⁹⁾.

가) 과세소득 또는 결손

S의 과세소득 또는 결손은 S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

368) Reg. §1.1502-32(b)(1)(i).

369) Reg. §1.1502-32(b)(2) & (3).

(또는 결손)으로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증감시킨다. 이 경우 S의 손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거나 이월되어 그후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S의 손비가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나) 감면소득

S의 감면소득은 소득이지만 과세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소득으로 S가 보유하는 자산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S주식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킨다. 감면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소득공제

S의 과세소득이 S가 보유하는 자산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손비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상계되는 경우 당해 상계되는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당해 소득과 상계되는 손비의 순액은 앞서 '가'에서의 과세소득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S가 \$100의 배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70의 수입배당공제를 적용한 경우 당해 배당 중 \$70은 감면소득이다. 따라서 S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과세소득으로서 \$30만큼 증가하고 감면소득으로서 \$70만큼 증가하게 된다.

(2) 채무면제이익

S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예: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것 등)³⁷⁰⁾은 이월결손금 등의 조세특성을 감

370) IRC §108.

소³⁷¹⁾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소득으로 취급된다. 조세특성을 감소시키는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조세특성의 감소가 자본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제불능경비로 인식되는 금액에 한한다. 그러나 채무면제액이 조세특성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액이 조세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하였을 것
- ② 당해 공제시한의 경과가 자본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제불능경비로 인식될 것
- ③ 공제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될 수 있었을 것

(3) 기초가액의 전환

S의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의 증가는 그 증가로 인하여 주식의 기초가액에 영향을 미쳤고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극적 투자수정과 대응되며 당해 기초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대응되는 소극적 투자수정이 영구적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갖는다면 감면소득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을 증가³⁷²⁾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가액의 증가는 선행하는 기초가액의 감소³⁷³⁾가

371) 채무면제이익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한다(IRC §§108 & 1017). 이 경우 조세특성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 ①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② 사업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의 이월액
- ③ 최저한세 공제(minimum tax credit; MTC)의 이월액
- ④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손실과 이월손실액
- ⑤ 기초가액의 감액
- ⑥ 비사업활동으로 인한 결손과 세액공제액의 이월액
- ⑦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이월액

372) IRC §50(c)(2)

구성법인의 주식의 기초가액에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감면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S가 자산의 기초가액을 증가시켰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수정³⁷⁴⁾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된다면 당해 기초가액의 증가는 감면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비자본 공제불능경비

S의 비자본 공제불능경비(noncapital, nondeductible expenses)라 함은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영구적으로 부인되거나 제외되는 것으로서 자산의 기초가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손비를 말하며 S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면 연방조세³⁷⁵⁾, 주식 또는 현물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인식되지 아니하는 손실³⁷⁶⁾이 이에 속하며 S에게 귀속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만료되거나 채무면제이익의 소득불산입³⁷⁷⁾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공제시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에 비자본 공제불능경비가 된다. 그러나 증권을 처분하였다 재취득한 경우 부인되는 처분손실³⁷⁸⁾은 대응되는 기초가액의 수정이 손실부인을 영구적이지 못하게 하므로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73)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감소한다(IRC §50(c)(1)).

374) IRC §481(a).

375) 연방소득세, 연방초과이윤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을 말한다(IRC § 275(a)).

376) IRC §311(a).

377) IRC §108(b).

378) 증권의 매각일을 전후로 30일 이내에 동일한 증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IRC §1091). 이는 자전거래 등을 통하여 평가손실을 실현시켜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S의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의 감소는 당해 감소가 주식의 기초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S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비자본 공제불능경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에 의하여 지급된 조세로서 S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연결세액에 대하여 세액분담약정(tax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한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지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감면소득에 의한 적극적 수정으로 보며, 지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의 발생으로 인한 소극적 수정으로 본다. 당해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일반적으로 구성법인간의 관계에 따라 배당 또는 출자로 본다.

라) 배당

S가 배당함에 따라 P가 배당을 받는 경우 S 주식의 기초가액은 감액된다.

3) SRLY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포기

가) 이월결손금 포기의 선택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때 SRLY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연결납세집단은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포기할 것을 선택³⁷⁹⁾할 수 있다. 만약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다면 그 다른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직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³⁸⁰⁾.

379) 이월결손금 포기의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380) Reg. §1.1502-32(b)(4)(i).

나) 포기선택시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

(1) 적격거래의 경우 수정배제

S가 적격원가기준거래에 의하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면서 이월결손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에 대하여는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적격원가기준거래(qualifying cost basis transaction)라 함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S 주식의 80% 이상³⁸¹⁾을 12월의 기간내에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2) 비적격거래의 경우 감액수정

S가 비적격거래(nonqualifying transaction)에 의하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면서 이월결손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에 대하여는 주식 기초가액의 감액수정을 필요로 한다. 당해 감액은 S가 새로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이루어지나 종전의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직후에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연결납세집단의 쌍방에서 상위의 구성법인의 주식 기초가액에 대한 대응 수정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만약 기초가액의 감액이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S 주식을 소유하는 구성법인이 승계하는 초과손실계정으로 본다.

(3) 상위 법인으로 인하여 구성법인이 된 경우 추가수정

S의 상위의 법인이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S를 구성법인이 되도록 한 상위의 구성법인(T)과 T의 하위 법인(S 포함)이 수

381) Reg. §1.1504(a)(2)에 따라 의결권과 주식시가총액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경우를 말한다.

정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T는 T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T1은 S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고 S의 이월결손금을 포기하였다면 S 주식의 기초가액은 감소하며 당해 감소는 T1의 기초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즉 S 주식에 대한 T1의 기초가액의 소극적 수정은 T1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T는 T1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의 수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T가 비적격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면 T는 T1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T보다 상위의 법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³⁸²⁾.

다) 순자산의 기초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감액한도

이월결손금의 포기에 따라 감액되는 주식의 기초가액은 순자산의 기초가액 중 지분을 상당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액될 수 없다. 이 경우 상위 법인에 대하여 당해 제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위 법인별로 개별적으로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각 법인의 순자산과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하위로부터 상위의 순서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성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라 함은 자산에 대한 수정기초가액(이월결손금 포함)과 부채의 수정기초가액간의 차이를 말한다³⁸³⁾.

4)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과 관련한 사례로서 P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S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S의 하위법인은 없으며,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는 역에 의한 1년이라고 가정한다.

382) Reg. §1.1502-32(b)(4)(ii).

383) Reg. §1.1502-32(b)(4)(iii).

가)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사례³⁸⁴⁾

(1) 기본사례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S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을 \$100 가지고 있었다면 제1차 연도말 현재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 증가한다.

(2) 실현되지 않은 내부이익이 있는 경우

‘(1)’의 사례에서 제1차 연도에 S가 다른 구성법인에게 자산을 매각하여 \$25의 이익을 얻었고 당해 이익을 이연하였으며 제3차 연도에 당해 이익을 인식하였다고 가정하자. 또한 제2차 연도에 P가 S의 주식 중 10%를 비구성법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S의 이연된 이익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연결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연된 이익은 S의 소득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이익이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제3차 연도까지 이연된 이익으로 인하여 기초가액이 수정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처분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S의 내부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가되지 아니한다. 제3차 연도에 이연된 이익이 인식되지만 P에 의하여 처분된 S의 주식에 배분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이 비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으므로 기초가액이 증가하지 아니한다.

(3) 실현된 내부이익이 있는 경우

‘(2)’에서 P가 S의 주식을 10% 처분하는 대신 전부를 처분하였다면 S는 촉진원칙에 따라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384) Reg. §1.1502-32(b)(5) Ex.1.

\$25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S의 내부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가하게 된다.

나) 결손의 사례³⁸⁵⁾

(1) 결손의 당해 연도 사용

제2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S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결과 \$50의 연결결손금을 가지게 되었다면 S의 결손은 당해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P의 소득과 상계된다. 이 경우 P는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50 감소시키게 된다.

(2) 사업연도중 주식처분

‘(1)’에서 제2차 연도중 S의 결손이 상반기에 발생하였고 P가 제2차 연도의 7월 1일에 S의 주식 50%를 처분하였으며, P의 제2차 연도 소득(S 주식의 처분손익 제외)은 주식처분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S의 결손에 의하여 상계됨에 따라 S에게 귀속되는 결손이 남지 않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결손 \$50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주식처분 직전에 \$25 감소시킨다. 또한 S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의 결손으로 인하여 S가 비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S의 잔존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5만큼 감소한다.

(3) 결손의 소급공제

‘(1)’에서 P가 제2차 연도에 소득 또는 결손이 없고 S의 결손 \$50이 제1차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되며 이로 인하여 P 연결납세

385) Reg. §1.1502-32(b)(5) Ex.2.

집단은 제2차 연도에 \$17의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결손 \$50은 소급공제되므로 그 발생한 사업연도인 제2차 연도의 손비로서 간주되며 세액환급액은 감면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는 제2차 연도말에 S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33(= \$50 - \$17) 감소시키게 된다.

(4) 결손의 이월공제

‘(1)’에서 P가 제2차 연도에 소득 또는 결손이 없고 S의 결손 \$50이 제3차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결손은 제3차 연도에 기초가액을 감소시킨다.

다. 수정금액의 주식간 배분

1) 개요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수정함에 있어서 S의 배당에 대한 소극적 수정은 당해 배당에 관련한 S의 주식에 배분된다³⁸⁶⁾. 그 이외의 기초가액 수정금액(과세소득 또는 결손, 감면소득, 비자본 공제불능 경비와 관련한 수정)은 적극적 수정인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우선주에 배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보통주에 배분한다. 그러나 소극적 수정인 경우에는 보통주에만 배분한다. 또한 비구성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에 배분되는 수정금액은 주식의 기초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³⁸⁷⁾.

386) 수정금액으로서의 배당의 주식간 배분에 있어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우선주에 배분되고 보통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에 배분된다.

387) Reg. §1.1502-32(c)(1).

2) 보통주에의 배분

가) 동일한 등급의 보통주간 배분

수정항목(배당으로 인한 수정 제외)을 보통주에 배분하는 경우 동일한 등급(class)³⁸⁸⁾의 보통주간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러나 구성법인이 적극적 수정을 하는 때 당해 유형의 보통주에 대하여 초과손실계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초과손실계정을 소멸시킨 후 주식의 기초가액을 균등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소극적 수정은 우선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한 후 초과손실계정을 설정하거나 증가시킨다³⁸⁹⁾.

나) 상이한 등급의 보통주간 배분

S가 둘 이상의 등급의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수정항목(배당으로 인한 수정 제외)의 배분은 각 등급의 조건과 기타 다른 사실 및 상황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가정을 기초로 배분한다³⁹⁰⁾.

3) 우선주에의 배분

적극적 수정항목(배당을 고려하기 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익부족으로 미지급된 배당 포함)의 범위내에서 우선주에 배분된다³⁹¹⁾.

388) 중요한 조건(의결권은 고려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동일한 주식은 같은 등급의 주식으로 본다(Reg. §1.1502-32(d)(1)).

389) Reg. §1.1502-32(c)(2)(i).

390) Reg. §1.1502-32(c)(2)(ii).

391) Reg. §1.1502-32(c)(3).

4) 누적적 재산정

S의 우선주 및 보통주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은 세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S의 증자, 주식상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S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수정항목을 재배분³⁹²⁾함으로써 변동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기초가액을 누적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등급의 주식에 대하여는 재배분하지 아니한다³⁹³⁾.

5) 사례

가) 100% 미만 소유사례³⁹⁴⁾

(1) 사실관계

P는 S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800이다. 제1차 연도에 S는 \$100의 과세소득을 얻었다.

(2) 분석

S의 과세소득에 대한 \$100의 적극적 수정은 비구성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S의 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P는 제1차 연도말에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80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비구성법인이 소유하는 20%의 S 주식에 대하여는 수정되지 아니한다.

392)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지분변동이 있기 직전에 재배분되는 것으로 한다.

393) Reg. §1.1502-32(c)(4).

394) Reg. §1.1502-32(c)(5) Ex.1.

(3) 주식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

‘(1)’에서 P가 제1차 연도의 6월 30일에 S의 잔존 주식 20%를 \$208에 취득하였으며, S의 과세소득 \$100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40이 발생하였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60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100의 수정금액을 P가 보유하는 S 주식에 배분함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2(\$40의 80%)이 배분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60(\$60의 100%)이 배분된다. 당해 수정은 보유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제1차 연도초에 P가 보유하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80(\$40의 80%와 \$60의 80%의 합계) 증가하게 되고, 6월 30일에 취득한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2(\$60의 2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1차 연도말에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의 합계는 \$1,100이 된다.

(4) 연결세액의 배분에 의한 납부

‘(1)’에서 연결세액 중 S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S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34을 P가 납부하였고 S가 P에게 이를 보전해 주지 않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과세소득 \$100은 적극적 수정을 초래하고 S의 법인세 부담세액 \$34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서 소극적 수정을 초래한다. 또한 S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4은 P로부터 자본출자로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52.80³⁹⁵⁾ 증가하며 자본출자간주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34 증가한다. 결국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86.80 증가하게 된다.

395) \$100의 과세소득 중 80%에서 \$34의 세액지급액 중 80%를 차감한 잔액.

만약 ‘(3)’에서와 같이 P가 S의 잔존 주식 20%를 6월 30일에 취득하였다면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당해 20%의 주식에 대하여 \$7.90³⁹⁶⁾ 추가로 증가하게 되며 P에 의한 \$34의 자본출자간 주액은 P가 보유하는 S의 모든 주식(80%가 아니라)에 대하여 반영된다. 따라서 P의 기초가액은 \$94.70³⁹⁷⁾ 증가하게 된다.

나) 우선주 사례³⁹⁸⁾

(1) 사실관계

P는 S의 보통주 전부(기초가액 \$800)를 소유하고 있으며 S의 우선주는 전부 비구성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우선주식은 \$200에 발행되었으며 매년 \$20의 누적적 배당우선권 및 \$200의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부여되어 있다. 제1차 연도에 S는 \$50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며 무배당을 선언하였다.

(2) 분석

\$50의 과세소득에 대한 적극적 수정금액 중 \$20은 제1차 연도에 지급되지 아니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주에게 배분된다. 적극적 수정 중 \$30의 잔액은 보통주에 배분되어 제1차 연도말 현재 P의 기초가액을 \$800에서 \$830로 증가시킨다.

(3) 당기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1)’에서 S가 제1차 연도에 우선주에 대하여 \$20의 배당을 선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2)’와 같다.

396) \$60의 20%에서 \$60에 대한 세액 \$20.40의 20%를 차감한 잔액.

397) \$86.80과 \$7.90의 합계액.

398) Reg. §1.1502-32(c)(5) Ex.2.

(4) 주식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

‘(1)’에서 S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소득 또는 결손이 없고 P가 제3차 연도초에 S의 우선주 전부를 \$240에 취득하였으며 S가 제3차 연도에 \$70의 과세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70의 적극적 수정금액 중 \$60은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에 지급되지 아니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주에게 배분되지만 제3차 연도에 대한 \$20만이 우선주의 기초가액에 반영된다³⁹⁹⁾. 따라서 P는 제3차 연도말에 S의 우선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240에서 \$260로, 보통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800에서 \$810로 증가시키게 된다⁴⁰⁰⁾.

다) 누적적 재산정의 사례⁴⁰¹⁾

(1) 사실관계

P는 S의 보통주와 우선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매년 \$100의 누적적 배당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연도에 S의 과세소득은 \$200로서 \$100은 우선주에 배분되고 나머지 \$100은 보통주에 배분된다. 제2차 연도에 S는 P의 기초가액과 관련한 수정금액이 없으며 P는 제2차 연도말에 S의 보통주 전부를 처분하였다.

(2) 분석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재산정하여야 한다. 기초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금액인 \$200을 처분일 현재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

399) \$40의 잔액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당해 우선주가 비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기 때문에 P의 기초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400) 만약 S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우선주에 대하여 \$20씩의 배당을 선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아니한다.

401) Reg. §1.1502-32(c)(5) Ex.3.

든 사실과 상황을 감안하여 재배분한다. 따라서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선언하지 아니한 우선주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우선주에 재배분된다. 재배분의 결과 보통주에 대하여는 \$200의 적극적 수정이 전혀 배분되지 아니하게 된다. 이러한 재배분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소급하여 당초부터 그렇게 배분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 수정항목이 발생한 이후에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

‘(1)’에서 S가 제2차 연도초에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수정항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P가 S의 보통주식을 제3차 연도말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200의 적극적 수정금액은 보통주에만 배분되고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미지급 우선주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이 우선주에게 재배분된다. 따라서 보통주에 대하여는 수정항목이 없게 된다.

(4) 수정항목이 발생한 이후에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1)’에서 S가 우선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제2차 연도초에 당초에 발행된 보통주와 동일한 등급의 보통주를 추가발행하였으며 S는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수정항목이 없었고 P가 제3차 연도말에 S의 보통주를 처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200의 적극적 수정은 당초 발행된 보통주에 배분되며 추가로 발행된 보통주식이 당초 발행된 보통주식과 동일한 등급이기 때문에 수정항목을 재배분하지 아니한다.

(5) 소극적 수정이 있는 경우

‘(1)’에서 제2차 연도에 S에게 \$200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극적

수정을 초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기초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수정항목은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2)’에서와 같이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우선주식에 모두 재배분되고 제2차 연도의 소극적 수정 \$200은 보통주식에 전액 배분된다. 결국 우선주식에 대한 적극적 수정의 누적액은 \$200이고 보통주식에 대한 소극적 수정의 누적액은 \$200이다.

(6) 당기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1)’에서 제1차 연도중 P가 소유하는 우선주에 대하여 \$100, 보통주에 대하여 \$100의 배당을 S가 선언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제1차 연도에는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에 대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S의 보통주를 처분하는 때 ‘(2)’에서와 같이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전액을 우선주에 재배분하게 된다. 결국 우선주에 대한 적극적 수정의 누적치는 \$100(\$200의 과세 소득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100을 차감한 잔액)이고 보통주에 대한 소극적 수정의 누적치는 \$100이 된다.

(7) 보유하는 우선주가 전환우선주인 경우

‘(1)’에서 우선주가 이미 발행된 보통주와 동일한 보통주로 제2차 연도말에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제5차 연도말까지 보유주식이 처분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전환 직전에 우선주에 전액 배분된다. 새로이 발행되는 보통주는 S 보통주의 제2등급으로 간주되며 수정항목은 당초 발행된 보통주와 새로이 발행된 보통주간에 조건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주에 대한 적극적 수정 \$200은 당초의 보통주와 새로이 발행된 보통주간에 재배분되지 아니한다. 당초의 보통

주와 새로이 발행된 보통주는 그 조건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차후의 기간에 대한 수정은 각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8) 배분의 사전사용

‘(1)’에서 제1차 연도말에 S의 보통주 중 10%를 처분하고 잔존 주식 90%는 제2차 연도말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처분된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1차 연도에 보통주에 배분된 수정금액 중 \$10을 반영한다. 제1차 연도의 수정 중 \$10은 P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90만이 우선주에 재배분되고 \$10은 처분되는 보통주에 배분된다.

(9) P가 하위법인인 경우

‘(1)’에서 P가 S의 보통주만을 소유하고 있고 P는 다른 법인의 자회사일 경우 P의 주식을 소유하는 구성법인이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재산정한다면 우선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연결납세집단간 배분사례⁴⁰²⁾

(1) 사실관계

P는 한 등급의 주식만을 발행한 S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S는 T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에 대하여는 매년 \$100의 누적적 배당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 제1차 연도에 T의 과세소득은 \$200이었으며 \$100은 우선주에 배분되고 잔액 \$100은 보통주에 배분되었다. S는 T의 수정으로 인한 것 이외

402) Reg. §1.1502-32(c)(5) Ex.4.

의 수정은 없었으며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에 S와 T는 수정이 없었다.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X는 제3차 연도말에 S의 모든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S와 T는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4차 연도에 T의 과세소득은 \$200이었으며 S는 별도의 수정항목이 없었다.

(2)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의 분석

S의 수정에 대한 배분은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재산정되어야 한다. 재산정의 결과 T의 보통주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수정항목이 없으며 우선주에 대하여는 \$200의 적극적 수정이 있게 된다.

(3) 제4차 연도의 분석

제4차 연도에 T의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우선배당과 관련하여 \$200의 적극적 수정을 배분함에 있어서 P 집단과 X 집단의 연결납세사업연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4차 연도에 T의 우선주에 대한 적극적 수정 \$200의 배분은 당해 우선주가 비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간에 배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의 수정은 T 우선주에 대한 S의 기초가액에 반영된다.

라. 조세회피방지규정

1) 개요

연결납세규칙상의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반할 주된 목적을 가지고 그 규정의 적용과 효과를 회피하거나 연결납세규칙상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⁴⁰³).

2) 사례

가) 보통주로 간주되는 우선주의 사례⁴⁰⁴⁾

(1) 사실관계

S는 보통주 100주와 우선주 100주를 발행하였으며 P는 S의 보통주 80주와 S의 우선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들은 S에게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소극적 수정(S의 보통주에만 배분될 것임)이 발생할 것이며 당해 소극적 수정이 S의 주식시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후에 소극적 수정을 상계할만한 적극적 수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주가 발행될 당시 P는 S로 하여금 제2차 연도말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자본재조정(recapitalization)⁴⁰⁵⁾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P의 일시적인 우선주의 보유는 예상되는 소극적 수정의 80% 이상으로 기초가액이 감액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또한 자본재조정은 당해 재조정 직후에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지분증가로 인하여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예상되는 적극적 수정의 80%보다 크게 증가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2) 분석

S는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인 자본구조의 변동을 꾀하였다. 이 경우 S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동일한 등급의 보통주로 간주된다. 따라서 S의 수정항목은 모든 주식에 배분되고 P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의 기초가액을 감액시켜야 한다.

403) Reg. §1.1502-32(e)(1).

404) Reg. §1.1502-32(e)(2) Ex.1.

405) IRC §368(a)(1)(E)에서 규정하는 거래

나) 자산을 평가증하여 출자하는 사례⁴⁰⁶⁾

(1) 사실관계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S와 T는 U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P가 보유하는 S의 주식은 기초가액이 \$150이고 시가는 \$200이며 P가 보유하는 T의 주식은 기초가액과 시가가 모두 \$200이다. S의 주식을 처분할 때 예상되는 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T는 U에게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출자하고 S는 \$100의 현금을 출자하였다. U는 T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100의 이익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100의 적극적 수정을 초래한다.

(2) 분석

일반적으로 U의 수정항목은 U의 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만약 그렇게 배분된다면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50에서 \$200로 증가하게 되고 P는 S의 주식을 \$200에 처분하더라도 이익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P가 보유하는 T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의 일부를 P가 보유하는 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이전시킬 목적으로 T가 평가증된 자산을 U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U의 주식에 대한 \$100의 적극적 수정은 당해 출자를 감안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⁴⁰⁷⁾. 이에 따라 적극적 수정 \$100은 S가 보유하는 U의 주식과 T가 보유하는 U의 주식에 \$50씩 배분하는 대신 \$100의 전액 모두 T가 보유하는 U의 주식에 배분한다. 따라서 P는 S의 주식을 \$200에 처분함으로써 인하

406) Reg. §1.1502-32(e)(2) Ex.2.

407) U에 의하여 이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T가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중에 발생한 자산평가이익을 원천으로 하므로 당해 이익은 T가 보유하는 U 주식에 배분되어야 한다.

여 \$5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다)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⁴⁰⁸⁾

(1) 사실관계

P는 \$800(우선주 \$200, 보통주 \$6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다.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까지 S의 통상소득은 \$160이었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60(매년 \$20의 배당우선권에 의함)이었다. 이에 따라 S의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변동하지 않으며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600에서 \$700로 증가하였다. S의 우선주를 처분할 경우 이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P는 제3차 연도말에 S의 모든 주식을 T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로 S의 주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T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받았다. 당해 출자 당시 보통주의 시가는 \$700이고 우선주의 시가는 \$300⁴⁰⁹⁾이었다. 그 후 P는 T의 우선주를 \$300에 매각하였다.

(2) 분석

일반적으로 P의 T 보통주에 대한 기초가액은 \$630(주식 전체의 기초가액 \$900의 70%)이 되며 T 우선주에 대한 기초가액은 \$270(\$900의 30%)이 된다. 그러나 P가 기초가액 수정의 분배를 변경시킬 목적으로 S의 주식을 T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T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700이며 T의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P는 T의 우선주를 처분함에 따라 \$10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408) Reg. §1.1502-32(e)(2) Ex.3.

409) 시장이자율의 감소로 시가가 증가한 것임.

라) 주식의 연결이탈후의 기초가액 수정사례⁴¹⁰⁾

(1)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S의 손익만으로 산정한 연결과세소득이 \$40이고 P는 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40 증가시켰다. P는 제2차 연도에 S에게 \$40의 결손이 발생하고 당해 결손은 제1차 연도로 소급하여 S의 소득에서 공제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P는 S로 하여금 제2차 연도 초에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S가 비구성법인이 되도록 하였다⁴¹¹⁾. 예상대로 제2차 연도에 S는 \$40의 결손이 발생하여 제1차 연도의 S 소득에서 소급공제되었다.

(2) 분석

P는 S의 결손을 소급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소극적 수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S가 비구성법인이 되도록 하였고 P가 S 주식의 계속적 소유로 인하여 결손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였으므로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2차 연도에 \$40 감소한다. 또한 S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제외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다시 될 수 없다.

(3)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되는 경우

‘(1)’에서 S의 결손이 소급하여 제1차 연도 이전의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공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10) Reg. §1.1502-32(e)(2) Ex.4.

411) 이 경우 S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더라도 S 주식은 계속 구성법인(P)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감액되지 아니한다(Reg. §1.1502-20(b)).

로 한다. 이 경우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S의 손익은 개별납세규칙에 따라 처리되므로 P와 S 모두 연결납세규칙상의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반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마) 연결납세 이전의 기초가액 수정사례⁴¹²⁾

(1) 사실관계

P는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으며 S는 P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으나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까지 S는 \$300의 소득을 얻었다. P는 제5차 연도에 연결납세를 시작하려고 한다. P는 제5차 연도 이후에 S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소극적 수정으로 인하여 기초가액이 감액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4차 연도에 S가 \$300을 배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배당후에 S에게 당해 배당받은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

(2) 분석

소극적 수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S로부터 \$300의 배당을 받았지만 당해 \$300은 개별납세규칙에 따라 얻은 소득에서 배당한 것이므로 P와 S는 연결납세규칙상의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반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412) Reg. §1.1502-32(e)(2) Ex.5.

마. 승계한 법인과 승계받은 법인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법인 또는 주식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주식에게 기초가액을 승계한 법인 또는 주식과 당해 법인 또는 주식으로부터 기초가액을 승계받은 법인 또는 주식을 포함한다. 이 경우 승계라 함은 다른 법인의 자산 또는 다른 주식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 또는 주식의 기초가액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T가 S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S는 T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된다⁴¹³⁾.

바. 기장

기초가액에 대한 수정항목은 매년 장부에 기장(정산표 포함)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집단은 이러한 장부의 기장을 통하여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소득과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의 성격을 포함하여 수정항목의 금액과 배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⁴¹⁴⁾.

2. 초과손실계정

가. 개요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의 손익 또는 배당 등에 따라 수정된다. 이 경우 소극적 수정이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S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이라고 한다.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은

413) Reg. §1.1502-32(f).

414) Reg. §1.1502-32(g).

부(-)의 기초가액으로 취급된다. 초과손실에 관한 규정(Reg. § 1.1502-19)은 법률의 다른 규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의 다른 규정이라 함은 Reg. §1.1502-32(초과손실계정을 설치하고 수정하는 투자수정규칙), Reg. §1.1502-80(IRC §357(c)의 적용배제) 등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중복하여 적용되더라도 이익을 중복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⁴¹⁵⁾.

나.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

1) 원칙

P가 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P는 S의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⁴¹⁶⁾.

2) 예외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에 대하여는 연결납세규칙하에서 소득의 인식배제 또는 이연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P가 모든 자산을 S에게 이전하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초과손실계정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⁴¹⁷⁾. 그러나 주식의 연결이탈(deconsolidation) 또는 가치소멸(worthlessness)로 인한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는 인식배제 또는 이연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인식된다⁴¹⁸⁾.

415) Reg. §1.1502-19(a)(2) & (3).

416) Reg. §1.1502-19(b)(1).

417) Reg. §1.1502-19(b)(2)(i).

418) Reg. §1.1502-19(b)(2)(ii).

3) 자회사와 그 하위법인 주식의 동시처분

하나 이상의 자회사 주식을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 주식처분이익은 하위법인부터 상위법인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한다⁴¹⁹⁾.

다. 주식의 처분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가 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⁴²⁰⁾.

- ① 양도, 취소 등
- ② 연결이탈
- ③ 가치소멸

라. 기초가액수정에 있어서의 특별배분

구성법인이 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수정함에 있어서 특정 등급의 주식에 대하여는 초과손실계정이 있으나 동일한 등급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는 초과손실계정이 없는 경우 수정항목은 우선적으로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P가 기초가액이 \$100인 S 주식(S는 하나의 등급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하였음) 50주와 초과손실계정이 \$100 있는 S 주식 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추가로 주식을 받지 아니하고 S에게 \$200을 증여하였다고 할 때 당해 증여는 우선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1씩 증가시킨다.

만약 P가 \$200을 증여하는 대신 S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로 S의

419) Reg. §1.1502-19(b)(3).

420) Reg. §1.1502-19(c).

신주 100주를 받았다면 우선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고 당해 신주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 된다⁴²¹⁾.

마. 조세회피방지과 승계법인

연결납세규칙상의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반할 주된 목적을 가지고 그 규정의 적용과 효과를 회피하거나 연결납세규칙상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⁴²²⁾.

초과손실계정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법인 또는 주식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주식에게 기초가액을 승계한 법인 또는 주식과 당해 법인 또는 주식으로부터 기초가액을 승계받은 법인 또는 주식을 포함한다⁴²³⁾.

바. 사례

1) 주식의 과세처분 사례⁴²⁴⁾

가) 사실관계

P가 소유하는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50이며 S가 소유하는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다. 제1차 연도에 P는 \$500의 통상소득을 얻었고 S는 손익이 없으며 T는 \$20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S는 T 주식을 제1차 연도말에 비구성법인에게 \$60에 매

421) Reg. §1.1502-19(d).

422) Reg. §1.1502-19(e).

423) Reg. §1.1502-19(f).

424) Reg. §1.1502-19(g) Ex.1.

각하였다.

나) 분석

T의 결손으로 인하여 S는 주식처분 직전에 T 주식에 대하여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S는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주식처분이익에 가산하여 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S는 연결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식처분이익 \$160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T의 결손 \$200과 S의 주식처분이익 \$160의 차액 \$40로 인하여 제1차 연도말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50에서 \$110로 감소된다.

다) 내부처분후 외부처분이 있는 경우

‘가)’에서 S가 T 주식을 제1차 연도말에 P에게 \$60에 매각하고, P는 제5차 연도초에 이를 비구성법인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이익의 이연규정에 따라 S의 주식처분이익 \$160은 그 인식이 이연되고 P가 T 주식을 처분하는 제5차 연도에 인식된다. 또한 제1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200의 사용으로 인하여 P는 제1차 연도말에 S 주식에 대하여 \$50의 초과손실계정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제5차 연도에 S의 주식처분이익 \$160은 P의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고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110로 증가시킨다.

라) 내부배당후 외부처분이 있는 경우

‘가)’에서 T 주식의 시가가 \$60이고 S가 제1차 연도말에 P에게 T 주식 전부를 배당으로 양도하였으며 제5차 연도초 P가 T 주식의 기초가액에 이익을 가산하여 당해 주식을 비구성법인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말에 S가 배당한 것은 T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

다. S의 T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 \$100은 배당으로 인하여 인식하여야 할 추가이익으로 본다.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60이다. 내부거래이익 이연규정에 따라 S의 배당으로 인한 이익 \$160은 이연되고 P가 T 주식을 외부에 처분하는 때인 제5차 연도에 인식된다. T의 결손 \$200과 S의 배당 \$60로 인하여 P는 제1차 연도말에 S의 주식에 대하여 \$110의 초과손실계정을 갖게 된다. 제5차 연도에 S가 인식하여야 할 이익 \$160은 P의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고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50로 증가시킨다.

2) 내부 구조조정에서의 기초가액 결정 사례⁴²⁵⁾

가) 사실관계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50이고 T 주식에 대하여는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가지고 있다. P는 T 주식을 S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나) 분석

P의 주식양도는 T 주식의 처분으로 간주된다. IRC §351(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산이전)에 따라 P는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P의 T 주식에 대한 \$100의 초과손실계정은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150에서 \$50로 감소시킨다. 또한 S는 T 주식에 대하여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가지게 된다.

만약 P가 T 주식의 양도대가로 S의 주식을 받았다면 당초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이 출자로 인하여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P가 S 주식을 T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T 주식을 받는다면 P가 당초의 T 주

425) Reg. §1.1502-19(g) Ex.2.

식에 대하여 초과손실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신규로 발행된 T 주식의 기초가액이 결정되므로 기초가액이 변동된다.

3. E & P

가. 개요

1) 의의

E & P(earnings and profits)라 함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며 과세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는 당기배당가능소득이다. 법인이 E & P의 범위내에서 분배한 금액이 배당(dividend)이 되고⁴²⁶⁾, 법인주주에 관해서는 총소득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수입배당공제)가 적용된다⁴²⁷⁾. 이에 반하여 법인의 E & P를 초과하는 분배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하고, 분배를 받는 주주의 주식의 기초가액에서 공제되어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의 주식양도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⁴²⁸⁾.

E & P에 대하여는 IRC §312(E & P에 대한 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납세규칙에서 E & P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상위의 구성법인의 E & P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위의 구성법인의 E & P를 반영하고 공통의 모회사에서 연결납세집단의 E & P를 산정함으로써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⁴²⁹⁾.

426) IRC §316(a).

427) IRC §61(a)(7) & 243.

428) IRC §301(c).

429) Reg. §1.1502-33(a)(1).

2) 법률의 다른 규정의 적용

연결납세규칙상 E & P에 관한 규정은 E & P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P의 E & P는 중복하여 산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S의 E & P가 P의 E & P에 반영되었고 S가 청산하여 그 자산을 P에게 이전하는 경우 P가 승계하는 S의 E & P는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⁴³⁰⁾.

나. E & P의 상위법인으로의 반영

1) 일반원칙

P의 E & P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일반원칙⁴³¹⁾에 따라 S의 E & P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된다. 특정 사업연도의 P의 E & P에 대한 수정은 연결납세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E & P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 또한 S의 E & P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있어서 주식간 수정항목의 배분에 관한 원칙⁴³²⁾에 따라 배분되며, 하위법인으로부터 상위법인의 순으로 수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⁴³³⁾.

① P의 수정금액은 S의 과세 또는 면세항목이 아닌 S의 E & P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S의 사용되지 아니한 결손에 대한 소극적 수정의 이연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30) Reg. §1.1502-33(a)(2).

431) Reg. §1.1502-32.

432) Reg. §1.1502-32(c).

433) Reg. §1.1502-33(b)(1).

②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하여는 차후에 설명하는 별도의 세액분담규정을 적용한다.

2) 관계회사집단의 E & P

SRLY가 아닌 개별납세사업연도에 누적된 E & P를 배당함으로써 발생하는 S의 E & P의 감액⁴³⁴⁾은 P의 E & P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S로부터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P의 E & P는 대응되는 감소에 의하여 상계되지 아니한다⁴³⁵⁾.

3) 사례⁴³⁶⁾

가) 사실관계

P는 제1차 연도에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고 제1차 연도부터 연결납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S는 제1차 연도에 \$100의 E & P를 얻었고 제2차 연도에는 E & P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2차 연도 중 S는 P에게 \$50의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다.

나) 분석

제1차 연도에 발생한 S의 E & P \$100은 제1차 연도의 P의 E & P를 증가시킨다. 제2차 연도에 P는 배당을 받음으로써 P의 E & P가 \$50 증가하고 S의 E & P의 감소로 인하여 P의 E & P가 \$50 대응감소하여 P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배당으로 인한 E & P에의 영향은 없다.

434) Reg. §1.1502-33에 의한 감액이 아니라 IRC §312에 따른 감액을 말한다.

435) Reg. §1.1502-33(b)(2).

436) Reg. §1.1502-33(b)(3) Ex.1.

다) 당기에 발생한 E & P의 배당

‘가)’에서 S가 \$50의 배당을 제2차 연도에 지급하는 대신 제1차 연도말에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E & P는 \$50 증가하고 P의 E & P는 \$100⁴³⁷⁾ 증가한다.

라) 관계회사집단의 E & P

‘가)’에서 P와 S가 제2차 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P와 S는 제1차 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므로 S의 E & P가 \$100 발생하였더라도 P의 E & P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로 변동하지 아니한다. 또한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연도에 S의 배당은 S의 E & P를 감소시키지만 P의 E & P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P의 E & P \$50이 S의 E & P 감소로 인하여 감소하는 P의 E & P \$50과 상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였고 S가 SRLY에 발생한 E & P에서 배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가 P에게 배당함에 따른 소극적 수정에 대하여는 P의 E & P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S의 배당은 자신의 E & P를 \$50 감소시키고 P의 E & P를 \$50 증가시키게 된다. 만약 S의 E & P가 SRLY에 발생하여 누적된 것이라면 S의 배당은 S의 E & P를 감소시키지만 P의 E & P를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437) S의 당기 발생 E & P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 \$50과 P의 수입배당액 \$50의 합계액.

〈그림 VI-1〉 S의 배당으로 인한 S의 E & P 감소가 P의
E & P에 미치는 영향

신고유형 및 SRLY 여부		P의 E & P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연도	제2차 연도	S의 E & P 감소효과	P의 배당수입효과	종합
연결납세	연결납세	(-)	(+)	0
개별납세 (SRLY아님)	연결납세	0	(+)	0
개별납세 (SRLY)	연결납세	0	0	0

마) E & P 결손

만약 제1차 연도에 P가 \$100의 출자로 S를 설립한 후 S가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고 제1차 연도에 \$150의 E & P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 결손은 제1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연결결손금으로서 제2차 연도로 이월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E & P 결손은 제1차 연도에 P의 E & P를 \$150 감소시킨다. 또한 제2차 연도 이후에 당해 결손의 사용은 P와 S의 E & P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특례조치

1)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

P가 S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P의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규정⁴³⁸⁾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하고 S의 E & P를 반영하도록 수정된다. 즉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

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E & P에 의하여 증가되고 E & P 결손에 의하여 감소된다. 또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관계회사 집단의 연결전 E & P로부터의 배당에 의하여 감소되지 아니한다.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P는 기초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Reg. §1.1502-32(기초가액의 수정)에 의한 초과손실계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S 주식에 대하여 초과손실계정을 가질 수 있다⁴³⁹⁾.

2) 내부거래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은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⁴⁴⁰⁾에 의하여 손익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E & P에 반영되지 아니한다⁴⁴¹⁾.

3) 사례⁴⁴²⁾

가) 사실관계

P는 제1차 연도에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고 제1차 연도부터 연결납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제1차 연도에 S의 과세소득은 \$75, E & P 발생액은 \$100이었으며 제2차 연도에 S의 과세소득 및 E & P 발생액은 없고 P에게 \$50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제2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150에 매각하였다.

438) Reg. §1.1502-32.

439) Reg. §1.1502-33(c)(1).

440) Reg. §1.1502-13.

441) Reg. §1.1502-33(c)(2).

442) Reg. §1.1502-33(c)(3).

나) 분석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150⁴⁴³⁾이다. 따라서 P는 S 주식의 처분으로부터 E & P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E & P 결손

만약 S에게 제1차 연도에 결손 \$100 및 E & P 결손 \$100이 발생하였고 결손은 제1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연결결손금으로서 제2차 연도로 이월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E & P 결손은 제1차 연도에 P의 E & P를 감소시킨다. 또한 주식처분으로 인한 P의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0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은 \$150이 된다. 만약 S가 \$50을 차입하였고 제1차 연도에 \$15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P의 E & P는 추가로 \$50 더 감소하여 S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 \$50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은 \$200이 된다.

라) 관계회사집단의 E & P

만약 P와 S가 제2차 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시작하였다면 배당에 대한 소극적 수정은 SRLY가 아닌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E & P의 배당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로 유지되고 P는 S 주식의 처분으로부터 \$50의 E & P가 증가하게 된다.

443) 설립당시의 기초가액 \$100과 제1차 연도의 S의 E & P \$100의 합계액에서 제2차 연도의 E & P 배당 \$50을 차감한 잔액.

라. 연결세액의 배분

1) 개요

각 개별 법인의 E & P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액은 공제되는 항목⁴⁴⁴⁾이기 때문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E & P 계산시 적용되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된 배분기준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E & P 계산시 적용될 수 있는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은 IRC와 연결납세규칙에서 여러 가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특정 구성법인의 결손금 등의 조세혜택이 연결세액산정시 사용되었을 때 다른 구성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과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으로 구분된다.

2)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

연결세액을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개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인에게 당해 조세혜택의 연결기준 사용으로 세액부담이 감소하는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의 배분방법이다. 예를 들어 P의 과세소득 \$100이 S의 결손 \$100과 상계되는 경우 연결세액은 \$0이 되며 P는 S에게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세액배분방

444) Reg. §1.1552-1(b)(2).

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⁴⁴⁵⁾.

가) 개별소득비례배분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배분대상에서 제외) 각자에게 귀속되는 연결과세소득에 따라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될 연결세액은 연결세액에 [당해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이 구성법인 전체의 과세소득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이라 함은 수정된 개별과세소득⁴⁴⁶⁾에서 연결재계산항목의 금액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가감수정한 금액을 말한다⁴⁴⁷⁾.

$$\text{세액배분액} = \text{연결세액} \times \frac{\text{당해 구성법인의 과세소득}}{\text{구성법인 전체의 과세소득 합계}}$$

$$\begin{aligned} \text{구성법인의 과세소득} &= \text{수정된 개별과세소득} \\ &\pm \text{연결재계산항목 중 귀속액} \end{aligned}$$

나) 개별세액비례배분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산정되는 과세소득에 의거한 세액의 비율에 따라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될 연결세액은 연결세액에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이 구성법인 전체의 개별납세액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이라 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

445) IRC §1552.

446) Reg. §1.1502-12.

447) Reg. §1.1552-1(a)(1).

면 부담하였을 세액으로 하되 내부거래손익, 재고수정, 내부자본부채거래,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 기초가액 및 E & P 수정, 투자세액공제 등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을 경우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금액으로 한다⁴⁴⁸⁾.

$$\text{세액배분액} = \text{연결세액} \times \frac{\text{당해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text{구성법인 전체의 개별납세액 합계}}$$

다) 증가세액추가배분법

연결세액(연결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 제외)을 각 구성법인의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배분⁴⁴⁹⁾하고, 연결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⁴⁵⁰⁾은 세액감소가 발생하는 구성법인의 세액감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⁴⁵¹⁾. 이 경우 세액감소액은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의하여 배분된 세액이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하여 배분된 세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말한다. 연결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으로는 과거의 규정에 의한 2%의 연결가산세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연결가산세의 폐지로 증가세액추가배분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세액비례배분법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⁴⁵²⁾.

448) Reg. §1.1552-1(a)(2).

449)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의 적용을 말하며 이 경우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세액은 ‘나’의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따라 배분되는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50)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한 배분액이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의한 배분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포함한다.

451) Reg. §1.1552-1(a)(3).

452) Crestol et al.(2002), pp. 8-34~8-35.

라) 기타의 방법

위에서 열거된 배분방법 이외에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을 말한다⁴⁵³⁾.

3)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중 개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당해 결손금이 공제되거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연결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되는 조세혜택을 가진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배분금액의 증액)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배분방법이 허용된다⁴⁵⁴⁾.

가) 사후정산법(wait-and-see method)

연결세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위의 '2)'에서 언급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분하고 당해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이 그후의 연도에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별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 당해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법인들이 당해 법인에게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재배분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증권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rocedure)에서 적용하는

453) Reg. §1.1552-1(a)(4).

454) Reg. §1.1502-33(d).

방법을 연결납세규칙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 경우 재배분은 누적적으로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⁴⁵⁵⁾.

(1) 배분액에 대한 한도

각 사업연도에 '2)'에 의하여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세액은 다음 중 '①'이 '②'를 초과하는 차액을 한도로 한다.

- ① 계산기간⁴⁵⁶⁾(당해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 각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산정되는 개별세액의 누적액
- ② 계산기간(당해 사업연도 제외)에 걸쳐 선택된 배분방법에 따라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세액의 누적액

(2) 한도초과액의 재배분

'(1)'에서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당해 한도초과액은 다른 구성법인의 다음 중 '①'이 '②'를 초과하는 차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 ① 계산기간(당해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 각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산정되는 개별세액의 누적액
- ② 계산기간(당해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 선택된 배분방법에 따라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세액(당해 사업연도분은 '2)'에 의한 배분액에 한함)의 누적액

나) 비율법(percentage method)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이 당해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계없이 연결세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에 당해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액감소의 일정비율에 대한 대가를 다른 법인들

455) Reg. §1.1502-33(d)(2).

456) 연결세액이 배분되는 모든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연결세액의 배분액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법인의 E & P가 다음과 같이 증감하게 된다⁴⁵⁷⁾.

(1) E & P의 감소

비율법의 적용에 따라 '2'에 의한 연결세액의 배분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이 '②'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E & P가 감소한다.

- ①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서의 각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
- ② '2'에 의한 배분액

(2) E & P의 증가

'(1)'에서 감소한 E & P의 총액은 조세혜택의 대가를 받는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 의하여 배분하여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증가시킨다.

다) 기타의 방법

위에서 열거된 배분방법 이외에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을 말한다⁴⁵⁸⁾.

4) 배분방법의 선택 및 적용

가) 배분방법의 신고 및 무신고시 적용방법

연결납세집단은 연결납세신고를 최초로 하는 때 앞서 열거한 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457) Reg. §1.1502-33(d)(3).

458) Reg. §1.1502-33(d)(4).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배분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연결납세집단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하게 된다⁴⁵⁹⁾.

나) 배분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액처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로 E & P 계산시 차감되는 연결세액의 배분액보다 세액분담약정에 따른 실제 세액부담액이 더 큰 경우의 차액은 자본의 출자(capital contribution)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distribution)로 본다⁴⁶⁰⁾. 즉 자회사에게 배분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자회사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보며, 자회사가 자신에게 배분된 세액을 초과하여 모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주에 대한 분배(일반적으로 배당)로 취급되고 E & P를 감소시킨다⁴⁶¹⁾.

5) 사례

가)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의 사례⁴⁶²⁾

(1) 사실관계

P는 S1과 S2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 1966 사업연도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P 연결납세집단은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59) IRC §1552(b).

460) IRC §1552, Reg. §1.1502-33(d)(1)(ii).

461) Crestol et al.(2002), pp. 7-57~7-58.

462) Reg. §1.1552-1(f).

P	_____	\$ 0
S1	_____	\$ 2,000
S2	_____	(\$ 1,000)

(2) 분석

P 연결납세집단이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을 적용한다. 연결과세소득이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의 합계와 일치하고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연결과세소득은 \$1,000이며 연결세액은 \$220이 된다. 만약 S1이 \$220의 세액을 납부한다면 구성법인의 소득, E &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P가 \$22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P의 S1에 대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P는 S1에게 \$220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또한 S2가 \$22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S2의 S1에 대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S2는 P에게 \$220의 배당을 지급하고 P는 S1에게 \$220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나) 사후정산법의 사례⁴⁶³⁾

(1) 사실관계

P는 S1과 S2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 연결납세집단은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으로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을 기초로 한 사후정산법을 적용한다. 제1차 연도에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과 연결과세소득 중 각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으며 P \$0, S1 \$2,000, S2 (\$1,000)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34%라

463) Reg. §1.1502-33(d)(6) Ex.1.

고 가정할 때 제1차 연도의 연결세액은 \$340이다.

제2차 연도에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의 공제를 고려하기 전에 각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은 P \$0, S1 \$1,000, S2 \$3,000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34%라고 가정할 때 제2차 연도의 연결세액은 \$1,360이다.

(2) 제1차 연도의 분석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따라 제1차 연도의 연결세액 \$340은 전액 S1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S1의 E & P는 S1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340 감소한다. 또한 S2는 아직 개별납세기 준으로 결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1차 연도에 사후정산법에 의한 재배정은 없다.

만약 S1이 \$340의 세액을 납부한다면 구성법인의 소득, E &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P가 \$34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P의 S1에 대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P는 S1에게 \$340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또한 S2가 \$34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S2의 S1에 대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S2는 P에게 \$340의 배당을 지급하고 P는 S1에게 \$340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3) 제2차 연도의 분석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따라 제2차 연도의 연결세액 \$1,360은 S1에게 \$340, S2에게 \$1,020이 배분된다. 그러나 \$680 이상은 S2에게 배분될 수 없다. 왜냐하면 S2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세액의 누적액이 \$680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340은 S1에게 배분된다. 왜냐하면 S1이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세액의 누적액으로 볼 때 \$340의 세액을 추

가로 납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S1에 대한 \$680의 배분과 S2에 대한 \$680의 배분 및 납부에 대한 효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비율법의 사례⁴⁶⁴⁾

(1) 사실관계

‘나’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나 100%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2) 분석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따라 제1차 연도에 연결세액 \$340은 S1에게 배분된다. S1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680의 세액이 산정되었을 것이지만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따라 \$340만이 S1에게 배분되었으므로 비율법에 따라 추가로 \$340이 S1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S1의 E & P는 총 \$680만큼 감소하게 된다. 또한 S1에게 추가로 배분된 \$340이 S2의 결손을 사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S2의 E & P는 \$340만큼 증가한다.

(3) 세액의 납부

만약 제1차 연도에 S1이 \$340의 연결세액을 납부하고 S2에게 \$340을 지급한다면 구성법인의 소득, E &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S1이 \$340의 연결세액을 납부하고 구성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340을 S2 대신 P에게 지급하였다면 S2가 P에게 \$340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464) Reg. §1.1502-33(d)(6) Ex.2.

(4) 제2차 연도

제 2차 연도에는 S1에게 \$340, S2에게 \$1,020이 배분되고 비율 법에 따른 배분은 없다.

마. 연결이탈

1) 개요

S가 비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S의 E & P는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E & P로 인식된 범위내에서 제거된다. 이 경우 제거되는 S의 E & P는 P(또는 다른 구성법인)의 E & P에 대한 대응수정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E & P의 수정과 관련하여 S는 연결이탈후 최초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다른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 포함) 개시일에 비구성법인이 된 것으로 본다⁴⁶⁵).

2) 연결납세집단의 해체

연결납세집단('해체되는 집단'이라고 한다)의 공통의 모회사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취득하는 집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⁴⁶⁶)에는 '1)'에서의 E & P 제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취득하는 집단은 E & P 제거와 관련하여 해체되는 집단으로 본다. 그러나 해체되는 집단의 구성법인이 해체직후 취득되는 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⁴⁶⁷).

465) Reg. §1.1502-33(e)(1).

466) 주식의 취득 또는 IRC §381(a)(2)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의한다.

467) Reg. §1.1502-33(e)(2).

3) 사례⁴⁶⁸⁾

가)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P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S와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각각 \$500이다. 제1차 연도에 S의 E & P는 \$100, T의 E & P는 \$50 발생하였다. S와 T의 E & P 증가액은 P의 E & P를 \$150 증가시킨다. 제1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600에 매각하였다.

나) 분석

S의 E & P \$100은 P의 E & P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S가 비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제거된다. 그러나 P의 E & P 및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대하여는 대응수정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의 제1차 연도 E & P 증가액은 \$150 그대로이다.

다) 연결납세집단의 해체

‘가)’에서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X가 제1차 연도말에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고 P는 제3차 연도 중에 S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하면 S와 T의 E & P는 P 연결납세집단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S의 E & P는 S가 제3차 연도중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서 제외되기 직전에 제거된다.

468) Reg. §1.1502-33(e)(5).

바. 집단구조의 변동

1) 공통의 모회사의 변경

가) 원칙

P가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다른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P의 E & P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E & P를 반영하기 위하여 P가 공통의 모회사가 된 직후에 수정된다. 이 경우 수정은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E & P를 P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⁴⁶⁹⁾.

나) 소수주주 또는 P 이외의 구성법인에 의한 주식소유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 주식이 공통의 모회사가 변경된 직후에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전부 소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P 이외의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경우에는 E & P의 승계는 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⁴⁷⁰⁾.

다) 사례⁴⁷¹⁾

(1) 사실관계

X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로서 \$100의 E & P를 가지고 있으며 P는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로서 \$20의 E & P를 가지고 있다. P는 제1차 연도말에 X 주식의 전부를 P주식의 70%와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당해 교환은 역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X 연결납세집단은 P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

469) Reg. §1.1502-33(f)(1)(i).

470) Reg. §1.1502-33(f)(1)(ii) & (iii).

471) Reg. §1.1502-33(f)(1)(iv).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X 연결납세집단의 E & P 수정

P의 E & P는 X가 공통의 모회사에서 제외되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100의 E & P를 반영하기 위하여 P가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가 된 직후에 수정된다. 이 경우 P는 X의 E & P를 승계하는 것처럼 수정한다. 따라서 취득 직후에 P는 \$120의 누적 E & P를 가지게 되며, X는 \$100의 누적 E & P를 계속 가지게 된다.

(3) P 연결납세집단의 E & P 수정

P가 X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은 해체되지만 P 연결납세집단의 자회사들은 E & P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4) 개별납세법인의 취득

‘(1)’에서 P의 주식취득 직전에 X가 연결납세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면 당해 주식교환은 역취득에 해당되고 P는 X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된다. 따라서 결과는 ‘(2)’ 및 ‘(3)’과 동일하게 된다.

2) 자회사의 지배법인의 변경

연결납세집단내에서의 특정 자회사의 지배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E & P가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법인들의 E & P가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P가 S의 모든 주식을 다른 구성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구성법인을 지배⁴⁷²⁾하게 되었다면 양수법인의 E & P는 양도 직전의 S의 E & P로서 연결납세 사업연

472) IRC §351 및 Reg. §1.1502-13이 적용되는 거래

도 중에 발생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도 직후에 수정된다. 그러나 양수법인이 S의 주식을 P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면 양수자의 E & P는 수정되지 아니한다⁴⁷³⁾.

사. 조세회피방지 및 승계법인

투자수정에서와 마찬가지로 E & P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 및 승계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⁴⁷⁴⁾.

4. 집단의 구조변경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가. 개요

연결납세집단의 구조가 변경되어 법인(P)이 다른 법인(T)으로부터 공통의 모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⁴⁷⁵⁾에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 또는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의 주식에 대한 구성법인들의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가 S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T가 S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P가 T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되는 경우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S의 순자산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⁴⁷⁶⁾.

473) Reg. §1.1502-33(f)(2).

474) Reg. §1.1502-33(g) & (h).

475)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산의 전부를 양도하고 소멸하거나 역취득이 발생하여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g. §1.1502-75(d)(2) & (3)).

476) Reg. §1.1502-31(a).

나. 자산의 취득

집단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법인이 공통의 모회사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취득하는 법인에게 배분되는 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구성법인들의 기초가액을 집단구조변경의 직후에 수정한다⁴⁷⁷⁾.

다. 주식의 취득

집단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법인이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취득하는 법인에게 배분되는 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구성법인들의 기초가액을 집단구조변경의 직후에 재결정한다. 예를 들어 IRC §351의 규정에 의하여 T의 모든 주식이 P에게 출자되는 경우 T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IRC §362에 따라 P에게 출자한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T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⁴⁷⁸⁾.

477) Reg. §1.1502-31(b).

478) Reg. §1.1502-31(c).

VII. 지분변동

1.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제도

가. 개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결손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IRC §382에서는 일정한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그 지분변동전에 발생한 손실을 지분변동후의 사업연도에 사용하는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제도는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결납세집단 또는 그 하위집단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연결납세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⁴⁷⁹⁾. 본장에서는 우선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제도인 IRC §382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연결납세와 관련하여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의미,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요건 및 이들 집단에 대한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382조 한도

개별 법인에게 있어서 지분변동후 신손실법인(new loss corporation)의 과세소득은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지분변동전의

479) Regs. §1.1502-90~§1.1502-99.

손실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제382조 한도(\$382 limitation)’라고 한다⁴⁸⁰⁾. 제382조 한도는 구손실법인(old loss corporation)의 시기에 장기면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⁴⁸¹⁾.

1) 손실법인

손실법인(loss corporation)이라 함은 지분이 변동하는 사업연도에 미사용 이월결손금이나 결손금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구손실법인이라 함은 지분변동전에 손실 법인이었던 법인을 말하며 신손실법인이라 함은 지분변동후에 손실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구손실법인과 신손실법인은 동일한 법인일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일 수도 있다⁴⁸²⁾.

2) 지분변동전 손실과 지분변동후 사업연도

지분변동후 사업연도(post-change year)라 함은 지분변동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며 지분변동전 손실(pre-change loss)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⁴⁸³⁾.

- ① 지분이 변동한 사업연도로 이월된 구손실법인의 이월결손금
- ② 지분이 변동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손실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지분변동일 이전의 기간에 배분되는 금액

480) IRC §382(a).

481) IRC §382(b).

482) IRC §382(k)(1)~(3).

483) IRC §382(d).

3) 구손실법인의 시가

구손실법인의 시가라 함은 지분변동 직전의 구손실법인의 주식(우선주 포함)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말한다. 이 경우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주식상환 등 법인축소(corporate contraction)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또한 구손실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만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다⁴⁸⁴).

4) 장기면세이자율

장기면세이자율(long-term tax exempt rate)은 지분변동일이 속하는 달에 종료하는 3월의 기간에 적용되는 수정연방장기이자율(adjusted federal long-term rate)의 최고치로 한다. 이 경우 수정연방장기이자율이라 함은 상환기간이 3년 미만 남은 미국정부의 채권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감안하여 재무성장관이 정한 이자율⁴⁸⁵로 하되 장기과세채권과 장기면세채권간의 이자율 차이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⁴⁸⁶).

5) 지분변동

지분변동(ownership change)이라 함은 5% 주주⁴⁸⁷를 포함한 주주변동 또는 자본구조의 변동이 발생한 직후에 1인 이상의 5%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는 손실법인의 지분율이 검증기간(testing

484) IRC §382(e).

485) IRC §1274(d).

486) IRC §382(f).

487) 검증기간중 어느 때라도 당해 법인의 총주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IRC §382(k)(7)).

period) 중의 최저지분율에 비하여 50%를 초과하는 지분율이 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⁴⁸⁸⁾.

가) 검증기간

검증기간은 5% 주주를 포함한 주주변동 또는 자본구조의 변동이 발생한 날에 종료하는 3년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⁴⁸⁹⁾.

① 당초의 지분변동 이후 다른 지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지분변동에 대한 검증기간은 당초의 지분변동일 이전에 시작할 수 없다.

② 지분변동후로 이월되는 결손 또는 세액공제가 전부 지분변동 전 3년의 기간이 시작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검증기간은 그 최초 발생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시작할 수 없다.

나) 5% 미만을 소유한 주주의 1인 간주

지분변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5% 주주가 아닌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1인의 5%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는 것으로 본다⁴⁹⁰⁾.

다. 한도미달액의 처리

1) 이월

지분변동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82조 한도가 지분변동전의 손실과 상계되는 신손실법인의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제382조 한도는 당해 초과액만큼 증가한다⁴⁹¹⁾.

488) IRC §382(g).

489) IRC §382(i).

490) IRC §382(g)(4).

2) 사업폐지시 이월배제

신손실법인이 지분변동후 2년간의 기간내에 구손실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2조 한도는 0으로 한다. 다만, 제382조 한도는 다음 항목의 합계액을 최저한으로 한다⁴⁹²⁾.

①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된 내포이익 및 IRC §338에서의 선택⁴⁹³⁾에 따라 인식되는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제382조 한도액

② ‘①’에서의 전 사업연도분 한도증가액으로서 미사용으로 이월된 금액

라. 지분변동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의 처리

1) 지분변동전 과세소득

지분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중 지분변동전의 기간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382조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은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한다⁴⁹⁴⁾.

2) 지분변동후의 기간에 대한 한도

지분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분변동후의 기간에 대

491) IRC §382(b)(2).

492) IRC §382(c).

493)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취득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법인의 기초가액을 현재 취득한 주식의 기초가액(취득가액)으로 증액하고 이익을 인식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인이 모든 자산을 시가로 매각하였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494) IRC §382(b)(3)(A).

한 제382조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한도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⁴⁹⁵⁾.

마. 내포손익에 관한 특례

1) 내포손익과 제382조 한도

가) 미실현 내포이익

구손실법인이 순미실현 내포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내포이익을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제382조 한도는 그 인식하는 금액만큼 증가한다. 다만, 그 한도증가액은 순미실현 내포이익에서 전 사업연도에 이미 인식한 내포이익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⁴⁹⁶⁾.

나) 미실현 내포손실

구손실법인이 순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내포손실을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손실을 지분변동전 손실로 보아 제382조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되는 내포손실은 순미실현 내포손실에서 전 사업연도에 이미 인식한 내포손실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⁴⁹⁷⁾.

다) IRC §338에 의한 이익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 있는 IRC §338에서의 선택을 하였고 순미실현 내포이익이 일정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0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제382조 한도는 당해 선택으로 인하여 인식되는

495) IRC §382(b)(3)(B).

496) IRC §382(h)(1)(A).

497) IRC §382(h)(1)(B).

내포이익에서 순미실현 내포이익(0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⁴⁹⁸).

2) 인식된 내포손익

가) 인식된 내포이익

인식된 내포이익이라 함은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인식기간(recognition period)⁴⁹⁹ 중에 인식된 이익으로서 당해 자산이 지분변동일 직전에 구손실법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었어야 하며 인식되는 이익은 지분변동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수정기초가액을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 금액으로 한다⁵⁰⁰).

나) 인식된 내포손실

인식된 내포손실이라 함은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인식기간중에 인식된 손실⁵⁰¹을 말한다.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⁵⁰²).

- ① 지분변동일 직전에 구손실법인이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실
- ② 지분변동일 직전에 구손실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실의 금액이 지분변동일 현재의 내포손실⁵⁰³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98) IRC §382(h)(1)(C).

499) 지분변동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500) IRC §382(h)(2)(A).

50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502) IRC §382(h)(2)(B).

503) 지분변동일 현재 당해 자산의 수정기초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말한다.

3) 미실현 내포손익

가) 의의

미실현 내포손익이라 함은 지분변동 직전에 구손실법인의 자산의 시가의 합계와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의 합계의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주식상환 등 법인축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다⁵⁰⁴⁾.

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0으로 간주

‘가)’에서 산정한 구손실법인의 미실현 내포손익이 지분변동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총액의 15%와 \$10,000,000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미실현 내포손익은 0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금과 현금등가물 및 시가가 수정기초가액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⁵⁰⁵⁾.

4) 인식된 내포손실 중 미공제분의 이월

인식된 내포손실로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결손금의 이월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그러나 지분변동전 손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가 제한된다⁵⁰⁶⁾.

504) IRC §382(h)(3)(A).

505) IRC §382(h)(3)(B).

506) IRC §382(h)(4).

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

가. 손실집단

1) 의의

손실집단(loss group)이라 함은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연결납세 집단을 말한다⁵⁰⁷⁾.

- ① SRLY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집단
- ②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검증일(testing date)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집단
- ③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검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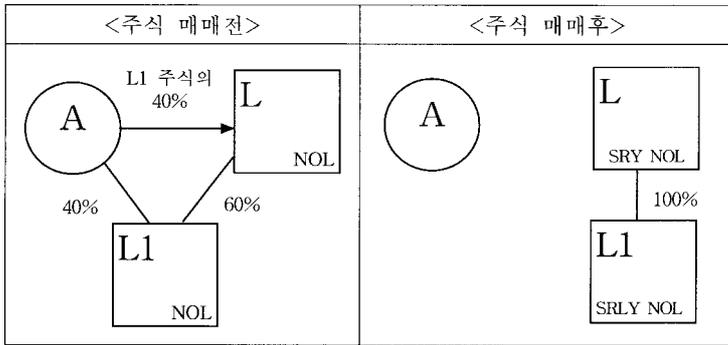
2) 사례

가) 사실관계

L과 L1은 개별납세신고를 하고 있으며 제1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L1의 총 주식 100주 중 40주는 A씨가 소유하고 있고 60주는 L이 소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말에 L이 L1 주식 40주를 A씨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제2차 연도에 L과 L1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07) Reg. §1.1502-91(c).

[그림 VII-1] 손실집단의 사례



나) 분석

L과 L1은 제2차 연도초에 손실집단이 된다. 왜냐하면 L 연결납세집단은 공통의 모회사인 L의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L의 결손금은 SRLY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손실하위집단

1) 의의

관계회사집단(‘종전집단’이라고 한다)에 속하던 둘 이상의 법인들이 다른 연결납세집단(‘현재집단’이라고 한다)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그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하위집단을 구성하게 되며 당해 하위집단이 미사용 결손금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하위집단(loss subgroup)을 구성한다.

가) 결손금을 가진 손실하위집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실하위집단을 말한다⁵⁰⁸).

①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전집단에서 서로 관계 회사에 해당되었을 것. 이 경우 종전집단이 연결납세집단일 필요는 없다.

②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 (loss subgroup parent)⁵⁰⁹⁾를 통하여 서로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할 것

③ 최소한 하나의 구성법인이 종전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하지 아니한 결손금을 현재집단의 연결납세사업연도로 이월하였을 것

나)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진 손실하위집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실하위집단을 말한다⁵¹⁰⁾.

①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전집단에서 5년간 계속하여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되었을 것.

②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를 통하여 서로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할 것

③ 미실현내포손실을 가지고 있을 것

2) 손실하위법인의 간주모회사

종전집단에서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하였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시에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는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현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법인들은 손실하위집단의 모

508) Reg. §1.1502-91(d)(1).

509)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라 함은 당해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하여 공통의 모회사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게 갖는 것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는 법인을 말한다(Reg. §1.1502-91(d)).

510) Reg. §1.1502-91(d)(2).

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⁵¹¹⁾.

3) 조세회피방지규정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은 그들 중 어느 한 법인이 IRC §382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한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취득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대신 신손실구성법인에 관한 규정(Reg. §1.1502-94)을 적용한다. 또한 IRC §382의 한도를 회피하거나 증가시킬 목적으로 특정 구성법인을 손실하위집단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법인은 손실하위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⁵¹²⁾.

4) 사례

가) 하위집단의 취득사례⁵¹³⁾

(1)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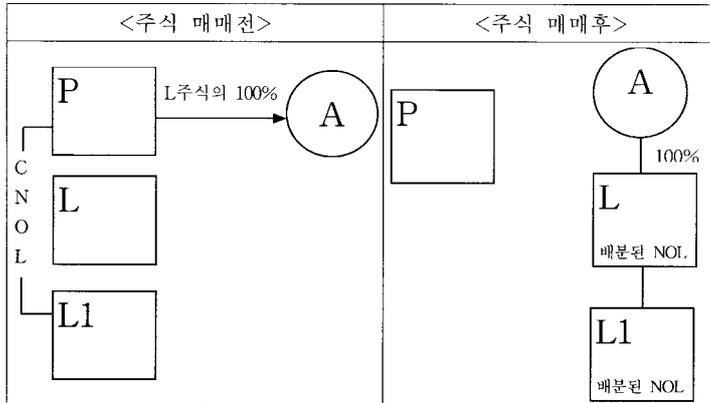
P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L은 L1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중 P는 L의 모든 주식을 A씨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에 L과 L1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제1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의 일부는 L과 L1에게 배분되었고 배분된 금액은 제2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1) Reg. §1.1502-91(d)(4).

512) Reg. §1.1502-91(d)(5).

513) Reg. §1.1502-91(d)(7) Ex.1.

[그림 VII-2] 손실하위집단의 사례



(2) 분석

L과 L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하며 L은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이다.

- ① 종전집단인 P 연결납세집단에서 L과 L1은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되었다.
- ② 현재집단인 L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인 L을 통하여 서로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였다.
- ③ 최소한 하나의 구성법인(L 또는 L1)이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하지 아니한 결손금을 L 연결납세집단의 연결납세사업연도로 이월하였다.

나) 하위집단과 개별 법인을 동시에 취득하는 사례⁵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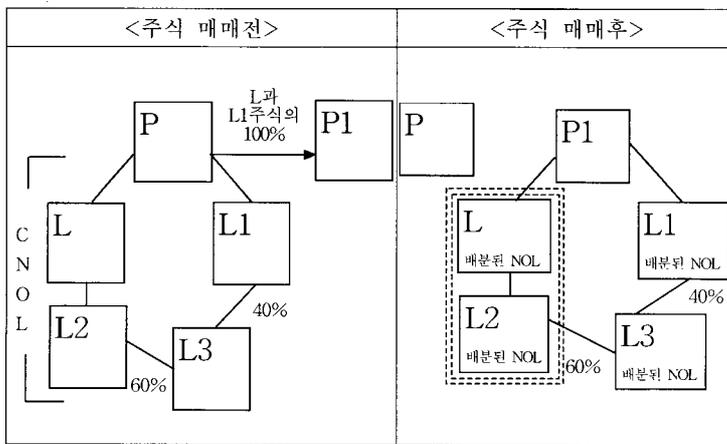
(1) 사실관계

P는 L과 L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L은 L2의 모든 주

514) Reg. §1.1502-91(d)(7) Ex.2.

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L1과 L2는 L3의 주식을 각각 40%와 60%씩 소유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연결결손금이 발생하여 제2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제2차 연도 5월 P는 L과 L1의 모든 주식을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1에게 매각하였다.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은 L, L1, L2, L3에게 배분되고 P1 연결납세집단이 L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최초 연결납세 사업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3] 손실하위집단과 개별법인의 동시취득사례



(2) 분석

L과 L2는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한다. 그러나 L1 및 L3는 P1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 종전집단의 구성법인과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를 통하여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하위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미실현 내포손익과 인식되는 내포손익

1) 미실현 내포손익

연결납세집단(또는 손실하위집단)이 IRC §382의 미실현 내포손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계산한 미실현 내포손익을 합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미실현 내포손실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0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성법인별로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⁵¹⁵⁾.

2) 인식되는 내포손익

특정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인식하는 손익은 미실현내포손익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식된 손익으로 간주된다⁵¹⁶⁾.

3.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가. 지분변동의 결정

1) 모회사변동법(parent change method)

손실집단의 공통의 모회사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에게 IRC §382에 의한 지분변동이 있으면 당해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게도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한다⁵¹⁷⁾.

515) Reg. §1.1502-91(g)(1).

516) Reg. §1.1502-91(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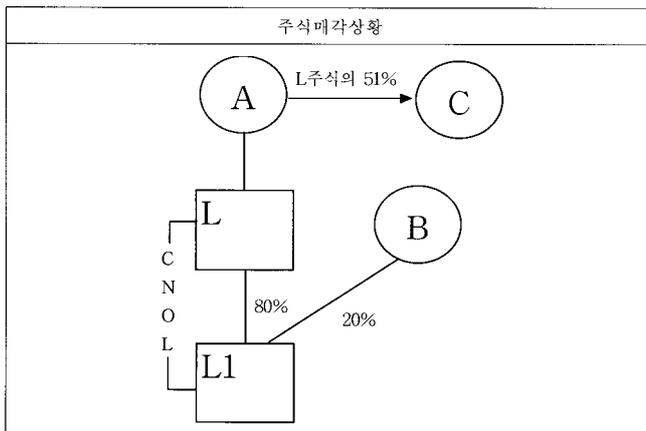
2) 사례

가)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사례⁵¹⁸⁾

(1) 사실관계

A씨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L은 L1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B씨는 L1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에 L 연결납세집단은 L1의 영업에서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L 주식의 시가는 \$1,000이다. L1 주식의 시가총액은 \$600이며 B씨가 소유하는 L1 주식의 시가는 \$120이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손실집단에 해당한다. 제2차 연도 8월, A씨는 L 주식의 51%를 C씨에게 매각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4]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사례



517) Reg. §1.1502-92(b)(1).

518) Reg. §1.1502-92(b)(2) Ex.1.

(2)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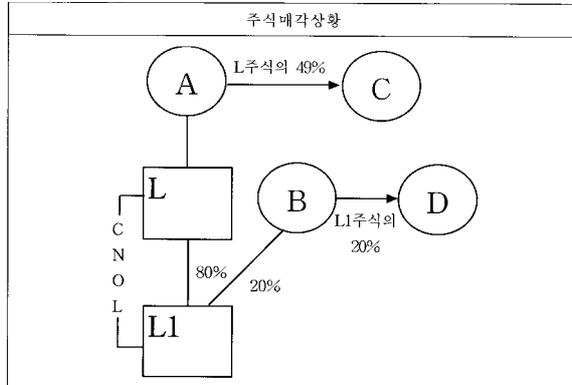
L 주식의 C씨에 대한 매각은 L과 L 손실집단의 지분변동에 해당한다. L 손실집단의 지분변동전 연결특성(L1의 영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액)과 상계되는 지분변동후 사업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L 손실집단에 대한 제382조 연결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519)

(1) 사실관계

‘가’에서 제2차 연도 8월에 A씨가 L 주식의 49%만 C씨에게 매각하고 제3차 연도 12월에 B씨가 L1 주식의 20%를 D씨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C씨에 대한 A씨의 L 주식의 매각은 C씨의 지분율이 50% 이하 증가하였으므로 L 또는 L 손실집단의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5]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519) Reg. §1.1502-92(b)(2) Ex.2.

(2) 분석

B씨에 의한 L1 주식의 처분은 L 손실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L 손실집단은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C씨와 D씨가 동일한 계획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보충적 지분변동법(supplemental ownership change method)⁵²⁰⁾에 따라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손실하위집단의 사례⁵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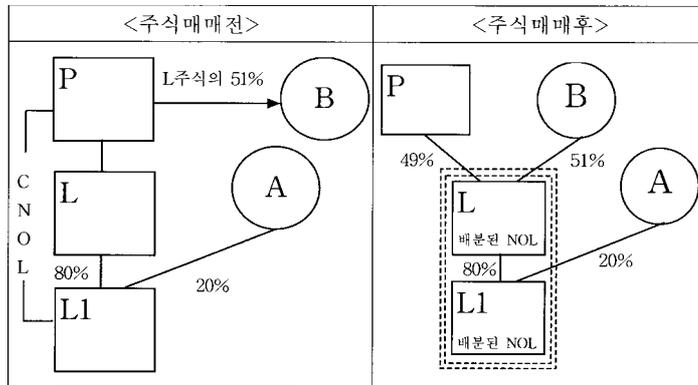
(1) 사실관계

P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L은 L1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A씨는 L1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9월, P는 L 주식의 51%를 B씨에게 매각하였고 L1은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을 배분받았다. L과 L1은 B에게 매각된 후 종료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0) Reg. §1.1502-92(c).

521) Reg. §1.1502-92(b)(2) Ex.3.

[그림 VII-6]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사례



(2) 분석

L과 L1은 L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때인 제2차 연도 9월에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한다. P가 L 주식의 51%를 매각함에 따라 L에게는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L 손실하위집단에게도 연결결손금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라)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동시 지분변동 사례⁵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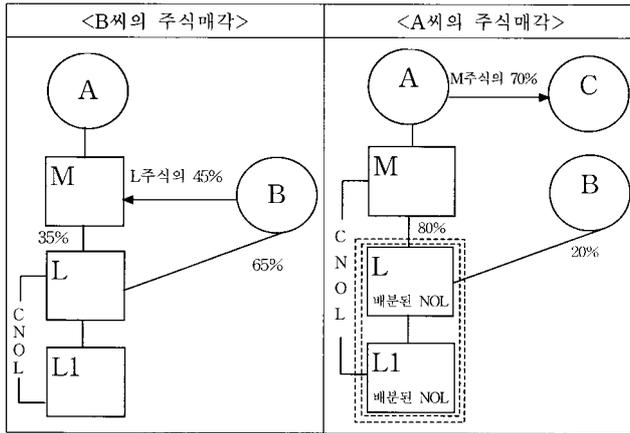
(1) 사실관계

A씨는 M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M은 L 주식의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B씨는 L 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고 L은 L1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5월, B씨는 L 주식의 45%를 M에게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그후 M, L, L1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으며 L과 L1은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을 배

522) Reg. §1.1502-92(b)(2) Ex.4.

분받아 M 연결납세집단의 제2차 및 제3차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였다. M 연결납세집단은 제2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3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3차 연도 6월, A씨는 M 주식의 70%를 C씨에게 매각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7]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동시 지분변동 사례



(2) 분석

L과 L1은 M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때인 제2차 연도 5월에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한다. L 주식을 M에게 매각함에 따른 지분변동 검증일인 제2차 연도 5월에 L에 대한 A씨의 지분율은 45%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L과 L 손실하위집단은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A씨가 M 주식을 C씨에게 매각함에 따른 지분변동 검증일인 제3차 연도 6월에 L에 대한 C씨의 지분율은 56%⁵²³⁾ 증가하므로 L의

523) M에 대한 C씨의 지분율(70%) × L에 대한 M의 지분율(80%) = 56%

지분변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L 손실하위집단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한편 A씨가 M 주식을 C씨에게 매각함에 따른 지분변동 검증일 인 제3차 연도 6월에 제2차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M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매각은 M에 대한 C의 지분율을 70% 증가시키므로 M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M 연결납세집단도 제2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있게 된다.

4. 제382조 연결한도 및 하위집단한도

가. 원칙

지분변동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제382조 연결한도(또는 하위집단 연결한도)는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시가에 장기면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⁵²⁴).

나.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시가

1) 구성법인간 보유주식 제외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시가는 지분변동 직전에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주식을 제외한 각 구성법인의 주식시가의 합계를 말한다⁵²⁵).

524) Reg. §1.1502-93(a)(1).

525) Reg. §1.1502-93(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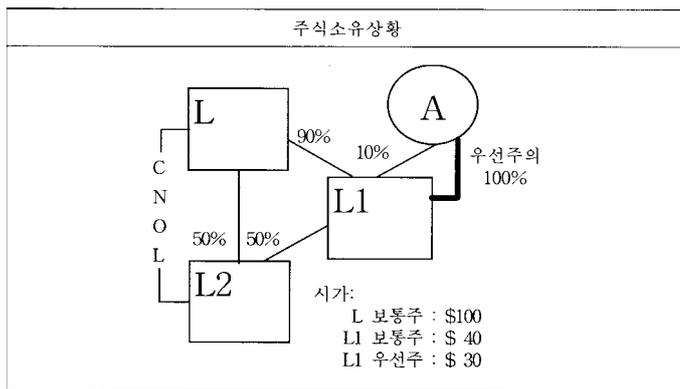
2) 사례

가) 직접소유 사례⁵²⁶⁾

(1) 사실관계

L, L1, L2는 손실집단을 구성한다. L의 주식의 시가는 \$100이며 L1은 보통주 외에 우선주를 발행하였다. L은 L1의 보통주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는 나머지 10%의 L1 보통주와 우선주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L1 보통주의 시가는 \$40이고 L1 우선주의 시가는 \$30이다. L2의 주식은 L에 의하여 50%, L1에 의하여 50% 소유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8] 직접소유시 손실집단의 주식시가 산정 사례



(2) 분석

제382조 연결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L 연결납세집단의 시가에

526) Reg. §1.1502-93(b)(3) Ex.1.

는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구성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제외한다. 따라서 손실집단 주식의 시가는 다음 항목의 합계인 \$13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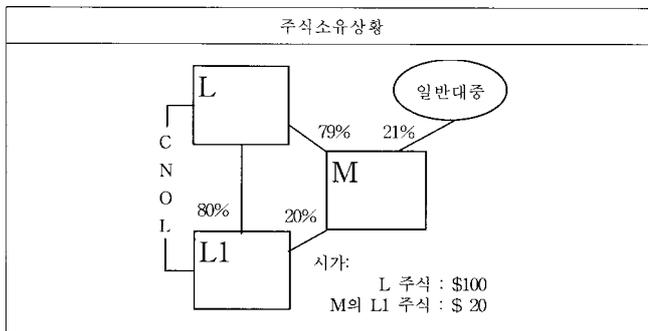
- ① L의 보통주: \$100
- ② A씨에 의하여 소유되는 L1 보통주(10%) : \$ 4
- ③ A씨에 의하여 소유되는 L1 우선주(100%): \$30

나) 간접소유 사례⁵²⁷⁾

(1) 사실관계

L과 L1은 연결납세집단을 구성하며 L 주식의 시가는 \$100이다. L1의 주식은 L이 80주(시가 \$80), M이 20주(시가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또한 L은 M 주식의 79%를 소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9] 간접소유시 손실집단의 주식시가 산정 사례



527) Reg. §1.1502-93(b)(3) Ex.2.

(2) 분석

L이 비구성법인인 M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함으로써 인하여 L은 M이 소유하는 L1 주식의 15.8주⁵²⁸⁾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L 손실집단의 시가는 다음 항목의 합계인 \$104.20이다.

- ① L의 주식: \$100
- ② L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L1 주식:
21% x \$20 = \$4.20

5. 연결납세집단에 신규가입하는 손실법인과 제382조

가. 신손실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의 적용

1) 제382조 한도의 개별실체기준 적용

연결납세집단에 신규 가입하는 구성법인이 SRLY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닌 경우 당해 법인을 신손실구성법인(new loss member)이라고 한다. 신손실구성법인의 지분변동 전 개별특성(이월결손금과 미실현내포손실)과 상계될 연결과세소득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82조 한도는 신손실구성법인에 대하여 개별실체기준으로 적용한다⁵²⁹⁾.

528) $79\% \times 20$ 주

529) Reg. §1.1502-94(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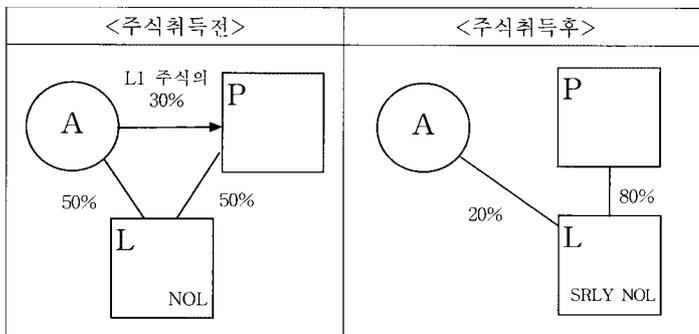
2) 사례

가) 기본사례⁵³⁰⁾

(1) 사실관계

A씨와 P는 L 주식의 50%씩을 소유하고 있다. 제6차 연도 12월 19일, P는 L 주식의 30%를 A씨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L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6차 연도 및 제7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0] 신손실 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 한도의 적용 사례



(2) 분석

L은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손실구성법인이며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은 아니다. 또한 L은 지분변동검증일인 제6차 연도 12월 19일에 손실법인이며 검증기간은 제3차 연도 12월 20일에 시작한다.

따라서 P가 L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1차 및 제2차 연도로부터

530) Reg. §1.1502-94(b)(4) E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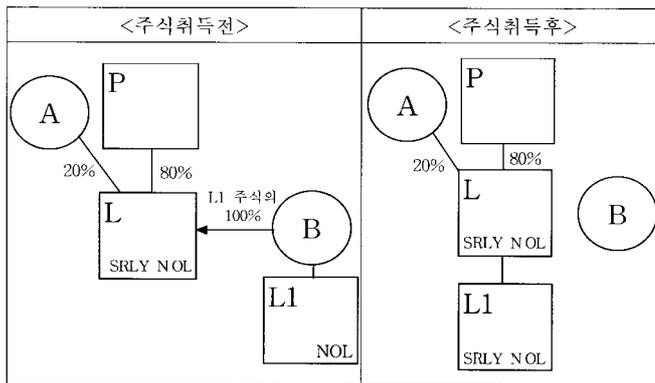
이월된 결손금과 관련하여 L의 지분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제 382조 한도에 의한 규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SRLY 제한은 적용된다.

나) 다수의 신손실구성법인이 있는 사례⁵³¹⁾

(1) 사실관계

‘가’의 사실관계에서 제6차 연도 12월 31일에 L이 B씨로부터 L1의 모든 주식을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L1은 제3차 연도에 발생한 \$40의 결손금을 제7차 연도로 이월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1] 다수의 신손실 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 한도 적용 사례



531) Reg. §1.1502-94(b)(4) Ex.2.

(2) 분석

L1은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한 제3차 연도로 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손실구성법인에 해당한다. L이 L1의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6차 연도 12월 31일에 L1의 지분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직전에 L1 주식의 시가를 기초로 한 제382조 한도는 제3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L1의 결손과 상계될 지분변동후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 적용된다.

L1이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때의 지분변동은 결손의 '개별추적종료'⁵³²⁾가 적용되는 지분변동이다. 따라서 제7차 연도 1월 1일부터 P 연결납세집단은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과 관련하여 L1 주식의 주주변동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L1의 제3차 연도 결손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P 연결납세집단은 손실집단에 해당한다.

다) 신손실구성법인의 지분변동 사례⁵³³⁾

(1) 사실관계

'나'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나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C씨가 P의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

(2) 분석

L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의 결손이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신손실구성법인이다. L에 대한 지분변동 검증기간은 제4차 연도 8월 1일에 시작한다. C씨가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1차 및 제2차 연

532) Reg. §1.1502-96(a).

533) Reg. §1.1502-94(b)(4) Ex.3.

도의 결손과 관련하여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L의 지분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직전에 L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한도가 L의 제1차 및 제2차 연도 결손과 상계되는 지분변동후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 적용된다.

P 연결납세집단은 L1의 제3차 연도 결손을 사용할 수 있고 당해 결손은 제6차 연도 12월 31일, L1의 지분변동후부터 더 이상 신손실구성법인의 결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손실집단에 해당한다. C씨가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L1의 제3차 연도 결손과 관련하여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P와 P 연결납세집단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직전 P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연결한도가 L1의 제3차 연도 결손과 상계될 지분변동후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 적용된다.

나. 명세서의 제출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신손실구성법인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 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는 주주변동, 지분구조의 변동 및 기타 거래에 대하여 명세서(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⁵³⁴).

534) Reg. §1.1502-94(d).

6.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가. 제382조 한도의 개별적용

1) 원칙

법인이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한 후에는 제 382조 한도를 개별실체기준으로 당해 법인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고려한다⁵³⁵).

- ① 연결결손금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당해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법인의 결손으로 본다.
- ② 지분변동 검증기간은 당해 법인이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기간을 포함한다.
- ③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날은 당해 법인의 지분변동 검증일로 본다.

2) 종전의 지분변동의 효과

당해 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기 전에 손실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⁵³⁶).

- ① 제382조 연결한도가 적용되는 지분변동전 연결특성(예: 이월결손금)은 종전의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후 계속하여 종전의 구성법인과 관련한 지분변동전 손실로 간주된다. 또한 미실현내포손실이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배분되었다면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인식되는 내포손실은 당해 구성법인의 지분변동전 손실이다.

535) Reg. §1.1502-95(b)(1).

536) Reg. §1.1502-95(b)(2).

② 지분변동전 조세특성과 관련한 제382조 한도는 공통의 모회사가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제382조 연결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이다. 인식된 내포손실을 제외한 지분변동전 조세특성에 적용되는 한도는 공통의 모회사가 손실집단의 미실현 내포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배분하고 종전의 구성법인이 인식기간중에 내포이익을 인식한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

③ 지분변동전 특성과 관련하여 후속적인 지분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기간은 손실집단의 최근의 지분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손실집단에서 이탈한 날 이후에 발생한 종전의 구성법인의 지분변동은 손실과 관련하여 추가적 한도를 발생시키지만 종전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 된다.

3) 손실하위집단에 대한 적용

둘 이상의 종전의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직후 동일한 손실하위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382조 한도는 손실하위집단에 적용한다. 따라서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배분되는 조세특성은 구성법인에게 개별적으로 배분되지 아니하고 손실하위집단에 배분된다⁵³⁷⁾.

537) Reg. §1.1502-95(b)(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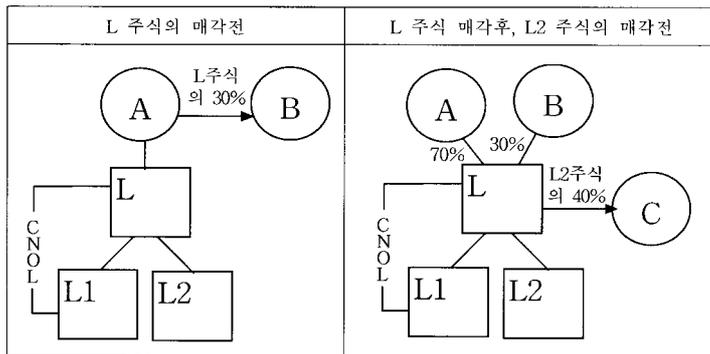
4) 사례

가) 연결이탈법인의 지분변동 사례⁵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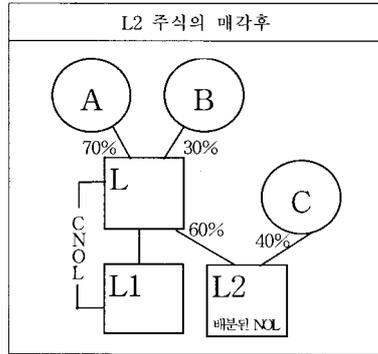
(1) 사실관계

A씨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L은 L1과 L2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연결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제3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제2차 연도 1월 12일, A씨는 L 주식의 30%를 B씨에게 매각하였다. 제3차 연도 2월 7일, L은 L2 주식의 40%를 C씨에게 매각하고 L2는 연결에서 이탈하였다. 제1차 연도 연결결손금의 일부는 L2에게 배분되었고 이는 제3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L2의 최초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2] 연결이탈법인의 지분변동 사례



538) Reg. §1.1502-95(b)(4) Ex.1.



(2) 분석

L2는 제3차 연도 2월 7일에 손실법인이며 동 일자는 지분변동 검증일이다. L2에 대한 지분변동 검증기간은 L2에게 배분된 연결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인 제1차 연도 1월 1일에 시작한다. 따라서 L2가 제3차 연도 2월 7일에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B씨에 의한 L 주식 30%의 취득과 C씨에 의한 L2 주식 40%의 취득은 주주변동을 초래한다. 즉 B씨와 C씨가 지분변동 검증기간중 L2에 대한 지분율을 각각 18% 및 40% 증가시켰으므로 L2는 지분변동이 있는 것이 된다.

나) 손실집단의 종전 지분변동의 효과 사례⁵³⁹⁾

(1) 제1차 지분변동

L은 L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L1은 L2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L 손실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하고 제2차 연도 및

539) Reg. §1.1502-95(b)(4) Ex.2.

제3차 연도로 이월되는 연결결손금과 관련하여 제2차 연도에 지분변동이 있었다. L 주식의 시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연결한도는 \$100이다. 제2차 연도 12월 31일, L1은 L2 주식의 25%를 B씨에게 매각하였다. L2는 제1차 연도 연결결손금의 일부를 배분받아 제2차 연도 12월 31일 후에 종료하는 최초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L2의 제382조 개별한도는 L이 제382조 연결한도를 L2에게 배분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0이다. L이 L2에 대한 제382조 연결한도 중 \$50을 L2에게 배분하였다면 제382조 연결한도의 잔존액 \$50은 L과 L1으로 구성된 손실집단에 남게 된다.

(2) 제2차 지분변동

제3차 연도 12월 31일, L1은 L2의 잔존 주식 75%를 C씨에게 매각함에 따라 L2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L2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지분변동일에 산정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30이다.

이 경우 L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배분된 연결결손금을 포함하여 지분변동전 손실에 대한 제3차 연도 12월 31일 후에 종료하는 지분변동후 사업연도의 제382조 한도는 \$30이다.

나. 제382조 연결한도의 배분

1) 원칙

가) 배분의 선택

공통의 모회사는 종전의 구성법인(손실하위집단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제382조 연결한도 및 손실집단의 미실현 내포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2조 연결한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별로 다르게 배분

할 수 있다⁵⁴⁰).

① 시가요소(the value element): 구성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장
기면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한도

② 수정요소(the adjustment element): 전 사업연도의 미사용 한
도의 이월 및 인식된 내포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한 한도

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 연결한도 및 손실집단의 미실현내포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선택권은 공통의 모회사에게만 있고 손실하위집
단의 모회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⁵⁴¹).

2) 손실집단해체시 배분간주

손실집단이 해체⁵⁴²)되었으나 공통의 모회사가 종전의 구성법인
에게 제382조 연결한도와 미실현내포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경
우 배분되지 아니한 금액은 공통의 모회사가 속한 손실하위집단에
게 배분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당해 손실집단이 해체된 직후 공통
의 모회사가 속한 손실하위집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공통의 모
회사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본다⁵⁴³).

540) Reg. §1.1502-95(c)(1) & (2).

541) Reg. §1.1502-95(a)(2).

542) 손실집단은 종전의 손실집단의 각 구성법인에 대한 최초 개별납세 신
고연도의 개시일에 해체된다.

543) Reg. §1.1502-95(c)(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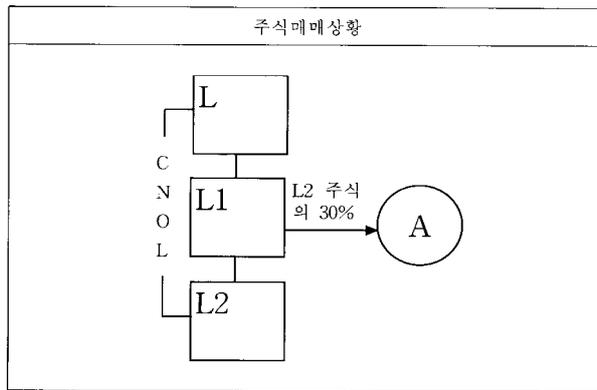
3) 사례

가) 배분사례⁵⁴⁴⁾

(1) 사실관계

L은 L1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L1은 L2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200의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1차 연도말에 당해 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다.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당해 집단의 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연결한도(시가요소만 있다고 가정함)는 \$10이다. 제2차 연도 8월 29일, L1은 L2 주식의 30%를 A씨에게 매각하였다. L2는 \$200의 연결결손금 중 \$90을 배분받았다. 공통의 모회사인 L은 제382조 연결한도 중 \$6을 L2에게 배분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3] 제382조 연결한도의 배분사례



544) Reg. §1.1502-95(c)(7) Ex.1.

(2) 분석

제2차 연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L2에게 배분된 연결결손금 \$90과 관련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이다. 또한 제2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지분변동전 연결결손금 중 잔존액 \$110과 관련한 L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는 \$4⁵⁴⁵⁾이다. 제2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L 연결납세집단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82조 연결한도는 L2가 L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기간(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41일)에 대하여 \$4⁵⁴⁶⁾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L 연결납세집단의 제2차 연도의 제382조 연결한도는 약 \$8이 되며 L2의 제2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제382조 한도는 약 \$2이 된다.

나) 배분하지 아니하는 사례⁵⁴⁷⁾

‘가)’의 사실관계에서 L이 L2에게 제382조 연결한도를 배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연도 12월 31일 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L2에게 배분된 연결결손금 \$90과 관련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0이다. 따라서 L2에게 배분된 \$90의 연결결손금은 제2차 연도 8월 29일 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L2의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없다. 제2차 연도 8월 29일 후에 종료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분변동전 연결결손금의 잔존액 \$110과 관련한 L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는 \$10이다.

545) \$10에서 L2에게 배분된 \$6을 차감한 잔액

546) $\$6 \times 241\text{일}/365\text{일} \approx \4

547) Reg.§1.1502-95(c)(7) Ex.2.

다.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1) 원칙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에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⁵⁴⁸⁾.

- ①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 ②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가 공통의 모회사라고 가정할 경우 당해 모회사의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첫째 날

2) 예외

위에서 '1)②'는 다음 중 1에 해당하고 현행 집단의 구성법인으로 계속 남은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⁵⁴⁹⁾.

- ① 공통의 모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당해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로 간주되는 경우⁵⁵⁰⁾
- ②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후 6월내에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이 있었다면 그 지분변동일이 경과한 경우
- ③ 손실하위집단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날로부터 5년의 연속적인 기간 중 손실하위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없었다면 당해 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548) Reg. §1.1502-95(d)(1).

549) Reg. §1.1502-95(d)(2).

550) Reg. §1.1502-91(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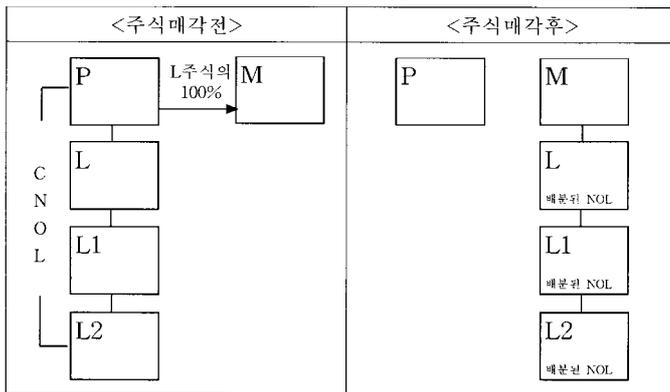
3) 사례

가) 기본사례⁵⁵¹⁾

(1) 사실관계

P는 L의 모든 주식을, L은 L1의 모든 주식을, L1은 L2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연결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12월 11일, P는 L의 모든 주식을 M에게 매각하였다.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은 L, L1, L2에게 배분되었고 M 집단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당해 주식의 매각은 제2차 연도 12월 11일에 L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을 초래하였으며 L 손실하위집단은 \$100의 제382조 하위집단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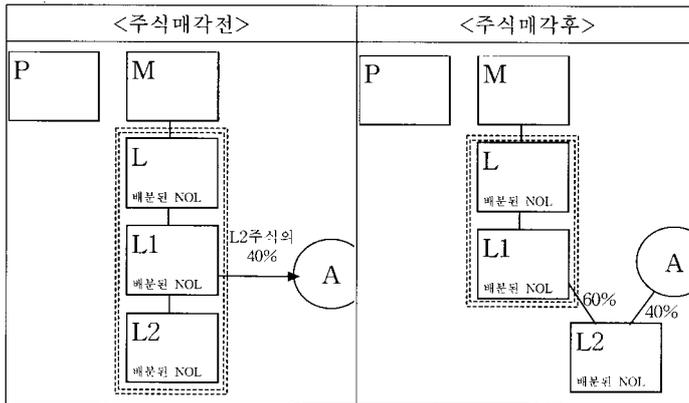
[그림 VII-14]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사례 1



551) Reg. §1.1502-95(d)(3) Ex.1.

또한 제3차 연도 5월 22일, L1은 L2 주식의 40%를 A씨에게 매각하였다. L2는 P 연결납세집단의 제1차 연도 결손금의 일부를 제3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5]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사례 2



(2) 분석

이 경우 L2는 제3차 연도 5월 22일에 L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P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 이월된 L2의 결손금은 제3차 연도 5월 22일 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L2의 지분변동전 손실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손과 관련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M이 L 손실하위집단의 제382조 하위집단한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L2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한 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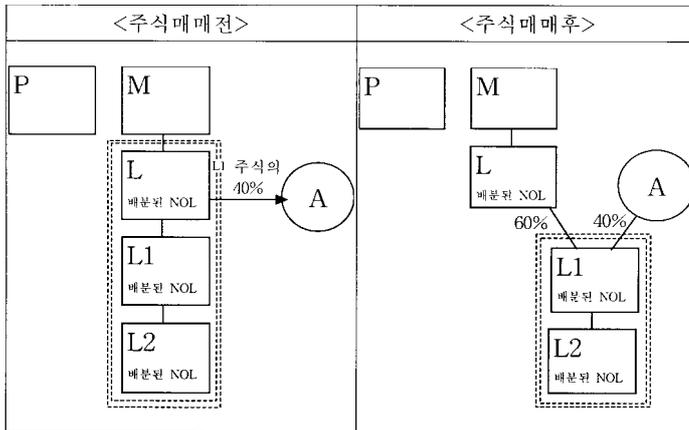
나) 신손실하위집단의 생성 사례⁵⁵²⁾

‘가)’의 사실관계에서 A씨가 L1으로부터 L2 주식을 취득하는 대

신 L로부터 L1 주식의 40%를 취득하였고 L1과 L2는 제1차 연도에 발생한 P 연결납세집단의 결손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제3차 연도 5월 22일후 종료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3차 연도 5월 22일에 L1과 L2는 L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P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 이월된 결손은 L1과 L2로 구성된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전 조세특성으로 본다. 이러한 결손과 관련한 제382조 하위집단한도는 M이 L 손실하위집단의 제382조 한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L1 손실하위집단에 배분하지 아니한다면 0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I-16] 신손실 하위집단의 생성사례



552) Reg. §1.1502-95(d)(3) Ex.2.

라. 미실현 내포손실의 배분

1) 원칙

법인이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해 집단의 미실현 내포손실은 당해 법인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집단에서 이탈하는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미실현 내포손실의 잔액에 다음의 '①'이 '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⁵⁵³⁾.

① 구성법인이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한 직후 당해 구성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내포손실의 금액

②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일 직후에 당해 집단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내포손실의 금액과 '①'의 금액의 합계

2) 사례⁵⁵⁴⁾

가) 사실관계

P는 L1과 L2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 9월 4일, A씨는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은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동일자에 P, L1, L2가 보유하는 자산(L1 및 L2의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개씩이며 각 자산의 수정기초가액과 시가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P 연결납세집단은 \$75의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다.

553) Reg. §1.1502-95(e)(1) & (2).

554) Reg. §1.1502-95(e)(7) Ex.1.

구성법인	자산	수정기초가액	시가
P	자산 1	\$ 40	\$ 15
P	자산 2	\$ 50	\$ 100
L1	자산 3	\$ 100	\$ 50
L1	자산 4	\$ 125	\$ 75
L2	자산 5	\$ 100	\$ 150
L2	자산 6	\$ 90	\$ 40

제3차 연도 3월 19일, P는 L2의 모든 주식을 M에게 매각하였다. 동일자에 자산 5는 가치가 증가하여 수정기초가액이 \$100, 시가는 \$250이 되었고 자산 6은 가치가 감소하여 수정기초가액이 \$90, 시가는 \$10이 되었다.

제3차 연도 4월 8일, P가 자산 1을 처분함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25의 인식된 내포손실이 발생하였다. 제4차 연도 11월 11일, L2는 자산 6을 그 당시의 시가인 \$10로 처분하고 \$8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제5차 연도 6월 3일, L1은 자산 4를 처분하고 \$5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나) 분석

제3차 연도말 직후에 P 손실집단의 미실현 내포손실의 잔액은 \$50(미실현내포손실 \$75에서 P에 의하여 인식된 내포손실 \$25을 차감한 금액)이다. 미실현 내포손실의 잔액 중 L2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약 \$17($\$50 \times \$50^{555} / \150^{556})이다.

555) 자산 6에 대한 내포손실.

556) 자산 3과 자산 4에 대한 내포손실인 \$100과 분자인 자산 6에 대한 내포손실인 \$50의 합계이다. 이 경우 자산 1에 대한 내포손실은 제3차 연도말 직후에 P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산 6의 처분에 대한 L2의 손실 \$80 중 \$17은 인식된 내포손실이다. 그러나 P가 P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를 L2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면 0의 제382조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자산 4의 처분에 대한 L1의 손실 \$50 중 \$33은 P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에서 L2에게 배분된 한도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IRC §382를 연결납세집단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IRC §383(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제한)이 연결납세집단에 적용된다⁵⁵⁷).

557) Reg. §1.1502-98.

VIII. 연결세액

1. 연결세액의 계산

연결납세집단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연결세액은 [그림 V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⁵⁵⁸⁾. 연결산출세액은 다음에 열거하는 세액을 합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 ①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⁵⁵⁹⁾
- ② 인적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의 연결미처분소득(consolidated undistributed income)에 과세되는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⁵⁶⁰⁾
- ③ ‘②’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지주회사인 구성법인의 개별미처분소득에 과세되는 인적지주회사세의 합계
- ④ ‘②’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유보소득(consolidated accumulated taxable income)에 과세되는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⁵⁶¹⁾
- ⑤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법인세 대신 과세되는 세액⁵⁶²⁾
- ⑥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세액⁵⁶³⁾

558) Reg. §1.1502-2.

559) IRC §11.

560) IRC §541.

561) IRC §531.

562) IRC §594(a).

⑦ 연결납세집단의 순자본이득에 대하여 위의 '①'~'⑥' 대신 과세되는 세액⁵⁶⁴⁾

[그림 VIII-1] 연결세액의 계산구조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 법인세율	
=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 기타 법인세(인적지주회사세 또는 유보이익세 등)	
= 연결산출세액	
- 연결사업세액공제	
-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결세액(Reg. §1.1502-2)	

2. 연결최저한세

가. 개요

최저한세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연결납세규칙의 시안(試案)⁵⁶⁵⁾이 발표는 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재무성은 당해 시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최저한세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⁶⁶⁾.

563) IRC §802(a) & 831(a).

564) IRC §1201.

565) Proposed Reg. §1.1502-55.

566) Regs. §§1.56-1(a)(3) & 1.56(g)-1(n), Crestol et al.(2002), pp. 7-7.

나. 개별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제도

개별 법인이 조세혜택 등(tax preference items and certain adjustments)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minimum tax)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 조세혜택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여야 할 최저한의 세액(tentative minimum tax; TMT)이 조세혜택을 적용한 후에 산정한 정규세액(regular tax; RT) 보다 큰 경우 당해 차액을 최저한세 추가납부세액(alternative minimum tax; AMT)이라고 한다. AMT의 산정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⁵⁶⁷⁾.

[그림 VIII-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begin{aligned}
 & \text{과세소득(taxable income)} \\
 & \pm \text{조세혜택(tax preferences) 및 수정(adjustments)}^{568)} \\
 \hline
 & = \text{최저한세 과세소득(AMT income; AMTI)} \\
 & - \text{최저한세공제(exemption)}^{569)} \\
 \hline
 \end{aligned}$$

567) IRC §§55, 56, 57.

568) 최저한세 과세소득 산정시 가감되는 수정사항 및 가산되는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 ① RT 산정시 가속상각을 적용한 경우 AMT 산정목적의 감가상각방법(예: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액
- ② 장기도급계약에 대하여 RT 산정시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한 경우 AMT 산정목적의 손익인식기준인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손익과의 차액
- ③ 최저한세 결손금공제(수정을 적용하지만 조세혜택을 무시하고 산정한 결손금을 기초로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하는 경우의 공제액; alternative tax net operating loss(ATNOL) deduction)와 RT 산정시의 결손금공제와의 차액. 이 경우 ATNOL 공제는 ATNOL 공제를 적용하기 전 AMTI의 90%를 한도로 한다.
- ④ 수정당기순이익(adjusted current earnings; ACE)과 ATNOL 공제전 AMTI의 차액의 75%. ACE가 더 큰 경우에는 가산하고 AMTI가 더 큰 경우에는 차감한다.

569) 최저한세 공제는 \$40,000로 하되, AMTI가 \$150,000을 초과하는 경

= 최저한세 과세표준(AMT base)	
× 최저한세율(20%)	
=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전 최저한세 산출세액	
-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 ⁵⁷⁰⁾	
= 최저한세액(TMT)	
-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규세액(RT)	
= 최저한세 추가납부세액(AMT)	

다. 연결최저한세 시안

1) 최저한세의 연결기준 적용

AMTI가 연결기준으로 산정되므로 TMT도 연결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종 결과인 AMT도 연결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P가 S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며 최저한세공제는 무시하기로 한다.

가) P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P의 수정전 AMTI는 \$700이고, ACE는 \$900이다. 따라서 ACE 수정은 \$150⁵⁷¹⁾이며 가산수정에 해당한다. P의 최저한세 결손금공제(alternative tax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ATNOL deduction)는 \$100이며 이로 인하여 P의 AMTI는 \$750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P의 TMT는 \$150이며 AMT는 \$48이다.

우에는 그 초과액의 25%를 \$40,000에서 차감한 잔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570)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TMT(외국납부세액공제전의 금액)의 90%를 한도로 한다.

571) $(\$900 - \$700) \times 75\% = \$150$

	RT	AMT	ACE
총소득	\$1,000	\$1,000	\$1,000
감가상각비	(500)	(300)	(100)
수정전 AMTI		\$ 700	
ACE			\$ 900
ACE 수정		150	
결손금공제	(200)		
최저한세 결손금공제		(100)	
과세소득	300		
AMTI		\$ 750	
TMT(20%)		\$ 150	
RT(34%)	\$ 102		
AMT		\$ 48	

나) S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S의 수정전 AMTI는 \$900이고, ACE는 \$800이다. 따라서 ACE 수정은 \$75⁵⁷²⁾이며 차감수정에 해당한다. S의 ATNOL 공제는 \$200이며 이로 인하여 S의 AMTI는 \$625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S의 TMT \$125은 RT \$306에 미달하므로 AMT는 산정되지 아니한다.

572) $(\$800 - \$900) \times 75\% = \Delta\75

	RT	AMT	ACE
총소득	\$1,000	\$1,000	\$1,000
감가상각비	0	(100)	(200)
수정전 AMTI		\$ 900	
ACE			\$ 800
ACE 수정		(75)	
결손금공제	(100)		
최저한세 결손금공제		(200)	
과세소득	900		
AMTI		\$ 625	
TMT(20%)		\$ 125	
RT(34%)	\$ 306		
AMT		\$ 0	

다) P와 S가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가’ 및 ‘나’의 자료를 기초로 P와 S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면 연결 AMT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RT	AMT	ACE
총소득	\$1,000	\$1,000	\$2,000
감가상각비	(500)	0	(500)
개별과세소득	\$ 500	\$1,000	\$1,500
연결결손금공제			(300)
연결과세소득			\$1,200
연결 RT(34%)			\$ 408
AMT			
총소득	\$1,000	\$1,000	\$2,000
감가상각비	(300)	(100)	(400)
수정전 연결 AMTI	700	900	1,600
감가상각비 수정	200	(100)	100
연결 ACE	\$ 900	\$ 800	\$1,700
연결 ACE 수정			75
연결 ATNOL 공제			(300)
연결 AMTI			\$1,375
연결 TMT(20%)			\$ 275
연결 AMT			\$ 0

2) 연결최저한세 납부액 및 최저한세 공제액의 배분

가) 배분의 필요성

연결 AMT는 당해 세액의 납부와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AMT는 미래에 발생할 RT의 선급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지급된 AMT는 그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 RT가 TMT를 초과하는 때 최저한세 공제액(minimum tax credit; MTC)으로서 당

해 연도의 RT에서 차감된다.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는 구성법인에게 연결 MTC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는 MTC의 사용 여부 및 사용 정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이다.

나) 배분방법

현행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 AMT와 연결 MTC의 배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성은 연결최저한세의 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연결납세집단이 적용하는 배분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인정되는 배분방법으로 보고 있다. 배분의 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VI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⁵⁷³⁾으로서 연결납세집단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⁵⁷⁴⁾. 그러나 연결최저한세의 시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일 방법(a single method)을 제시하고 있다⁵⁷⁵⁾ 즉 특정 구성법인에게 배분될 AMT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 AMT에서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를 차감하여 계산한 개별 수정AMT(separate adjusted AMT)로 한다. 만약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가 0이면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 수정AMT는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RT에서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TMT를 차감한 잔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MTC는 각 구성법인의 개별 수정AMT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연결최저한세 시안에서는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함에 있어서 연결 AMT와 연결 MTC를 각 구성법인에게 위에서 설명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각 구성법인의 E & P

573) IRC §152, Reg. §1.1502-33(d). 이는 RT의 세액배분방법으로서 각 구성법인의 E & P를 감소시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574) Crestol et al.(2002), p. 7-16.

575) Prop. Reg. §1.1502-55(h).

는 당해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연결 AMT만큼 감소하고 당해 연결 납세집단이 사용한 MTC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금액만큼 증가한다.

다) 사례⁵⁷⁶⁾

(1) 사실관계

P, S1, S2로 구성된 연결납세집단의 1993 사업연도 RT와 AMT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최저한세공제는 무시하기로 한다.

	P	S1	S2	연결
과세소득	\$1,200	\$(200)	\$3,000	\$4,000
조세혜택	1,800	100	2,000	3,900
AMTI	\$3,000	\$(100)	\$5,000	\$7,900
TMT(20%)				\$1,580
RT(34%)				1,360
AMT				\$ 220

(2) 개별 수정AMT

개별 수정AMT는 연결 AMT에서 각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그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⁵⁷⁶⁾ Prop. Reg. §1.1502-55(h)(6)(v) Ex.1.

	P	S1	S2
연결 AMT	\$ 220	\$ 220	\$ 220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			
과세소득	\$2,800	\$4,200	\$1,000
조세혜택	2,100	3,800	1,900
AMTI	\$4,900	\$8,000	\$2,900
TMT(20%)	\$ 980	\$1,600	\$ 580
RT(34%)	952	1,428	340
AMT	\$ 28	\$ 172	\$ 240
개별 수정 AMT	\$ 192	\$ 48	-

(3) AMT의 배분

연결 AMT는 개별 수정AMT에 비례하여 각 구성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이 경우 S2는 개별 수정AMT가 0 이므로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P에게 배분될 연결 AMT

$$= \$220 \times \$192 / (\$192 + \$48) = \$176$$

S1에게 배분될 연결 AMT

$$= \$220 \times \$48 / (\$192 + \$48) = \$44$$

3. 연결세액공제

가. 연결사업세액공제

1) 개요

가)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사업세액공제

사업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한도는 순법인세액(net income tax)⁵⁷⁷⁾이 (1) TMT와 (2) \$25,000을 초과하는 RT(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차감후의 금액)의 2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으로 한다⁵⁷⁸⁾.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미사용 공제액은 직전 1년으로 소급공제되거나 향후 20년간 이월공제된다⁵⁷⁹⁾. 또한 이월공제시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되지 아니한 미사용 공제액은 공제시한이 경과한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소득에서 공제된다⁵⁸⁰⁾. 현행 IRC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⁵⁸¹⁾
- ② 고용증대세액공제(work opportunity credit)⁵⁸²⁾
- ③ 알콜연료세액공제(alcohol fuel credit)⁵⁸³⁾
- ④ 연구세액공제(research credit)⁵⁸⁴⁾

577) RT + AMT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578) IRC §38.

579) IRC §39.

580) IRC §196.

581) IRC §46.

582) IRC §51. 사회보장수급자, 퇴역군인 등 특정 계층에 속한 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583) IRC §40.

- ⑤ 저소득층 주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⁵⁸⁵⁾
- ⑥ 원유증산세액공제(enhanced oil recovery credit)⁵⁸⁶⁾
- ⑦ 장애인접근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⁵⁸⁷⁾
- ⑧ 대체에너지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credit)⁵⁸⁸⁾
- ⑨ 발전지역고용세액공제(empowerment zone employment credit)⁵⁸⁹⁾
- ⑩ 인디언고용세액공제(Indian employment credit)⁵⁹⁰⁾
- ⑪ 사용자사회보장세액공제(employer social security credit)⁵⁹¹⁾
- ⑫ 임상실험비용세액공제(clinical testing expenses credit)⁵⁹²⁾
- ⑬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 credit)⁵⁹³⁾
- ⑭ 영세사업자 연금제도도입비용 세액공제(small employer pension plan startup cost credit)⁵⁹⁴⁾
- ⑮ 보육시설세액공제(employer provided child care credit)⁵⁹⁵⁾

나) 사업세액공제의 연결기준 적용

사업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칙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연결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⁹⁶⁾. 그러나 투자세액공제 이외의 사업관련

584) IRC §41.
 585) IRC §42.
 586) IRC §43.
 587) IRC §44.
 588) IRC §45.
 589) IRC §1396(a).
 590) IRC §45A(a).
 591) IRC §45B(b).
 592) IRC §45C(a).
 593) IRC §45D(a).
 594) IRC §45E.
 595) IRC §45F.
 596) Reg. §1.1502-3.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무성은 이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⁵⁹⁷⁾.

2) 연결투자세액공제액의 결정

가) 원칙

연결세액공제액은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대하여 모든 구성법인에게 적용되는 개별세액공제액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⁵⁹⁸⁾.

나) 개별세액공제액

각 구성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은 당해 구성법인의 적격투자액(qualified investment)의 7%이다. 이 경우 적격투자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은 그 이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감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적격투자자산이 내부거래에 의하여 매매된 경우 취득하는 구성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100이고 매각한 구성법인이 당해 거래로부터 \$20의 이익을 얻었다면 취득하는 구성법인의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은 \$80로 본다⁵⁹⁹⁾.

다) 연결한도

연결투자세액공제는 한도를 초과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그 한도는 연결세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즉 연결투자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⁶⁰⁰⁾.

597) Tech. Adv. Mem. 9723008.

598) Reg. §1.1502-3(a)(1).

599) Reg. §1.1502-3(a)(2).

600) Reg. §1.1502-3(a)(3).

- ① 연결세액이 \$25,000 이하일 경우 당해 연결세액의 전액
- ② 연결세액이 \$25,0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와 \$25,000의 합계액

3) 연결투자세액공제액의 소급 또는 이월

가) 미사용공제액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연결납세집단은 다른 사업연도에 한도초과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은 미사용 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로 소급되었거나 이월된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한도내에서 연결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소급 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는 다른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결투자세액공제와 각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하여 각 법인에게 배분된 미사용 연결공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SRLY에 발생한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미사용 공제액과 연결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또는 이월공제가 제한된다. 소급 또는 이월공제에 있어서 미사용 공제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미사용 공제액을 먼저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공제액은 안분하여 적용한다⁶⁰¹⁾.

나) 사례⁶⁰²⁾

(1) 사실관계

P는 1966년초에 설립되었고 동일자로 P는 100% 자회사인 S를 설립하였다. P와 S는 1966년과 1967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1966년 및 1967년에 P, S 및 연결납세집단의 연결투자세액공제 및

601) Reg. §1.1502-3(b)(1) & (2).

602) Reg. §1.1502-3(b)(3).

연결한도는 다음과 같다.

		공제액	연결공제액	연결한도
1966	P	\$60,000	\$90,000	\$100,000
	S	30,000		
1967	P	\$40,000	65,000	50,000
	S	25,000		

(2) 1966년의 공제

1966년에 발생한 P와 S의 공제액은 합산되므로 연결공제액은 \$90,000이 되며 연결한도 \$1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90,000의 잔액이 연결투자세액공제로서 1966년에 적용된다.

(3) 1967년의 공제

1967년의 연결한도는 \$50,000이므로 \$65,000의 연결공제액 중 \$50,000만 1967년에 적용된다. \$15,000의 미사용 연결공제액은 다른 사업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된다. 이 사례에서 미사용 연결공제액은 1966년으로 소급되거나 1968년 이후로 이월된다. 따라서 1967년의 미사용 연결공제액 \$15,000 중 \$10,000⁶⁰³⁾은 1966년으로 소급되어 적용되고 잔액 \$5,000은 1968년으로 이월된다.

603) 1966년의 한도미달액.

4)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투자세액공제의 適用 제한

가) 원칙

SRLY에 발생한 구성법인의 미사용 공제액으로서 연결세액공제액에 가산될 수 있는 금액의 누적액은 다음의 '①'에서 '②'를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⁶⁰⁴).

- ① 각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한도 중 당해 구성법인이 기여한 금액의 모든 연결납세 사업연도 누적액
- ② 모든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사용⁶⁰⁵된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공제액의 누적액

나) 연결한도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여액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한도가 연결 TMT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⁶⁰⁶ 연결한도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여액은 연결순법인세(consolidated net income tax)⁶⁰⁷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서 연결 TMT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그러나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한도가 연결 RT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⁶⁰⁸ 연결한도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여액은 연결순법인세에서 [연결순정규세액 중 당해 구성법인 귀속액에서 \$25,000 중 당해 구성법인 귀속액을 차감한 잔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세액 중 각 구성법인의 귀속액은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중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 중 하나 또는 100%를 기준으로

604) Reg. §1.1502-3(d)(1).

605) 당해 구성법인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606) IRC §38(c)(1)(A).

607) 연결 RT+연결 AMT-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608) IRC §38(c)(1)(B).

하는 비율법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25,000은 전액 또는 일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법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⁶⁰⁹⁾.

다) 적용제한의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연도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공제액의 적용제한에 있어서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당해 구성법인이 계속적으로 연결납세에 포함되었던 사업연도로 하되 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⁶¹⁰⁾.

- ① 이월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공제가 이월된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
- ② 소급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

라) 하위집단과 승계법인

결손금공제에 있어서 SRLY 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 및 승계법인 포함원칙은 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적용한다⁶¹¹⁾.

마) 다른 규정과 중복적용시 적용배제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공제액의 적용제한이 투자세액공제의 제한에 관한 IRC상의 다른 규정과 중복적용되는 경우(예: IRC §383)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⁶¹²⁾.

5) 연결납세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이월투자세액공제의 제한

연결납세 지분변동(consolidated return change of ownership;

609) Reg. §1.1502-3(d)(2)(i).

610) Reg. §1.1502-3(d)(2)(ii).

611) Reg. §1.1502-3(d)(2)(iii).

612) Reg. §1.1502-3(d)(2)(iv).

CRCO)⁶¹³⁾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투자세액공제액 중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 경우 그 한도는 당해 종전의 구성법인의 손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 재계산한 연결공제한도가 다음 항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⁶¹⁴⁾.

- ① 당해 사업연도에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의 합계
- ②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미사용 공제액으로서 다른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것

6)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조기처분 등

가) 조기처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⁶¹⁵⁾받은 자산이 조기처분(early dispositions)되는 경우 추정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⁶¹⁶⁾의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⁶¹⁷⁾.

나) 다른 구성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예외

613) 연결납세 지분변동(CRCO; consolidated return change of ownership)은 조세특성(tax attributes)이 이월되는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하는 지분변동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Reg. §1.1502-2(g)).

- ① 시가기준 지분율이 종전보다 50%를 초과하는 지분율만큼 더 증가할 것
- ② 지분의 증가가 주식취득 또는 감자로 인하여 발생할 것

614) Reg. §1.1502-3(e).

615)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경우와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16) 연결납세 사업연도와 개별납세 사업연도를 모두 포함한다.

617) Reg. §1.1502-3(f)(1).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다른 구성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기처분에 대한 세액추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⁶¹⁸⁾.

나.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요

외국 또는 미국의 점령지에서 구성법인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구성법인에게 발생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⁶¹⁹⁾.

2) 공제한도의 산정방법

가) 공통의 모회사의 공제한도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일괄한도(overall limitation)와 국가별한도(per-country limitation)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데 공통의 모회사가 선택하여 유효하게 적용하던 방법은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이를 적용한다. 또한 공통의 모회사가 아닌 구성법인이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유효하게 적용하던 한도산정방법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의 한도산정방법과 다를 경우 공통의 모회사의 한도산정방법이 일괄한도라면 일괄한도의 적용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공통의 모회사의 한도산정방법이 국가별한도라면 일괄한도의 선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⁶²⁰⁾.

618) Reg. §1.1502-3(f)(2).

619) Reg. §1.1502-4(a).

나) 한도산정방법의 연결이탈후 계속적용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연결납세신고시 유효하게 적용하던 한도산정방법을 그후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할 한도산정방법으로 한다⁶²¹⁾.

3) 외국납부세액 및 공제한도의 연결기준 산정

가) 외국납부세액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결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국가별 한도를 적용한다면 특정 국가에 대한 구성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합산되며, 일괄한도를 적용한다면 모든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결정한다⁶²²⁾.

나) 공제한도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개별 구성법인의 한도를 산정할 때와 같이 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세액은 인적지주회사세 및 유보이익세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총소득은 연결과세소득으로 하며 국외원천소득은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가한 후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⁶²³⁾.

620) Reg. §1.1502-4(b)(1).

621) Reg. §1.1502-4(b)(2).

622) Reg. §1.1502-4(c).

623) Reg. §1.1502-4(d).

4)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미사용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 투자세액공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업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되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공제액에 대한 공제제한과 CRCO가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의 제한은 연결투자세액공제에서와 유사하게 적용된다⁶²⁴⁾.

624) Reg. §1.1502-4(e)~(g).

IX. 시사점 및 맺는말

1.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 도입될 연결납세제도를 소득통산형으로 할 경우 대표적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8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천해 온 미국의 제도를 입법단계에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II장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최초 도입이후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제III장부터 제VIII장까지에 걸쳐 미국의 현행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행규칙 중심의 입법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IRC에서 연결납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9개의 조항(폐지된 조항 제외)뿐이며, 특히 세액의 계산 및 납부에 관하여는 1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IRC의 위임에 따라 미국 재무성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인 연결납세규칙은 6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절대적인 분량에 있어서 IRC의 연결납세규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중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법률에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의 포괄위임은 위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연결납세규정을 두는 것은 위헌으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는 대부분의 연결납세제도를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납세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전통이 유사한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개정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단일실체개념 중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결납세집단이 하나의 개별 법인이고 각 구성법인은 당해 개별 법인내의 사업부로 보아 결손금의 산정, 각종 공제의 한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 개별과세소득을 기초로 한다든지, 연결기준으로 산정될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든지, E & P를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관리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을 일부 채택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무상 적용을 간편하게 하고 연결이탈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연

결납세제도는 대체적으로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연결납세의 성격상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연결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개별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과감하게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유형별 포괄주의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8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예상되는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조치를 유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결납세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규제되는 조세회피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조치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모회사의 지분비율(다른 구성법인의 지분비율 포함)이 100%인 법인만을 연결납세집단에 포함하도록 할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모회사의 지분비율이 100% 미만인 법인을 연결납세집단에 포함시키도록 할 경우에는 연결세액의 배분 및 연결이탈시 조세특성의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모회사의 지분비율이 100%인 법인만을 연결납세집단에 포함시키도록 하더라도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는 침해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세액의 구성법인간 배분에 관하여는 세법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구성법인간의 실제 배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E & P 산정목적의 연결세액배분만을 규정하고 있을뿐이다. 다만, 연결세액의 부당한 배분으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세액배분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연결세

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미국 특유의 규정과의 관계

미국 세법상 개별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대응되는 개념이 없거나 그 적용방법상 차이가 있는 규정들이 있으며 이들 규정이 미국의 연결납세규정 중 상당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법상 주식의 기초가액 및 E & P는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의 장부가액 및 세무상 잉여금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그 산정방법 및 적용 용도가 다르며, 미국 세법상 내포손익 및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 세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의 방지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 규정들을 받아들일 것인지와 받아들일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도에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개별 법인에 대하여도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세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마. SRLY 제도

미국연결납세제도에서 SRLY는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또는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성을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⁶²⁵⁾은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이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연결과세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납세집단을 공통의 모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연결회계이론에서의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관계회사집단 성립전에 발생한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역취득의 방식을 통하여 결손금공제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해지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도입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의 결손금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제도

625)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하여 개별납세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 연결납세의 취지와 가산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결납세가 강제적용되었으나 이후 연결납세를 관계회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연결납세여부를 임의선택하게 바뀌었으며 그 변경의 초기에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연결납세가 조세지원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관계회사집단이 경제적으로 일체가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연결납세를 임의로 중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의 강제적용 여부와 적용개시후 계속적용 여부 및 가산세부과 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당시의 경제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목적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단계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낮은 단계의 세율(15%)과 높은 단계의 세율(27%)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고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도 1억원 이하로 적은 금액이어서 누진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진의 효과가 비교적 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의 규제방안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요구는 주로 재계에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장애 중 이중과

세부담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집단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으로서의 도입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조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2. 맺는말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정부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와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가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초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고 80년 이상의 변천과정을 거쳐온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이 우리나라와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제도를 단순하게 입안하는 것은 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제도의 단순화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조세회피방지의 여지가 증가하고 과세형평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윤,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1, pp. 35~60.
- 김진수,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 『재정포럼』, 1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 김진수·이준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종철·오윤택,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1.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3.
- 김찬섭,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 안경봉, 「기업집단의 과세문제 - 연결납세제도」, 『2002년도 창립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법연구회, 2002.
- 이우택,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 _____,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 26집, 한국조세연구소, 2000.
- 최기호,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 『2001년

- 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2001.
- 재정경제부 세제실, 『미국의 법인세법 해설 : 법인 및 주주에 관한 연방소득세법』, 1998.
-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2001.
- 한국조세연구소, 『독일의 법인세법』, 1999.
- 剛崎和雄・望月光南, 『日米對比 連結納税のポイント』, きょうせい, 2000.
- 白須信弘, 『アメリカ法人税法 詳解』, 中央經濟社, 2002.
- 税理士法人トーマツ(編), 『詳解 連結納税 Q&A』, 清文社, 2002
- 税制調査會, 「連結納税制度の基本的考え方」, 2001
- 税制調査會, 「平成14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 2001
- 須田徹, 『アメリカの 税法』, 中央經濟社, 1991.
- 財務省, 「法人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www.mof.go.jp>, 2002.
- 租税研究協會, 『日本型連結納税制度について』, 2002.
- 井上久彌 外 2人, 『法人税の計算と理論』, 税務研究會出版局, 2002.
- 井上久彌, 『企業集團税制の研究』, 中央經濟社, 1995.
- 住田孝之, 『連結納税制度の導入に関する検討』, 商事法務, No. 1428, 1996.
- 増井良啓, 『持殊會社と租税法』, 商事法務, No. 1428, 1996.
- _____, 『連結納税制度の國際的側面』, ジュリスト, No. 1104, 1997.
- 青山監査法人, 『總解説 連結納税制度 : 分社化・持ち株會社の税務と會計』, 日本經濟新聞社, 1998.
- PwCコンサルティング(株) FMSグループ, 『連結納税システム』,

東洋經濟新報社, 2002.

- Bittker, I. Boris and James S.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 Lamont, 2002.
- Blumberg, Phillip I.,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General)*, Little Brown, 1989.
- Blumberg, Phillip I. and Kurt A. Strasser,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Specific)*, Little & Brown, 1992.
- Bowen, N. and Jon Golding(ed.), *Tolley's Tax Legislation 1994-95*, Part 1 & Part 2, 1994.
- Crestol, Jack, Kevin M. Hennessey and Richard F. Yate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arren, Gorham & Lamont, 2002.
- Dolan, Kevin D. and Michael F. Walsh, "Use of Holding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es*, vol. 73, Dec. 1995.
- Kesti, J., and P. S. Andersen(ed.), *European Tax Handbook 1998*, IBFD, 1998.
- Lerner, Herbert J. and Richard S. Antes,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Filing Consolidated Returns*, Matthew & Company, Inc., 2000.
- RIA, *Internal Revenue Code & Regulations*, 2002.
- Saunders, G., J. Scott and J. M. Watterston, *Corporation Tax 1997-98*, Tolley Publishing Co., 1997.
- Schmitthoff, Clive M. and Wooldridge Frank, *Groups of Companies*, Sweet & Maxwell, 1991.

Sheffield, Jeffrey T., "Holding Company Formations," *Taxes*,
Vol. 64, Dec. 1986.

Warner, James C., *Consolidated Returns Guide*, CCH, 2003.

<부록 I: 미국연결납세규정의 목차>

1. 연방세법(IRC)

연방세법(IRC)의 CHAPTER 6이 연결납세(CONSOLIDATED RETURNS)에 관한 규정이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Subchapter A. 세액의 신고납부(Returns and Payment of Tax)

§1501. 연결납세신고의 특전(privilege to file consolidated returns)

§1502. 연결납세규칙(regulations)

§1503. 세액의 계산 및 납부(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1504. 정의(definitions)

§1505. 상호참조(cross references)

Subchapter B. 관련되는 규정(Related rules)

Part I. 일반(In general)

§1551. 누진세율 및 유보이익세액공제의 불허(disallowance of the benefits of the graduated corporate rates and accumulated earnings credit)

§1552.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

Part II.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156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특정조세혜택의 제한
(limitations on certain multiple tax benefits in the case
of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1563. 정의 및 특례규정(definitions and special rules)

2. 연결납세규칙(Consolidated Return Regulations)

연방세법 시행규칙(Federal Tax Regulations)의 §1.1502부터 §
1.1563까지가 연결납세(consolidated returns)에 관한 규정이며 이
를 연결납세규칙이라고 한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1502-0 시행일(Effective dates)

§1.1502-1 정의(Definitions)

§1.1502-2 연결세액의 산정(Computation of tax liability)

§1.1502-3 연결투자세액공제(Consolidated investment credit)

§1.1502-4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Consolidated foreign tax credit)

§1.1502-5 추정세액의 납부(Estimated tax)

§1.1502-6 연결세액의 납세의무(Liability for tax)

§1.1502-9 연결국외손실과 개별한도(Consolidated overall foreign
losses and separate limitation losses)

§1.1502-11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 taxable income)

§1.1502-12 개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

§1.1502-13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

§1.1502-15 내포손실에 대한 개별납세제한연도규제(SRLY
limitation on built-in losses)

§1.1502-16 탐광비(Mine exploration expenditures)

- §1.1502-17 회계처리방법(Methods of accounting)
- §1.1502-18 재고수정(Inventory adjustment)
- §1.1502-19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
- §1.1502-20 자회사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의 이탈(Disposition or deconsolidation of subsidiary stock)
- §1.1502-21 결손(Net operating losses)
- §1.1502-22 연결자본손익(Consolidated capital gain and loss)
- §1.1502-23 연결순사업용자산 손익(Consolidated net §1231 gain or loss)
- §1.1502-24 연결기부금공제(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 §1.1502-26 연결수입배당공제(Consolidated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 §1.1502-27 연결지급배당공제(Consolidated §247 deduction)
- §1.1502-30 특정 삼각구조조정후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Stock basis after certain triangular reorganizations)
- §1.1502-31 연결납세집단의 구조조정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Stock basis after a group structure change)
- §1.1502-32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s)
- §1.1502-33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 §1.1502-34 주식소유의 합산에 관한 특별규정(Special aggregate stock ownership rules)
- §1.1502-42 상호저축은행 등(Mutual savings banks, etc)
- §1.1502-43 연결유보소득세(Consolidated accumulated earnings tax)
- §1.1502-44 유전 및 가스전 등에 대한 감모상각(Percentage depletion for independent producers and royalty owners)

- §1.1502-45 위험부담과 관련없는 결손공제의 제한(Limitation on losses to amount at risk)
- §1.1502-47 생명보험회사와 비생명 보험회사의 연결납세 (Consolidated returns by life-nonlife groups)
- §1.1502-55 연결납세집단의 최저한세(Computation of alternative minimum tax of consolidated groups)
- §1.1502-75 연결납세신고서의 제출(Filing of consolidated returns)
- §1.1502-76 구성법인의 사업연도(Taxable year of members of group)
- §1.1502-77 자회사를 위한 공통의 모회사의 대리(Common parent agent for subsidiaries)
- §1.1502-78 임시 소급공제수정(Tentative carryback adjustments)
- §1.1502-79 개별납세 사업연도(Separate return years)
- §1.1502-80 다른 법률의 적용(Applicability of other provisions of law)
- §1.1502-90 목차(Table of contents)
- §1.1502-91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2조의 적용(Application of §382 with respect to a consolidated group)
- §1.1502-9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Ownership change of a loss group or a loss subgroup)
- §1.1502-93 제382조 연결한도 또는 하위집단한도(Consolidated §382 limitation or subgroup §382 limitation)
- §1.1502-94 새로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제382조 와 관련규칙의 적용(Coordination with §382 and the regulation thereunder when a corporation become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 §1.1502-95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 의 규칙(Rules on ceasing to be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or loss subgroup)
- §1.1502-96 기타 규칙(Miscellaneous rules)
- §1.1502-98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Coordination with §383)
- §1.1502-99 시행일(Effective dates)
- §1.1502-100 감면법인(Corporations exempt from tax)
- §1.1503-1 세액의 계산과 납부(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 §1.1503-2 중복결손(Dual consolidated loss)
- §1.1504-0 개요(Outline of provisions)
- §1.1504-1 정의(Definitions)
- §1.1504-4 주식인수보증권, 옵션,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분증권의 처리(Treatment of warrants, options, convertible obligations, and other similar interests)
- §1.1551-1 부가세면제 및 유보이익세액공제의 불허(Disallowance of surtax exemption and accumulated earnings credit)
- §1.1552-1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
- §1.1561-0 시행일(Effective date)
- §1.1561-1 특수관계법인과 관련한 중복조세혜택의 제한 (Limitation on certain multiple tax benefits in the case of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 §1.1561-2 조세혜택금액의 결정(Determination of amount of tax benefits)
- §1.1561-3 부가세 감면의 배분(Appportionment of surtax exemption)
- §1.1563-1 특수관계집단과 그 구성법인의 정의(Definition of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and component

members)

§1.1563-2 제외되는 주식(Excluded stock)

§1.1563-3 주식소유여부의 결정규칙(Rules for determining
stock ownership)

§1.1563-4 프랜차이즈 법인(Franchised corporations)

<부록 II: 미국연결세액의 계산구조>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개별과세소득산정시 적용하였던 연결재계산항목의 제거

- ① 결손금공제(net operating loss deduction)
- ② 자본손익(capital gains and losses)
- ③ 사업용자산처분손익(§1231 gains and losses)
- ④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 ⑤ 폐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구교역법인공제
(Western Hemisphere trade deduction)
- ⑥ 수입배당공제
- ⑦ 지급배당공제

± 연결수정항목

- ①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또는 인식(Reg. §1.1502-13)
- ② 내포손실의 공제제한(Reg. §1.1502-15)
- ③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Reg. §1.1502-17)
- ⑤ 재고수정(Reg. §1.1502-18)
- ⑥ 초과손실계정으로 인하여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Reg. §1.1502-19)
- ⑦ 기초가액 및 E & P와 관련한 수정(Reg. §§1.1502-31~
33)
- ⑧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
(Reg. §1.1502-44)
- 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

(Reg. §1.1502-42)

⑩ 자회사 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의 이탈에 대한 손실의 불인정 또는 기초가액의 감액(Reg. §1.1502-20)

⑪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의 제한
(Reg. §1.1502-11(b))

= 수정된 개별과세소득(Reg. §1.1502-12)	
± 연결재계산항목	

=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 법인세율	

=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 기타 법인세(인적지주회사세 또는 유보이익세 등)	

= 연결산출세액	
- 연결사업세액공제	
-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결세액(Reg. §1.1502-2)	
------------------------	--

<부록 Ⅲ: 연결납세 관련서식>

미국의 연결납세신고서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개별납세 시 사용하는 신고서 서식을 사용한다. 즉 개별 법인이 납세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인 Form 1120 '법인세신고서(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상 연결납세신고임을 표시하는 난을 별도로 두고 있다. 다만, 연결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1. Form 1122: 자회사의 연결납세동의서(Authorization and Consent of Subsidiary Corporation To Be Included in a 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

2. Form 851: 관계회사 명세서(Affiliation Schedule)

Form 1122
 Rev. April 2009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thorization and Consent of Subsidiary Corporation
 To Be Included in a 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
 ▶ Attach to the 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

Note. Attach separate Form 1122 for each subsidiary for which the parent corporation consents to be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filing.

For the calendar year 2011, or other tax year beginning _____, 20____, and ending _____, 20____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_____
Name of the subsidiary corporation _____	
City or town, state, and ZIP or post office _____	
Name of parent corporation _____	
Name of parent corporation _____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_____

The subsidiary corporation named above authorizes its parent corporation to include it in a consolidated return for the tax year indicated and for each subsequent year the group must file a consolidated return under the applicable regulations. If the parent corporation does not file a consolidated return on behalf of the subsidiary, the subsidiary authorizes the Commissioner 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r an IRS officer to do so. The subsidiary consents to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solidated return regulations.

With a date of signing, I, the undersigned subsidiary representative, authorize my signature on this behalf, and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provisions contained herein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Sign Here

 Signature of subsidiary officer

 Title

Do. No. 12285 Form 1122 (Rev. 4-2009)



Form 991 (Rev. 12/2005)

Page 4

Instructions

Division references are to the Internal Revenue Code.

Purpose of Form

Use form 991 to:

1. Report the common-pairing capital and each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2. Report the amount of investment and the adjusted tax payments and the deferred alternative tax each corporation and.
3. Determine that each eligible corporation is qualified as a member of the affiliated group as defined in section 1324.

Who Must File

The parent corporation must file Form 991 for itself and for dependent members of the group. The Form 991 for each member of the group should be filed with the parent Form 991.

Affiliated Group

If a firm affiliated group means one or more shares of the affiliated corporations is owned by one stockowner with a common control relationship. See sections 1361(a) and (b). The common parent must be an individual, a corporation, and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1. The common parent must own directly stock that represents at least 80%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all stock owned by the affiliated stock owner of each one of the other affiliated corporations.
2. Each other corporation must have 80% of its total voting power in either 80% of the total value of the stock or 80% of the other affiliated corporations.
3. Each other corporation must be owned directly by one or more of the other affiliated corporations.
4. The common stock generally cannot include any stock that:
 - a. is nonvoting;
 - b. is noncumulative;
 - c. is limited and entitled to no dividends and dividends are payable only if they are not paid in prior years; and
 - d. has suspension and liquidation rights that do not exceed the liquidation of the stock owner for a maximum of 10 days after liquidation.

Address

Indicate the street name, or other mail address, other business address. If the Form 991 does not file but mail in the street address and the corporation has a P.O. box, show the P.O. box number.

Corporation Numbers

When filing information in Parts I, II, and IV, use the same number for the common parent corporation and the affiliated subsidiary corporation as the number listed in Part I, page 1.

Part I

Division of geographical credits and estimated tax payments, state tax, and common-pairing capital and each subsidiary corporation. The amount of a dependent parent's tax from the prior tax year that such corporation should be credit in the current year's tax and a estimated tax payments made by each corporation.

The total must be the same as the amount indicated in the state tax computation and estimated tax payments on a consolidated annual tax return.

Section of tax deposited with Form 2000. Free for the common parent the tax deferred with Form 2024,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2001-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 2845, 2846, 2847, 2848, 2849, 2850,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2871,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2987,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50, 3051, 3052, 3053, 3054, 3055, 3056, 3057, 3058, 3059, 3060,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3068, 3069, 3070, 3071, 3072,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80,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3088, 3089, 3090, 3091, 3092, 3093,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3100, 3101, 3102, 3103, 3104, 3105, 3106, 3107, 3108, 3109, 3110, 3111, 3112, 3113, 3114, 3115, 3116, 3117, 3118, 3119,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6, 3127, 3128, 3129, 3130, 3131, 3132, 3133, 3134, 3135, 3136, 3137, 3138, 3139, 3140, 3141, 3142, 3143, 3144, 3145, 3146, 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3161, 3162, 3163, 3164, 3165, 3166, 3167, 3168, 3169, 3170,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7, 3198, 3199, 3200,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216, 3217, 3218, 3219, 3220, 3221,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3228, 3229, 3230, 3231, 3232, 3233, 3234, 3235, 3236, 3237, 3238, 3239, 3240,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3264, 3265, 3266, 3267, 3268, 3269, 3270, 3271, 3272, 3273, 3274, 3275, 3276, 3277, 3278, 3279, 3280, 3281, 3282, 3283, 3284, 3285, 3286, 3287, 3288, 3289, 3290, 3291, 3292, 3293, 3294, 3295, 3296, 3297, 3298, 3299,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3320, 3321, 3322, 3323, 3324, 3325, 3326, 3327, 3328, 3329, 3330, 3331, 3332, 3333, 3334, 3335, 3336, 3337, 3338, 3339, 3340, 3341, 3342, 3343, 3344, 3345, 3346, 3347, 3348, 3349, 3350, 3351, 3352, 3353, 3354, 3355, 3356, 3357, 3358, 3359, 3360, 3361, 3362,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1, 3372, 3373, 3374, 3375, 3376, 3377, 3378, 3379, 3380, 3381, 3382, 3383, 3384, 3385, 3386, 3387, 3388, 3389, 3390, 3391, 3392, 3393,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3410, 3411, 3412, 3413,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3422, 3423, 3424, 3425, 3426, 3427, 3428,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3443,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3451, 3452, 3453, 3454, 3455, 3456, 3457, 3458, 3459,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3473, 3474, 3475,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3490, 3491, 3492, 3493, 3494, 3495, 3496, 3497, 3498, 3499, 3500,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3507, 3508, 3509, 3510,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3517, 3518, 3519,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3526, 3527, 3528, 3529, 3530, 3531, 3532, 3533, 3534, 3535, 3536, 3537, 3538, 3539, 3540, 3541, 3542, 3543, 3544, 3545, 3546, 3547, 3548, 3549, 3550, 3551, 3552, 3553, 3554,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3563, 3564, 3565, 3566, 3567,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3577, 3578, 3579, 3580, 3581, 3582, 3583, 3584, 3585, 3586, 3587, 3588, 358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3597, 3598, 3599, 3600, 3601, 3602, 3603, 3604, 3605, 3606, 3607, 3608, 3609, 3610, 3611, 3612, 3613, 3614, 3615, 3616, 3617, 3618, 3619, 3620, 3621, 3622, 3623, 3624, 3625, 3626, 3627, 3628, 3629, 3630, 3631, 3632, 3633, 3634, 3635, 3636, 3637, 3638, 3639, 3640, 3641, 3642, 3643, 3644, 3645, 3646, 3647, 3648, 3649, 3650, 3651,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3666, 3667, 3668, 3669, 3670, 3671, 3672, 3673, 3674, 3675, 3676, 3677, 3678, 3679,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3686, 3687, 3688, 3689, 3690, 3691, 3692, 3693, 3694, 3695, 3696, 3697, 3698, 3699, 3700, 3701, 3702, 3703, 3704, 3705, 3706, 3707, 3708, 3709, 3710, 3711, 3712, 3713, 3714, 3715, 3716, 3717, 3718,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3734, 3735, 3736, 3737, 3738, 3739, 3740, 3741, 3742, 3743, 3744,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3753, 3754, 3755, 3756, 3757, 3758, 3759, 3760, 3761, 3762, 3763, 3764, 3765, 3766, 3767, 3768, 3769, 3770, 3771, 3772, 3773, 3774,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3787, 3788, 3789, 3790,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3824, 3825, 3826, 3827, 38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준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최초 도입 이후 변천과정과 현행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면 위헌으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으나 연결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결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항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므로 미국에서와 같이 조세회피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연결세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연결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 즉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의 결손금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제도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으로서의 도입 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으나 이 또한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조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Abstract>

US System of Consolidated Return

Lee, June-Q

This report summarized the evolution and the current system of US consolidated tax return. Also this repor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system and its implic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into Korea as follows:

First, the US provisions of consolidated return are mostly contained in the Treasury regulations other than Internal Revenue Code. However, considering that US legal system and tradition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it is required to avoid legislations of comprehensive authorization by the Congress to the government in Korea for the consolidated return.

Second, the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mainly based on the single entity concept, which is also needed theoretically for Korea to adop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single entity concept requires to cause considerable cost to the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y, it is advisable to minimize the adjustments which should be made on a consolidated basis in consolidated return system of Korea.

Third, as in US system, anti-abusive regulations in Korea could be prescribed comprehensively, but they should be prescribed

pattern by pattern.

Fourth,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does not intervene to allocate tax liability among the members of the affiliated group.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legal system, the available methods for the allocation of tax liability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Code or the Securities Transaction Law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Fifth, among the US tax provisions which are applied for corporations as legal entities other than consolidated groups, the concepts of stock basis, earnings and profits, built-in losses, limitation following an ownership change do not exist or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Before the introduction of such concepts for the consolidated return into Korea, the existing provisions for corporations should be adjusted properly.

Sixth, the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has various anti-avoidance rules against exploiting losses occurred before consolidation such as SRLY and reverse acquisition which are required because the use of common parent's losses are not limited, whereas the use of subsidiaries' losses are limited. For simplifying the system, it is advisable to treat common parent's losses and subsidiaries' losses indifferently in Korea.

Seventh, the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not regarded as a tax incentive system but the system for tax neutrality. As in the US, it is advisable that the Korean system be optional, but once adopted, applied consistently. Moreover, imposing additional taxes for the consolidated return is not advisable considering that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not for tax-incentive.

<著者略歷>

李俊奎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Chicago 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現,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現,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2003年 9月 25日 印刷

2003年 9月 30日 發行

著者 李俊奎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2

ISBN 89-8191-237-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0,000 원